

정책보고서 2009-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김미숙 조애저 김효진 이주연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한국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성윤리나 올바른 성행위가 더불어서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과 쾌락주의, 배금주의는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의 도구로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가 의지를 품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근절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이다. 한창 자라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개인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윤리를 교란시키고 문란한 문화를 조장하여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성매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생규모가 적지만, 최근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성적 만남이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금지된 성매매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대응하여 관련 법과 규제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국가전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련하여 왔으나, 다양한 방법의 성착취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개최된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세계대회의 성과와 이행공약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성착취 현황과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는 이번 작업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주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한 보다 진일보한 전략들이 모색되기 바라고, 세계대회의 성과를 국내에 확산하여 사회의 모든 기구와 관련자들이 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김미숙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조애저 부연구위원, 김효진 선임연구원, 이주연 선임연구원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서가 작성 및 출판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

었다.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신 임을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장, 유익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송양수 사무관님, 그리고 정미정 주
무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리오행동강령의 이행현황과 향후 이행과제
와 관련하여 좋은 조언을 해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전소희 선생
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 보고서를 편집해 준 본 연구원의 정지영 선생님께도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바쁜 일정 가운데도 본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익한 도
움을 주신 본 연구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김성희 부연구위원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09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요약	11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내용	37
제3절 연구방법	38
제4절 연구의 한계	40
제2장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	41
제1절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및 현황	41
제2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원인	58
제3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향	63
제3장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67
제1절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67
제2절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80
제3절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93
제4절 성착취 예방제도	98
제5절 국제적 공조체계	103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7
제4장 국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109
제1절 미국	109
제2절 영국	116

제3절 일본	121
제4절 태국	12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32
제5장 제3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근절 세계대회	135
제1절 세계대회 개요	135
제2절 주요 내용	138
제3절 리오행동강령 우리나라 이행현황	159
제4절 향후 우리나라 리오행동강령 이행과제	168
제6장 정책제언	175
제1절 관련 법체계 정비 및 강화	175
제2절 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회복 강화	178
제3절 성착취 예방 정책 확대	181
참고문헌	186
부 록	191

표 목 차

〈표 2- 1〉 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처리 현황	44
〈표 2- 2〉 청소년성매매 발생·검거 현황	45
〈표 2- 3〉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연령별 현황	46
〈표 2-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 검찰 접수·처리 현황	46
〈표 2- 5〉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47
〈표 2- 6〉 성매매 대상 청소년 직업별 현황	47
〈표 2- 7〉 신상공개 대상자 수	48
〈표 2- 8〉 이용수단별 청소년성매매 발생현황	50
〈표 2- 9〉 인터넷 성매매 시정요구 실적	50
〈표 2-10〉 연령별 성범죄 단속현황(2005~2008.06)	51
〈표 2-11〉 아동포르노그래피 심의 및 처리현황	51
〈표 2-12〉 최근 3년간 ISP대상 접속차단 실적	52
〈표 2-13〉 SafeNet 등급기준	52
〈표 2-14〉 해외 성매매사범 현황('05~'08)	55
〈표 3- 1〉 아동성착취 관련법 및 주요내용	69
〈표 3- 2〉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71
〈표 3- 3〉 유사성교 행위 규정	71
〈표 3- 4〉 성폭력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법정형 정비	72
〈표 3- 5〉 외국의 공소시효제도	73
〈표 3- 6〉 신상공개제도 개요	74
〈표 3- 7〉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자 현황(2001. 8. 30~2007. 11. 21)	75
〈표 3- 8〉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76
〈표 3- 9〉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제한, 반납 실적	77

〈표 3-10〉	CYS-Net 서비스 유형별 이용건수	82
〈표 3-11〉	연도별 CYS-Net 사업 내역	83
〈표 3-1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역할	86
〈표 3-13〉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87
〈표 3-14〉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서비스 제공 내역 및 수혜자수	88
〈표 3-15〉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실적('04~'07)	90
〈표 3-1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06~'07)	91
〈표 5- 1〉	제3차 세계대회 회의 일정표	136
〈표 5- 2〉	아동청소년 성착취 세계대회 비교	137
〈표 5- 3〉	1~3차 세계대회 주요 내용 비교	161
〈표 5- 4〉	C.1. 일반원리	163
〈표 5- 5〉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 이행현황	165
〈표 5- 6〉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이행현황	166
〈표 5- 7〉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이행현황	167
〈표 5- 8〉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이행현황	167
〈표 5- 9〉	C.1. 일반원리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168
〈표 5-10〉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170
〈표 5-11〉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172
〈표 5-12〉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173
〈표 5-13〉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17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39
[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인신매매 등급현황	57
[그림 3-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81
[그림 3-2] CYS-Net 서비스 체계	82
[그림 3-3] 여성부의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89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성착취 현상은 초국가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성착취는 점차 심화·증가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일관된 방향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정책접근보다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응요법에 그치는 경향임.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됨.
 -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정리 및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방안 및 성착취 예방 방안을 모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2008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 세계대회(World Congress III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를 즈음하여 성착취의 개념,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를 파악하며, 제3차 세계대회의 주요 내용과 행동강령을 분석함으로써 아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2절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서 3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음.
 - 첫째, 문헌연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사용하였음. 아울러 성착취 현황에 대한 정부 자료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였음.
 - 둘째, 제3차 세계대회를 연구자가 직접 참가하여 자료수집과 아국 대표단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음.
 - 마지막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향, 내용, 세계대회 의제, 아국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제2장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개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란 영어로는 ‘Sexual Explo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sex tourism),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ople for exploitation)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성착취의 유형 중 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prostitution)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사용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 뿐 아니라 성알선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 아동청소년 성매매(Prostitution) 현황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 1,083건이 접수되어 1,115건이 처리되었고, 2007년에는 1,427건이 접수되어 1,403건이 처리됨.
 -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의 경우는 2006년에 접수된 건수는 103건, 2007년에는

4배 증가한 412건으로 파악됨.

- 아동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현황
 - 아동포르노 심의건수는 2002년 112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4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50건 미만이던 것이 2008년 다시 증가하여 304건에 달하고 있음.
 - 국내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서버를 이용한 음란·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건수는 2005년 237건, 2006년 209건, 2007년 449건, 2008년 793건임.
- 성관광(Sex Tourism): 해외성매매 현황
 -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해외 성매매사범은 2005년 21명, 2006년 5명으로 소수이다가 2007년 93명, 2008년 6월 현재 112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현황
 -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매매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 성매매에서 “우수”를 의미하는 1등급 국가인 한국은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여성과 여아를 인신매매하는 주요 송출국임. 아울러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신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

제2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원인

- 개인요인
 -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개인요인으로 발달심리학적 특성, 성 태도, 소비적, 물질적 욕구지향,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음.
- 가정적 요인
 -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나 결속감 결여,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등 역기능적인 가

족기능이 성매매와 관련이 됨.

학교적 요인

- 성매매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감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함.

친구요인

- 한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의 공식적인 성 사회화 기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성 사회화 과정의 비공식적 기제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 집단임.

사회문화적 요인

- 청소년 성매매 발생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심리의 팽배를 지적할 수 있음.
- 성매매에 영향을 주는 사회요인으로 성윤리와 성가치의 하락을 들 수 있음.

제3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향

신체적 측면

- 성착취 당시 가해자의 폭력에 의한 좌상, 타박상 및 찰과상과 유방 및 성기 등의 발적, 열상 및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성병 등의 세균감염과 성기손상 및 심리적요인에 따른 불면증, 식욕상실, 악몽 등의 심인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음.

심리적 측면

- 무기력, 상황에 대한 자기기만과 적응, 행동 및 사고의 은밀성, 폭로에 대한 위기의식, 혼동 및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상황을 경험함.
- 피해아동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잘못된 책임을 가해자에서 자신에게 이동시킴으로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됨.

□ 비행 조장 및 성윤리 파괴

- 약물남용, 폭력, 비행, 사회 성윤리 파괴 등 기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

제3장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제1절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 아동매매·성매매 행위 및 음란물 관련 성 범죄자 처벌강화

- 아동매매·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범죄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형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아동음란물 관련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제9조, 제10조)을 개정(2008. 6. 13)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음.
-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또는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토록 성폭력특별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임.
- 2007년 4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하였음.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 도입 및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 성구매자 재범방지 관련

- 성구매자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법 개정

□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관련

- 피해자 법적 보호 및 미처벌
-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 성범죄 예방 관련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홍보영상 제작, 배포 및 송출
- 청소년 성매수 미수범 처벌제도(그루밍제도) 도입 검토

제2절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1. 보건복지가족부: CYS-Net, 아동보호전문기관

- CYS-Net(Community Youth Service Network: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은 급증하는 위기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에 구축되었음.
 - CYS-Net은 '05년에 4개소, '06년에 54개소, '07년 68개소, '08년에 80개소로 꾸준히 증가함.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함. 아동학대 예방에서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함. 2008년 현재 4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음.
-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 2006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성매매 재유입예방을 목적으로 검찰 및 경찰에서 통보된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 및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1개소 등 7개의 교육기관이 있음.

2.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여성부에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시설에는 일반지원시설 41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14개소, 그룹홈 9개소,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3개소, 자활지원센터 5개소가 있음.
-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별히 자활지원센터는 탈업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원스톱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피해상담, 임상심리검사, 정신과·산부인과 진료, 진술녹화, 법률·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 경찰청: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 경찰청은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여('04. 6), 성매매피해여성 24시간 긴급, 성매매접수, 구조 활동을 하고 NGO연계 등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있음.
- 아울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두어 수사·상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05. 8. 31 개소). 현재 전국에 15개소가 운영됨.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현재 전국에 56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됨. 범죄 직후의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원, 손실복구 지원 등을 함.

- 인신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 아동 등은 상담, 법률구조 안내,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생계비·학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제3절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1.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08년 4월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주관, 9개 부처(여성부(간사),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가 참여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의 조정·지원·평가, 성범죄·유괴·실종 등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그 밖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2.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검사를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 부처 파견직원으로 구성됨.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시·군·구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며,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단속, 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함.
-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하여 가출·위기 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자를 단속함.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 2004년 수립된 종합대책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임을 강조하고, 국민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탈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성매매 단속강화로 성매매업 소수와 종사여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 새롭게 강화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은 정책과제의 분류를 국제사회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예방, 보호, 집행”(3P : Prevention, Protection, Prosecution)의 틀로 개선과제를 새롭게 신설하고 보완함.

4. 해외성매매방지대책

- 정부는 ‘해외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해외 한인사회·여행업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였고,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공조 체제 마련함.
-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구성하여 해외성매매 알선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있음.

5. 기타: 「성폭력대책단」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 5대 폭력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의 성폭력대책단 운영함.
- 국무총리실 주관의 5대 폭력근절 관계장관회의에 성폭력이 추가('06.5) 됨.
- 민관 합동의 「성폭력대책단」을 구성('06.6)하여 운영함으로써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됨.
- 여성부, 경찰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참여하는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이 '08.5월부터 진행 중임.

제4절 성착취 예방제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또는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성교육 실시

- 정부 부처별 및 민간 상담기관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고충과 성관련 문제를 포함한 고민거리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 29개 성문화센터가 설치됨. 센터의 역할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임.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성매매 예방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매매 방지 전문 상담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 신고의무

-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은 직무의 성격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실천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매매, 성매매 및

각종 유해매체물로부터 능동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분별력과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적 학습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프로그램’(Youth Patrol)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전문강사 양성

-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예방교실 운영 및 아동성폭력 대처요령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였고, 성희롱 예방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자격취득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무화('06.7.13)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및 사이버 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고시를 통해 유해매체물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상의 유해환경,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수 미수범 처벌제도 도입 추진

-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인터넷상 성매매 관련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활동 및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함.

□ 성폭력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

- 2006년에는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 구성, 2007년에는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2월 22일) 선포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제5절 국제적 공조체계

- 성범죄자의 수사에 대한 국제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 절차와 관련한 정보, 증거 채취를 위하여 2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하여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함.
 -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외 내·외국인 재외국민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28개국과 범죄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국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 및 처벌하고 있음.
 -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비준하고 국제범죄, 인신매매 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성매매 및 음란물 근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제4장 국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제1절 미국

-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적인 법체계를 보유함.
 - 주법은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정의 및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연방법에는 아동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와 주 사이에 걸쳐 벌어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불법적인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이동,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음.
 - 최근 더욱 강화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재범 방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
-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및 회복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개입부터 피해아동의 회복시까지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에

의해서 보호됨.

- 미국의 비정부조직은 아동 성착취 관련 입법에 대한 로비활동, 정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법적 판결과정의 참여, 성착취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등 전 범위와 과정에 걸쳐서 아동의 이해를 대변함.

제2절 영국

- 영국의 성폭력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아동에 대한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및 그루밍(Grooming) 등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는 아동성착취 관련 주요 법임.
 - 특히 그루밍조항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도를 좌절시키는 수단이 됨.
- 아동 성착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관련자에게만 권한이 부여됨.
 - 영국의 경찰국에는 아동범죄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경찰이 배치되어 있음.
 - 아동학대(성착취를 포함한)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는 아동보호 전문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짐.
 - 인터넷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는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
- 영국은 CRIN, Refugee Council, Child Safe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이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3절 일본

- 일본의 아동성착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엔조코사이’임.
-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아동성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 이를 조장하는 인터넷웹사이트 운영자와 개인정보를 올린 아동에게 접근하는 성인에게 범죄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함.
- 또한 야쿠자 등 범죄조직과 연관된 아동성착취 및 아동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국’을 주축으로 하여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아동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특히 국제적 비정부기관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등도 다수 운영되고 있음.

제4절 태국

- 태국은 성매매관광 유명지로서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아동성매매관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로드맵과 인신매매예방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함.
- 매춘예방 및 금지법(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1996) 등 여러 법에 의하여 태국 내 아동에 대한 성착취 금지 및 범죄자 처벌이 규정됨.
- 한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성착취에 동원되는 아동의 문제요소를 발굴하여 취약지역·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통하여 성매매산업으로의 아동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제5절 시사점

-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한국의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 요구됨.
 - 아동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친분쌓기 행위(그루밍)에 대한 처벌제도 도입을

- 검토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예방 및 성착취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성매매를 아동청소년성착취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함.
- 아동의 권리 및 성착취피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예방사업에 시민과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제5장 제3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근절 세계대회

제1절 세계대회 개요

- 회의명 :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 기간 : 2008. 11. 25(화) ~ 11. 28(금) (4일)
- 장소 :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 주관 : 브라질 정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유엔아동권리협약NGO그룹 공동주최
- 목적 :
 - 제1·2차 세계대회 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의 등장 등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 점검 및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각국 상호간 정책수행 경험 공유 및 국제적 공조 가능 전략 개발
 - 성착취 관련 문제에 대한 각종 성과목표 및 지표 도출
- 주요 프로그램 : 패널회의, 고위급 정부회의, Workshops
- 주요의제 : 5가지 테마

제2절 주요 내용

- 2001년 제2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성착취

문제를 다룬 효과적인 법률 및 프로그램의 마련, 사회 각 영역간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및 아동의 적절한 참여보장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해 중점 논의됨.

- 동 논의결과를 통합,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성과와 노력 소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적 장치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등 사회복귀 (reintegration)

□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계획

○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근절 노력을 근본 원인을 고려, 빈곤퇴치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시행
-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
- 향후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법 및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지표 (indicator) 개발

○ 리오데자네이로 행동계획

- 각국 정부는 2013년까지 관련 국제협약 및 지역협약에 가입,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마련 및 아동인권보호 독립적인 기관 설립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관련 국가 행동계획 수립
- UN 인권협약 감시기구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및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운영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노력에 좀 더 높은 관심 부여 필요

제3절 리오행동강령 우리나라 이행현황

C.1. 일반 원리(General)

-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2004년 아동 매매·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 200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에 비준함.
 -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민법을 개정하였으며, 관습적 성적 동의 연령이나 혼인 연령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등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각자의 사법권 내에서 이를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죄로 함.
-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가해자 착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벌에 대해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방식의 범집행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부를 중심으로 성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및 영상물 등 개발 보급하고 있음.
-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이미지(Child pornography/child abuse images)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유사성교를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 아동을 성매매로 내몰아 성관계에 대한 지불을 하거나 아동으로부터 성적 서비

스를 받기 위한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법상 위법거래로 명시함.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됨.
-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게 치료재활 교육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진로지도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 혹은 성매매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의료, 교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치료와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함.
- 조사 시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국 15개 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청소년, 해외성매매 등 사례를 통해 해외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환기를 위해 해외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 여행업 관련 관광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방한여행문화가 정착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여행업 관련법 제도 개선하였음.
 - 또한 spo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성매매 업체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 인신매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음.

제4절 향후 우리나라 리오행동강령 이행과제

- C.1. 일반원리 향후 이행과제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자에 대하여 Double criminality(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것)를 필수로 하는 것을 폐지하여 치외 법권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판권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범인 인도와 사법 공조를 촉진함.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련된 역외 법(extraterritorial laws)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 법 집행 기관을 지정.

□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 향후 이행과제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동통신사, 검색엔진,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와 아동 학대 이미지를 보고하고, 제거할 것을 의무로 하는데 필요한 법적 수단을 강구함.

□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향후 이행과제

- 첫째, 성매매 대상 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아동의 성매매 예방 및 치료나 성착취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셋째, 아동의 무상 의무 교육 제공과 인식 및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아동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함.

□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향후 이행과제

- 첫째, 정부가 기내용 홍보 비디오를 제작을 고려해야 함.
- 둘째, 정부는 관광, 여행, 호텔산업에서 전문적인 행동 수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셋째,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이 끊임없이 국제여행알림시스템 혹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green notice’ 시스템을 확립함.
- 넷째, 해외원정 성매매 역시 자국의 법제도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함.
- 마지막으로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기술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함.

□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향후 이행과제

-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아동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피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마련함.
-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다룰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국제인터폴과의 활발한 협력이 필요함.

제6장 정책제언

제1절 관련 법체계 정비 강화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처벌의 강화는 실제적인 법 집행률이 제고되어야만 이를 수 있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의 검거 및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

2. 성매매에 대한 개념 재정립

- 성매매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 대가성 없이 잠자리나 과자, 차비 등을 주면서 청소년과 이루어진 성관계나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성행위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 아동이 성폭력을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미루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4.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정비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이 제 2선택의정서의 개념보다 협소하고, 아동매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및 형법의 개정이 요구됨.
- 아동 포르노그래피 수사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제도 집행이 어렵고,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포르노 현황 파악 등이 보완되어야 함.
-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정의를 따름.

제2절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및 회복 강화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 강화

-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이 확대·강화되어야 하며, 치료·회복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의 증원과 재정지원 확대, 또한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한편,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수를 늘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함.
-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전담조사관 워크숍 개최’의 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함.

2.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

-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 확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은 피해청소년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줌으로써 심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함.

4. 성매매 재발 방지: 선도보호 강화

-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보호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실행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성착취 실태조사

- 전국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경로, 성매매 중단 및 지속 이유, 성매매 유형별 연계성,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원인, 성매매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정서적, 기타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야 함. 가해자 성인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현행 지원제도의 효과성 검증도 필요함.

제2절 성착취 예방 확대

1. 빈곤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 빈곤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및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사회적 자원을 이들 가정에 연계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가족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활성화시킴.

2. 가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지원센터의 확충·홍보

-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에 청소년 쉼터와 같이 쉽게 찾아가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 수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함.

3. 건전한 직업관 확립, 진로상담 및 일자리 제공

- 수고하여 일하는 것, 즉 직업을 갖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건전한 직업관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이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4.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강화 대책

- 아동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 관련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증설하도록 함.
- 해외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제기관 및 NGO 보유 자료를 공유하고 성폭력·성매매 등에 대한 국제적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5. 가족 내 자녀 지도

- 자녀의 성의식, 직업관, 일상생활 및 소비의식 등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6.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강화

- 학교 및 가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출 및 유해업소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함. 특히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함.
-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을 허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유인하는 허위벽보, 전단 같은 불법 광고물을 제재함.

7. 사회적 의식개선

-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속해 온 쾌락주의, 배금사상 및 남성우월주의적 성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녀평등의식 확산과 성실과 근면함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가치관이 약화될 수 있도록 함.

8. 국제공조 강화

- 해외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제기관 및 NGO 보유 자료를 공유하고 성폭력·성매매 등에 대한 국제적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와 관련한 아동 인권보호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만 명의 아동들이 성적 거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2000)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만 매년 25만명의 여성 및 아동이 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UN은 이러한 사업의 규모가 연간 50~70억 달러(7천~9천8백억원: 1달러당 1,400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새로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초국가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달로 성착취가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의 그늘에는 초국가적인 ‘아동 성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기커녕 이들에게 가해지는 성착취는 심화되고 증가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는 문화·경제·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강요된 노동, 현대판 노예형태를 의미하며,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의 불법거래 그리고 아동 성관광 등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에 관한 최초의 세계대회가 열렸고, 본 회의는 문화의 차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국 정부가 아동성착취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고, 122개 정부가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과제(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A)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2001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 이후, 현재 161개국이 본 행동 과제를

도입하여, 아동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RC 채택 10주년이 되던 2000년에는 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 목적을 달성하고 아동보호를 강화·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했다. 또한 2008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선언에서는 지난 1996년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 공약에서 채택된 실천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 역시 1990년 CRC에 비준하였고, 2004년 9월에는 본 선택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이행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였고,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이라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표현물의 특성상 성인이 등장하는 성표현물과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법적 금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조연하,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성매매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근절해야 할 사회악으로 인지하고 강력한 금지주의적 법집행을 강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국내·외적 사회부작용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사회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정책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응요법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관광산업, 인터넷 상의 아동성애 포르노물의 유포 및 확산 등이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정리 및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방안 및 성착취 예방 방안을 모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제적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 세계대회(World Congress III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를 즈음하여 성착취의 개념,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를 파악하며, 제3차 세계대회의 주요 내용과 행동강령을 분석함으로써 아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세계대회에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정책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회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들을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적절한 정책적 조치 마련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성착취 개념 및 현황, 원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국내 이행실태를 고찰한 장으로 여기서는 테마별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이행실태를 파악하였다. 테마에는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성착취 예방제도, 국제적 공조체계가 포함된다. 제4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국외 이행실태를 미국, 영국, 일본, 태국 등의 법제도, 관련기관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제3차 세계대회 개요, 테마별 주요 내용, 리오행동강령의 우리나라 이행현황, 향후 우리나라의 리오행동강령 이행과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결론부분인 제6장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크게 3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아울러 성착취 현황에 대한 정부 자료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였다. 테마별 정리를 위해서는 정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성착취 근절방안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때, 국내의 대처방안 및 전략, 성과 검토, 국내 정책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도출을 하였다.

둘째, 제3차 세계대회를 연구자가 직접 참가하여 자료수집과 아국 대표단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세계대회는 2008년 11. 25~11. 28(4일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본 세계대회의 주요 참가대상은 정부 및 NGO 대표자, 각종 인권운동가, 여론 주도층, 각계의 유명 청소년들이다.

마지막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기관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3회의 자문회의 실시하여 사업의 방향, 내용, 세계대회 의제, 아국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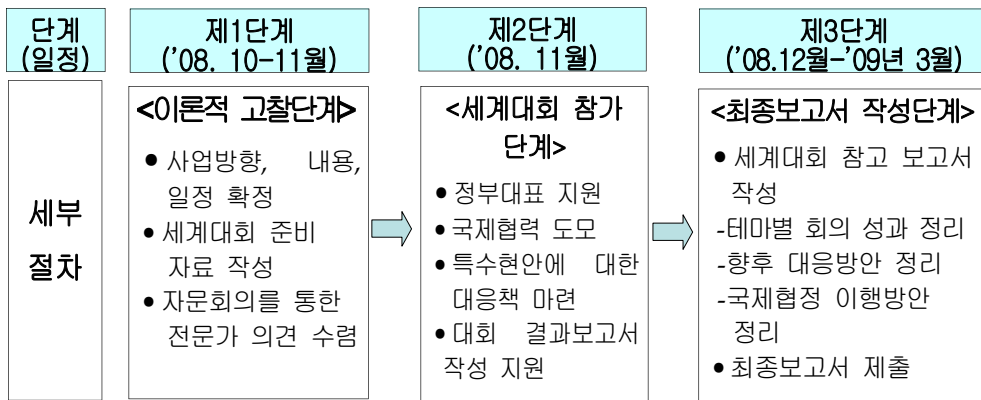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요약된다.

- 1단계 : 이론적 고찰단계로서 '08년 10-11월 기간 중 실시
 - 세계대회 준비 작업으로서 아국의 입장과 그간의 성과 향후 전략에 대한 발표 자료를 작성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시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부자료 및 통계 등을 검토 및 정리함.

－ 세계대회 주요행사 5테마에서 제시된 목표 중 2개를 선정하여 자료를 작성함.

- 2단계 : 세계대회 참가로서 '08년 11월 말 대회 기간 중 실시
 - 아국 정부대표의 발표 지원 및 특수 현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
 - 각국의 의제 및 국제협정 이행방안 정리
 - 참가 공무원, 자문위원, 각계 전문가 등과의 협조를 통한 아국의 입장 정리
 - 의제에 관한 방침 및 목적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3단계 : 최종보고서 작성단계로서 '08년 12월-'09년 2월 기간 중 실시
 - 세계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 아국의 성착취 근절전략 최종 마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제4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주로 이론적 고찰과 세계대회 참여를 통한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를 점검한 보고서이다. 국내 이행실태를 보다 정교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기관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별로 일부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국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착취 현황에 대한 전국적 실증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국민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에 대한 실태파악은 거의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주에서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처리 또한 미진한 상태이다. 물론 인신매매 대상이 청소년보다는 고연령이기는 하지만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치밀한 수사와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국내외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및 현황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개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란 영어로는 ‘Sexual Exploitation’이고, 브라질 세계대회에서는 가정과 가족 내, 학교와 교육 환경, 보호와 사법 시설,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18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브라질 세계대회, 2008). 제3차 세계대회 이전까지는 성착취라는 용어 앞에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국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상업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착취의 유형에는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sex tourism),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ople for exploitation)가 있고(브라질 세계대회, 2008), 이와 더불어 성폭력, 성학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3차 세계대회에서는 대상도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성인이 금품을 주고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포르노그래피는 1996년 스톡홀름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실재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시각적 묘사 및 이용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성기의 음란한 노출을 말하며, 이는 그러한 매체의 제작·배포 및 이용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을 소재로 한 포르노그래피에는 비디오, 영화, 사진,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등이 있다. 성 관광이란 세계관광기구인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관광지 주민과의 성적 접촉만을 목적으로 한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의 성폭력, 성학대 등은 가정, 학교, 사업장 등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를 말한다. 본 고에서는 제3차 세계대회에서 주 대상으로 다루었던,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에 국한하여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착취의 유형 중 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prostitution)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좁혀서 사용한다. 성매매도 주로 10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보다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정책 담당 정부부처가 통합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가 청소년 성매매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선행연구고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 및 사회정책을 통해서 보다 존엄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도록 가족과 지역사회의 재구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성매매’이라고 정의 내려진다(박동균, 2001). 현행법상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과 2000년 제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뿐 아니라 성알선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착취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

모든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박동균, 2001). 특히 청소년 성착취의 경우는 일반인의 성매매보다 더 파악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접촉경로가 다양하고, 행위자가 상대자와 직접적인 비밀접촉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은밀성과 익명성이 강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박동균, 2001).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Prostitution) 현황

1) 성매매 현황

성착취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일반적 동향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추진으로 과거의 업소형 성매매는 감소하는 대신,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공식적으로 신고가 된 사례를 통해서이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 1,083건이 접수되어 1,115건이 처리되었고, 2007년에는 1,427건이 접수되어 1,403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8년 접수 및 처분통계는 집계 중에 있다. 즉, 약 1년간 1,000여건의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의 경우는 2006년에 접수된 건수는 103건, 2007년에는 4배 증가한 412건으로 파악되었다. 접수건수는 1,500건 이하이고 처리건수도 이와 비슷하지만, 실제 성매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접수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¹⁾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²⁾
합계	1,083(110)	1,115	227	572	140	0	176
2006							
성보호(강요행위등)	75(23)	65	24	0	8	0	33
성보호(성매수)	964(71)	1,003	177	568	130	0	128
성보호(알선영업행위등)	44(16)	47	26	4	2	0	15
성보호(청소년매매)	0(0)	0	0	0	0	0	0
2007							
합계	1,427(98)	1,403	334	531	297	1	240
성보호(강요행위등)	104(38)	110	57	5	11	0	37
성보호(성매수)	1,246(44)	1,215	245	519	275	1	175
성보호(알선영업행위등)	71(15)	72	31	3	11	0	27
성보호(청소년매매)	6 (1)	6	1	4	0	0	1
2008 (1-8)							
합계	719(56)	754	118	233	244	0	159
성보호(강요행위등)	94(26)	85	27	2	12	0	44
성보호(성매수)	564(19)	612	69	224	228	0	91
성보호(알선영업행위등)	58(11)	56	22	6	4	0	24
성보호(청소년매매)	3(0)	1	0	1	0	0	0

주: 1) 불기소(기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 기타: 기소 및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2008.

한편,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건수와 인원은 2004년 각 1,593건, 2,680명이고 2008년에는 452건, 1,143명이다. 이는 위의 경찰청의 수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수치이다. 지난 4년간 검거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검거된 인원 감소 속도는 느려 한 번에 여러 명이 검거되는 추세가 최근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검거인원의 감소가 가능했던 것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급격한 감소는 2007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검거 대상 중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였다.

조치의 경우는 3분의 2 가량은 불구속하고 일부만을 구속하고 있다. 즉,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있어서 법적 조치가 관대함을 알 수 있다. 방은령(2003)은 신문 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미온적임을 발견하였고,

특히 3년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경우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됨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대가성 없는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대부분 성범죄로 보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히 적용되나, 성매매 성인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방은령, 2003). 이러한 관대함과 미온적인 처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2-2〉 청소년성매매 발생·검거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검 거 대 상 별		
			구속	불구속	성매매수자	업주관련자	대상청소년
2004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2005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	744	1,745	149	1,596	1,502	183	60
2007	839	2,582	126	2,456	1,835	242	505
2008. 6.	452	1,143	38	1,105	796	97	250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살펴보면 15~16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7~19세이고 13~14세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는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인 경우도 소수가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아동의 성매매, 성매매행위 등이 주요문제가 되고 있는 빈민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새로운 동향의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성착취 형태의 다양화, 저연령화 등이 해당된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종사이버 성범죄의 증가와 성매매에 최초로 유입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표 2-3〉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2세 이하	13~14세	15~16세	17~연19세
2003	1,316	5	163	611	537(만18세)
2004	1,599	19	268	666	646(만18세)
2005	1,124	5	169	438	512(만18세)
2006	729	10	88	348	283
2007	785	13	112	318	342
2008. 6	361	2	59	143	157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2) 성매매 알선 및 장소현황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는 2006년 103명, 2007년 412명, 2008년(1-8월) 270명이 접수되어 각 89명, 414명, 280명이 처리되었다. 이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등은 소수이고 불기소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낸 경우가 과반수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 검찰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기간	접수	처분: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 사건송치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중지 타관
2006	103	89	3	2	43	32	0	9
2007	412	414	6	8	126	218	23	33
2008(1-8)	270	280	4	6	88	140	12	30

주: 기타처리내용으로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이송등이 있음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2008.

최초에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총 검거건수 744건 중에서 인터넷이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98건), 대면(50건), 휴대폰(5건), 전화방(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 검거건수가 2005년의 924건에서 2006년에는 590건으로 크게 감소해서 이로 인해 2006년도의 전

체 검거건수가 2005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표 2-5〉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단위: 명)

연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2007	839	701	7	47	2	82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3) 성매매 동기, 직업 및 연령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범행 동기는 전체 729명 중 생활비 마련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흥비 부족(271명), 기타(135), 성적호기심(28명), 친구의 권유(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과 중학생 순으로 파악되었다. 즉,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성매매 비율이 가장 많아 이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자립 및 진학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표 2-6〉 성매매 대상 청소년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생	무직	기타
2001	1,102	3	165	316	21	517	80
2002	1,221	10	236	322	20	481	152
2003	1,316	5	250	376	17	571	97
2004	1,599	10	379	356	37	777	140
2005	1,124	2	147	266	23	567	119
2006	729	9	140	167	6	327	80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7.

4)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07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형 확정 후 10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 10월 현재 130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었고, 이중 52명이 열람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향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2-7〉 신상공개 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계		강 간 (미수·방조포함)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 선		음란물 제 작	
	대상	공개	대상	공개	대상	공개	대상	공개	대상	공개	대상	공개
제1차	300	169	82	65	93	61	109	27	16	16	-	-
제2차	824	443	183	150	162	120	422	123	56	49	1	1
제3차	1,244	670	241	214	263	166	626	178	113	111	1	1
제4차	1,221	643	235	208	223	200	682	155	71	70	10	10
제5차	1,225	545	192	168	239	195	717	107	77	75	-	-
제6차	1,217	553	222	200	235	158	693	128	66	66	1	1
제7차	1,290	557	200	174	324	192	708	134	58	57	-	-
제8차	1,375	532	232	210	331	156	737	94	71	68	4	4
제9차	1,394	512	199	174	312	136	814	137	69	65	-	-
제10차	1,352	533	201	186	316	151	783	147	49	46	3	3
제11차	1,217	494	173	155	385	191	638	128	19	18	2	2
제12차	1,106	485	148	136	352	206	591	128	14	14	1	1
제13차	906	383	143	131	351	150	396	90	14	12	-	-
계	14,671	6,519	2,451	2,171	3,586	2,082	7,916	1,576	693	667	23	2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5) 성매매 발생경로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는 경로는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으로 파악되었다. 2007년 현재 총 839건의 발생건수 중에서 701건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기타 82건, 티켓다방 47건 등으로 소수이다. 2004년 이후 모든 수단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단 인터넷은 2007년에 다소 상승하였고, 티켓다방은 그 이전에는 10건 이하의 소수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에 갑자기 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동균(2001)의 연구도 이를 증명하는데, 전체 282명의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 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과반수를 넘는 151명(53.5%)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전화방 62명(22.0%), 음성사서함 38명(1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 성매매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이 성에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하는 건수가 2000년 2,625건에서 2007년 26,661건으로 지난 8년간 무려 10배 가량이나 급증하여, 점점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2008). 따라서 인터넷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자율정화 노력의 기반으로서 윤리지수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 보급률은 65%로 세계 1위의 상황에서 인터넷의 불건전 활용,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수단이 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개입된 성매매는 형태상으로 볼 때 윤락업소에서의 성매매,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전화 또는 통신 등에 의한 원조교제 형태의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윤락업소,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또는 산업형 성매매보다는 P2P(Person to Person) 방식의 개인적 접촉이 원활해짐에 따라 개인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수단별 청소년 성매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4년 85.9%, '05년 81.1%, '06년 79.3%, '07년 83.6%로 2004년부터 인터넷이 약 80%를 차지하여 유흥단란, 티켓다방 등과 같은 업소형 성매매에 비하여 개인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8〉 이용수단별 청소년성매매 발생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타
2004	1,593 (100.0)	1,368 (85.9)	21 (1.3)	7 (0.4)	88 (5.5)	109 (6.8)
2005	1,139 (100.0)	924 (81.1)	23 (2.0)	7 (0.6)	62 (5.4)	123 (10.8)
2006	744 (100.0)	590 (79.3)	1 (0.1)	5 (0.7)	50 (6.7)	98 (13.2)
2007	839 (100.0)	701 (83.6)	7 (0.8)	47 (5.6)	2 (0.2)	82 (9.8)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특히 이러한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로는 인터넷 유희사이트, 채팅, 전화방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상의 유희문화가 형성되어서 인터넷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2005~2008.6)’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2천 264건으로 전년도에(2,648건)에 비해 4.6배 증가하였다. 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불건전 만남 사이트’는 온라인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만7천 759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는 8,297건, 청소년유해정보결정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심의건수가 4.3배, 시정요구건수가 25.4배나 증가했다.

〈표 2-9〉 인터넷 성매매 시정요구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9.	계
시정요구	118	271	6,893	1,015	8,297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여성부에서 성범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경우는 2005년 547건이 되고,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687건, 2007년에는 1,032건에 이르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성범죄 단속대상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2-10〉 연령별 성범죄 단속현황(2005~2008.06)

(단위: 명)

구분	계	19세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미상
2005	18,508	547	5,940	6,649	3,529	1,113	347	88	295
2006	34,795	687	11,338	14,151	6,222	1,665	392	132	208
2007	39,236	1,032	12,313	15,747	6,941	2,104	582	275	242
2008. 6	20,407	697	6,079	8,037	3,926	1,183	265	1,09	111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2008.

나. 아동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현황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물 등은 포털, 커뮤니티, P2P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이는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다. 국내 무료 게시판, 학교·교회·단체 등 보안이 취약한 비영리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포르노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포르노 심의건수는 2002년 112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4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50건 미만이던 것이 2008년 다시 증가하여 304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 시정이 요구되었는데, 시정요구내용은 주로 삭제, 이용해지의 대상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표 2-11〉 아동포르노그래피 심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심의건수	시정 요구건수						
		소계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경고	접속차단	기타
2002	112	110	95	-	15	-	-	-
2003	452	395	333	3	56	3	-	-
2004	472	457	327	3	124	2	-	1
2005	31	11	8	-	3	-	-	-
2006	12	5	3	-	1	-	1	-
2007	34	29	16	1	12	-	-	-
2008	304	237	87	-	149	-	-	1
계	1,417	1,244	869	7	360	5	1	2

주 1) 차단요청 : ISP(Internet Server Provider)사업자 대상 차단요청

2) 기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아동포르노는 해외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 비영리 사이트를 해킹하여 아동포르노물을 게시해 두고 본 사이트와 링크시켜 제공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08). 국내 비영리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아동포르노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서버를 이용한 음란·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건수는 2005년 237건, 2006년 209건, 2007년 449건, 2008년 7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2〉 최근 3년간 ISP대상 접속차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9
접속차단	237	209	449	793

주: ISP = Internet Server Provider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서버 사이트(한글, 외국어)에 대해서 SafeNet 등급기준에 준하여 사이트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정보 접근이 가능한 ‘내용선별 S/W’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등급 목록은 국내 내용선별 S/W 개발 사업자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내용선별 S/W 175만 건은 영세가정에 직접 배포하고 있다. SafeNet의 등급기준과 범주는 다음 <표 2-10>과 같다.

〈표 2-13〉 SafeNet 등급기준

수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 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 외설적 비속어
3 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 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 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 등급	노출없음	성행위없음	폭력없음	비속어없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우리나라를 비롯한 INHOPE¹⁾ 회원기관(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등)들은 아동포르노 URL 리스트를 작성하여 법집행기관 및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차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기조에 발맞추어 해외등급 DB에 ‘아동포르노(일명 ‘Roli’)'의 유무와 관련된 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포르노 등 음란·유해정보에 대하여 포털, P2P, 웹하드 등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내 보안이 취약한 비영리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아동포르노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24시간 상황실’ 등 핫라인을 구축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음란·유해정보 상습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업무공조를 통해 청소년들의 음란·유해정보 접근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음란, 아동포르노 정보는 차단기술 및 효율적 차단장비 도입,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차단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심의사례집, 심의백서를 보급하고, 심의규정 안내 등을 통하여 불법·음란 정보에 대한 유통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핫라인 구축을 통해 아동포르노 등 불법정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하고, 국내 사이트를 아동포르노의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외 본 사이트와의 단속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03).

다. 성관광(Sex Tourism): 해외성매매 현황

국내 현황보다도 더 파악이 어려운 것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현황이다. 해외성매매의 경우도 검거된 수치만을 가지고 규모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해외 성매매사범은 2005년 21명, 2006년 5명으로 소수이다가 2007년 93명, 2008년 6월 현재 112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관광의 증가와 함께 해외 성매매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해외 성매매 사범의 경우의 조치

1) INHOPE는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1999년 8개 인터넷 핫라인 기관들이 모여 유럽위원회 정보사회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단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3년 5월 15일 INHOPE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는 이사국으로 선정되어 회의참가·의안결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도 구속은 소수(7명 이하)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구속이거나 기소 중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해외 성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해외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입·출국 사범 특별단속 및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발급 제한, 성매매 사실 적발시 여권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였다.

해외 성매매는 2004년 태국에서 열린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남태평양 연안 키리바시에서의 한국 선원에 의한 성매매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키리바시는 남태평양 적도부근에 위치한 인구 9만 명의 도서국가로 원양어선 정비와 휴식을 위한 쉼터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한국과는 1980년 어업협정을 맺었으며 동원, 사조, 한성, 신라, 가스온, 솔로몬, P&G 등의 회사가 진출하여 참치 잡이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에서 한국선원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꼬레꼬레아’라는 말이 미디어에서 처음으로 사용됨으로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성매매 일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꼬레꼬레아’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국제적 위신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ECPAT Korea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선원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 및 집단면접(24명) 실시하였는데, 40~50명의 피해소녀들이 발견되었고, 한국선원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가 있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표 2-14〉 해외 성매매사범 현황('05~'08)

(단위: 명)

유형 조치 연도	유 형				조 치			
	계	성매매 알선자등	성매도자	성매수자	구 속	불구속	기소중지	기타
2005	21	16	3	2	2	16	3	-
2006	5	5	-	-	-	5	-	-
2007	93	46	15	32	7	71	15	0
2008.6	112	41	0	71	4	94	14	0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이에 한국 정부는 키리바시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2006.12) 하고, 성매매 피해소녀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AUD 400불, 국가청소년위원회)하였다. 또한 배를 타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HIV/AIDS 예방교육 실시하였다. 한편, UNICEF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10만불을 지원(2007년)하였다.

그 후 동남아 주변국가에서는 한국 유학생 등이 해외 원정성매매 문제를 고발하여 적발된 사례들도 있다. 유학생에 의한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년소녀 71명을 데리고 아동포르노 쇼를 운영한다는 제보에 따라 ECPAT Korea가 2006년 7월에 직접 현장검증을 거쳐 사실을 확인하였다. 적발된 사업장은 폐쇄(2005년)되었고, 운영자는 추방되었다. 아울러 음란 스트립쇼 자행 및 성매매 알선하던 나이트클럽도 폐쇄(2006년)되는 등 한국인에 의한 퇴폐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태국 파타야 지역의 경우, 한국인이 경영하는 가라오케가 10여개, 4~500명의 여성이 종사하는 등 가라오케 및 바디마사지 업소에서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ECPAT Korea가 7월 조사). 이러한 곳에서는 단체관광을 온 한국 남성 뿐 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처처럼 동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태국이나 필리핀은 관광이 주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가이어서, 당사국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의지 및 인신매매·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과 후 한국 정부는 해외성매매 방지대책 수립(Prevention

Plan of Sex Tourism, 2006년)하게 되었다.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해외 한인사회, 여행업체 등에 홍보교육 및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검거강화, 관계부처 간 업무 공조체제 구축, 해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아울러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근거를 마련하였다(2008. 3월).

해외에서의 성매매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강화하여 재외 공관을 통한 성매매 관련 추방자에 대한 행정제재²⁾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성매매 알선 여행사에 대해서도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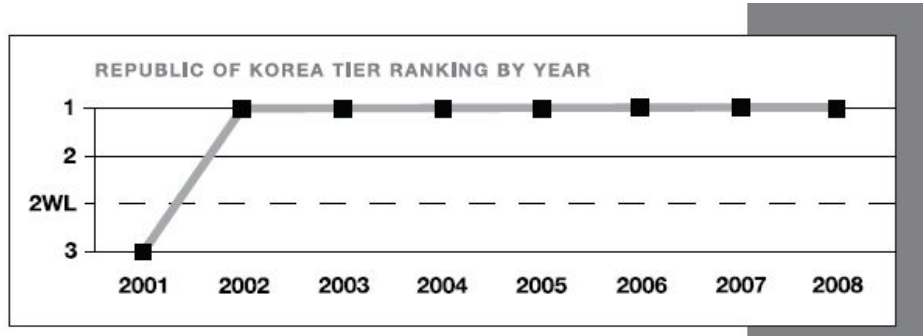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매매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대처를 위해 발리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발리프로세스란 2002년 발리에서 개최된 ‘인신매매와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급 회담’ 계기로 설립, 인신매매 및 관련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60여 개국 1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성매매 현황 및 국가의 노력을 분석·평가하여 4등급(1등급, 2등급, 주의대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 “국제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1년 3등급으로 규정된 이래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를 의미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³⁾

2) 2008년 상반기 5건(알선 2건, 성매매 2건, 수송 1건)

3) 이는 제2차 대회 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이 미국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인신매매 등급현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 높이 평가되어 1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해외 아동성매매 관광 증가 및 외국인 인신매매 유입 증가, 해외 성매매 업소 진출 등의 문제가 2007년 2008년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08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주요 발표내용에 의하면 한국은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여성과 여아를 인신매매하는 주요 송출국이다. 국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국내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한국 여성과 여아들이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 등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신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 예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사기행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한국정부는 부정직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하였다. 한편, 아동 성매매 관광과 관련한 한국에 대한 권고안은 관광 목적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가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신부 보호 법률 제정·시행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는 해외 유흥업소에 대한 처벌 및 수사는 강화되어 있으나, 해외아동 성매매,

국제결혼 피해자, 다문화 가정 대책 등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이 확대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팀은 이미 구성(2007.5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해외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 송출 단속부분에만 집중하여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수요자 체포·기소·처벌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 및 재외 공관들과의 단속 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요 성매매 송출대상국(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동남아 국가들의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제2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원인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이 성의식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성폭력이다. 정규석·김영중(2003)은 Henggeler의 다체계적 관점을 활용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체계요인으로 분석하였다⁴⁾. 홍봉선 외(2007)의 경우에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유입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유지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1. 개인요인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개인요인으로 발달심리학적 특성, 성태도, 소비적, 물질적 욕구지향, 자아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특성에 의해 성적 성숙도와 성의식이 달라져 이성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많

4) Henggeler의 청소년 행동에 관한 다체계적 관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특성 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의 주요 환경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관점임(Henggeler, 1982; Henggeler & Borduin, 1990; 정규석·김영중, 2003에서 재인용).

아저 자연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 대부분이 임신, 성교 등의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기여서 기성세대를 거부하며, 또래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나쁜 영향을 받아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태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행동유형은 가치체계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강태순, 1994; 홍봉선 외, 2007 재인용).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혼전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과 혼전 임신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지식이 전무하거나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한 무관심, 성매매에 대한 자기인식 부족, 성관계 혹은 남녀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미흡, 가부장적 성역할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김은정, 2002; 홍봉선 외, 2007 재인용).

소비적, 물질적 욕구지향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 문화가 비판적 수용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도 모방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무분별한 소비문화와 함께 청소년 성매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유문무, 2005). 이와 함께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소비와 패션에서 자신들의 독특성과 개성을 발휘하고 또래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이들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으며, 따라서 유행에 뒤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⁵⁾.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성매매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는 낮은 자아존중감 때문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매매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홍봉선 외, 2007).

5) 우장훈(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 또는 청소년 성매매에 충동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쉽게 돈벌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므로(62.9%), 용돈이 부족해서(39%)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원인은 청소년들의 소비행태나 소비문화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고 함.

2. 가정적 요인

가정적 요인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bert & Pine(1981)은 조사에 참여한 성매매경험자 중 60%가 어린이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Bagley & Young(1987)은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한 조사대상자의 2/3 정도가 어린이시절 성적 피해와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McMullen(1987), Seng(1989)은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등 아동기의 피해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 심한 성적 착취를 당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Schissel과 Fedec(1999)은 성매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가출경험 등이 성매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홍봉선 외, 2007 재인용).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불화,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가정의 빈곤 등이 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도역량을 약화시킴으로 청소년들이 방황하게 되고 비행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 성매매 또한 가족체계와 청소년이 튼튼한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규석, 김영중, 2003).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나 결속감 결여,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등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이 성매매와 관련이 된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의 가정환경 중 부모의 이혼 등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범죄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인 억제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 간 불화, 애정결핍, 대화 단절 등은 청소년 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청소년 성매매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박동균, 2001).

청소년 성매매와 가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출한 청소년이 쉽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성매매라는 것이다.

3. 학교적 요인

성매매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감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적절한 교육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그들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안정하게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쉽게 성매매에 개입하다고 한다(Badgley, 1984; Seng, 1989; Boritch, 1997; 홍봉선 외, 2007 재인용).

민무숙 외(1999)에 따르면 학업성적, 학교의 민주성, 교사에 대한 애착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하며, 김준호 외(1995)도 학교에 대한 성취도가 낮고 학업에 대한 헌신도가 낮으며,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하였다(홍봉선 외, 2007 재인용).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이며, 학생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의 현실은 부정적 청소년 문화와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 많은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성매매 또한 부정적 청소년 문화 혹은 청소년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규석·김영중, 2003).

4. 친구요인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는 또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으며,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의 공식적인 성 사회화 기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성 사회화 과정의 비공식적 기제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 집단이다. 또한 친구 집단이 일탈 성향을 가진 비행 집단일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청소년들 보다 비행 청소년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주위에 많을수록 성과 관련된 문제에 많이 노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친구의 부추김 혹은 소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또래집단의 허용적 문화 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조성연 외, 2000).

5. 사회문화적 요인

청소년 성매매 발생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심리의 팽배를 지적할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는 성 가치의 하락과 연결되면서 더욱 성매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건 또한 청소년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자기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또래문화에 대한 동조성이 강하므로 청소년들은 소비욕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으로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고, 10대 어린소녀들의 원조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김시업, 2000).

또 다른 한 가지 성매매에 영향을 주는 사회요인으로 성윤리와 성가치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 자본주의 토대위에 고속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성 산업이 번성하면서 성인 남성 위주의 퇴폐적인 성문화와 함께 연령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성적 서비스 산업이 은폐된 가운데 급속도로 발달해 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서구문화를 대량 유입시킴으로써 개방 풍조를 가져왔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음란물 접촉을 보편화시켰으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대화방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사용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외에 청소년 성매매 통제 체제와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미비를 청소년 성매매를 방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정규석·김영중, 2003).

제3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향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성착취는 아동청소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아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사회적 차원에서는 배금주의·쾌락주의에 물들게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킨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제2의 범죄 즉 영아살해, 살인, 강간, 성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양산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성착취의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인 측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건강상에 문제를 가질 우려가 높다. 성착취(성폭력) 당시 가해자의 폭력에 의한 좌상, 타박상 및 찰과상과 유방 및 성기 등의 발적, 열상 및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성폭력으로 성병 등의 세균감염과 성기손상 등은 부가적으로 불면증, 식욕상실, 악몽 등의 심인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신현기·이상열, 2006). 성매매에 개입된 청소년은 임신·낙태 혹은 성병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존귀의식이 약화되기도 한다(정규석·김영중, 2003).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된다(정규석·김영중, 2003).

2. 심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은 무기력, 상황에 대한 자기기만과 적응, 행동 및 사고의 은밀성, 폭로에 대한 위기의식, 혼동 및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동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며, 성폭력의 피해기간이 길어지고 상태가 심해질 경우에는 해리상태가 되기도 한다(이윤호·이금형, 2007).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셔서 맺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

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갖게 된다(신미식, 2000). 이로 인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래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삶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하게 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

성매매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모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부정적인 자의식도 형성하게 된다(조성연, 2000). 부정적인 자의식은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성폭력 피해 기간이 길수록 피해아동은 그 상황에 어떻게 자신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을 갖게 된다. 즉, 성폭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피해아동은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진전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경우, 더 이상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고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죄의식이 형성하게 된다. 즉, 피해아동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잘못의 책임을 가해자에서 자신에게 이동시킴으로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아동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비밀에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가족 또는 친구 등을 해치겠다는 가해자의 추가적인 협박·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아동 스스로 자기 자신만 조용하면 가족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동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자녀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피해 아동은 불안 증상과 함께 위기의식을 갖게 되며,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초조해 보인다.

아동의 불안함과 위기의식이 심할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해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아동에게 사실이 폭로되더라도 부모와 주위사람들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특히 피해아동이 비밀 폭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 위기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은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자존

감은 상실시킨다. 따라서 아동이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혜롭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며, 만일 큰 정서적 장애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단절, 심리적 상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성산업으로 재유입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비행 조장

성착취 피해아동은 성착취의 결과로 사회적 위험상황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약물남용, 폭력, 비행 등 기타 사회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향이 많다. 남미에 (2001)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은 가출, 약물사용, 경찰구속, 성관련시설 이용은 물론 임신, 성병,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피해 등도 많음을 보고하였다.

Inciardi 등(1991)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성착취 피해아동소년에게서 높는데 특히 어린시절 경험한 신체적, 성적 학대나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 성매매행위는 지속적인 약물 사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성매매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아동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비행에 더 많이 노출되어 쉽게 비행에 개입되고 경찰에 구속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선 외, 2007, 재인용). 따라서 성착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성착취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의 노출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따르는 피해도 큼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사회의 성윤리 파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성행은 성문란을 부추김으로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

하며, 국가 차원에서 성윤리 전반을 파괴하기도 한다(심영희, 2001; 정규석·김영중, 2003).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한번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꿈을 잃게 됨에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제3장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구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대책으로서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제3차 세계대회의 5개의 핵심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5개 주제에는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성착취 예방제도, 국제적 공조체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주제별로 국내의 이행실태를 정리하였다.

제1절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 범죄자의 처벌강화, 재범방지, 사전예방 및 피해자 보호강화 등을 위해 이들 관련 법률을 개정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

1. 아동매매·성매매 행위 및 음란물 관련 성 범죄자 처벌강화

가. 아동매매·성매매 행위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

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확대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88조는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상습으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 노출 등 직·간접적 성적 접대행위 또는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나. 아동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아동음란물 관련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아동음란물 관련 성범죄자에 관한 법적 제재규정으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 아동성착취 관련법 및 주요내용

구분	법명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 노출 등 직·간접적 성적 접대행위 또는 유흥을 돈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연령에 상관없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性)을 파는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동 피해자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형법	제288조는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4조는 위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청소년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는 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등에 대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에 대한 처벌을 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2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 추적제도를 도입.

또한 제244조는 위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청소년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는 바, 청소년유해매체물⁶⁾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조정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강간과 동일하게 엄벌하도록 하였다. 즉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제9조, 제10조)을 개정(2008. 6. 13)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임(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항).

1) 강간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법 제8조의 2 제1항).

2) 유사강간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에 추가하였다(법 제8조의 2 제2항).

3)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법 제8조의 2 제3항).

〈표 3-2〉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강간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유사성교행위	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표 3-3〉 유사성교 행위 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유사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 -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추가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4) 성폭력 상해 또는 치상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 제1항).

5) 성폭력 살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제1항).

6) 성폭력 치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제2항, 제3항).

〈표 3-4〉 성폭력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법정형 정비

구분	현행	개정안
성폭력 상해 또는 치상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 포함)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추진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토록 성폭력특별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외국의 공소시효 제도를 살펴보면, 강간 공소시효는 일본의 경우 10년, 독일 20년, 미국 최소 15년으로 우리나라(7년)보다 긴 편이다. 미성년자 강간 시 공소시효 정지여부에 관해서는 독일은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은 25세가 될 때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 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사항은 없다.

〈표 3-5〉 외국의 공소시효제도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강간 공소시효	7년	10년	20년	최소 15년
미성년자 강간 시 공소시효 정지여부	없음	없음	피해자가 18세 될 때까지	피해자가 25세 될 때까지(연방법)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2. 성구매자 재범방지 관련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구매자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가. 친고제 폐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으며,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영리의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성매매 등 모든 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이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열람 할 수 있도록 등록·열람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⁷⁾. 자세한 내용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열람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표 3-6> 신상공개제도 개요

구분	등록제도	열람제도
등록·열람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미포함)	판결확정시부터 5년간 (교정시설 수용시는 형집행후 시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신상정보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죄는 같은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미만인 경우에 한함 	<p><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열람명령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 13세미만 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형법에 의거 불 처벌되는 심신장애자 중 성폭력범죄 재범이 우려되는 자 - 열람명령 선고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단,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 청소년범죄인은 제외
등록 및 열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소유차량 등록번호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사진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열람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거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시군구 소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의 장
등록·열람처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범죄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7) 아동·청소년대상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007년 7월 개정하였으며, 새로운 법 개정으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2회 이상 금고이상 실행 선고자의 신상정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관리하고, 피해자·보호자·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에게 열람을 허용함.

2001년 8월 30일 이후 2007년 11월 21일 현재까지 13차에 걸쳐서 신상 공개된 대상자는 총 6,519명이다. 이들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이 2,171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 2,082명(31.9%), 성매수 1,576명(24.2%), 성매수 알선 667명(10.2%), 음란물 제작 23명(0.4%) 등이다. 이들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량은 집행유예가 53.2%, 실형은 38.3%, 벌금 8.5% 등이다.

〈표 3-7〉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자 현황(2001. 8. 30~2007. 11. 21)

(단위: 명, %)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계
전체	2,171	2,082	1,576	667	23	6,519
비율	33.3	31.9	24.2	10.2	0.4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다. 취업제한제도 확대·강화

성매매 등 모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형 확정 후 10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을 금지 하도록 취업제한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장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과태료)을 신설하였다. 즉,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이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3-8〉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소)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설기관수	관계부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390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및 교습소	116,200	교육과학기술부
보육시설	29,62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3,215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지원센터	1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텔 등)	810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쉼터	79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1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24,644	국토해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45,800	문화체육관광부
계	240,033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 청소년 보육정책 참고자료』, 2008. 10.

라.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 위치추적 제도 도입

2007년 4월 2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토록 하는 제도로서('08. 10),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 및 아동 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인 경우는 형기만료 후 최장 5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이와는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 있는 경우 중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그리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마.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 도입

2005년 8월 제정 및 공포된 치료감호법을 2008년 5월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증(pedophilia)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 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행·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 석방여부를 결정토록 한다('08. 9).

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토록 하였다('08. 9).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사회적 침해도 및 재범률이 높은 11개 범죄를 대상으로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 DNA, 검찰은 수형자 DNA를 각각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사.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법 개정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정부는 2008년 3월 28일 여권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의 개정으로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3-9〉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제한, 반납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06	계
여권발급제한	2	8	11	5	26

자료: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2008.

동 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2008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이 제한된 건수는 성매매 알선 2건, 성매매 2건, 성매매자 수송 1건 등 총 5건이었다.

3.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관련

가. 피해자 법적 보호 및 미처벌

특별법으로서 2004년 3월 제정, 동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性)을 파는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동 피해자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을 개정하여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여 친부로부터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친권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피해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시설, 상담시설에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4. 성범죄 예방 관련

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마다 국내의 성매매 실태 조사 실시 및 성매매 실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성매매 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제3조의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

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나. 홍보영상 제작, 배포 및 송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소년 성매수 미수범 처벌제도(그루밍제도) 도입 검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시도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써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성매수를 위해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유인하였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 법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 (표 참조).

8) 영국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2절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는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처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있다. 부처별 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지귀를 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가족부: CYS-Net,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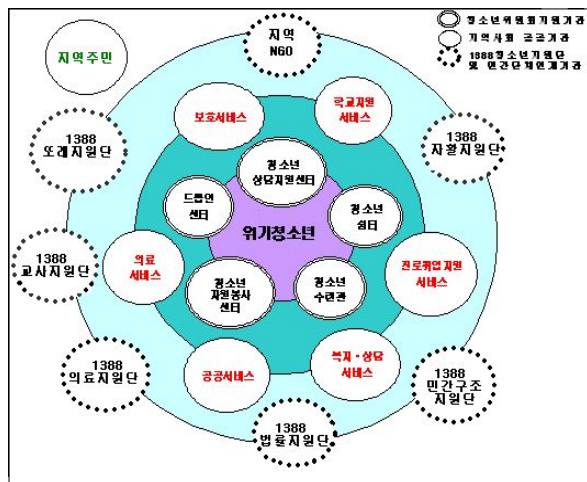
가. CYS-Net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시한 가출,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CYS-Net(Community Youth Service Network: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위기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적, 파편화된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에 구축되었다. 위기청소년은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발견되며, 발견즉시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는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CYS-Net의 추진체계와 운영프로세스, 서비스 체계는 다음의 3개의 그림과 같다.

CYS-Net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06년에는 관계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2만명에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그 기능 및 인프라가 확대되었고, 지속적인 추진결과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림 3-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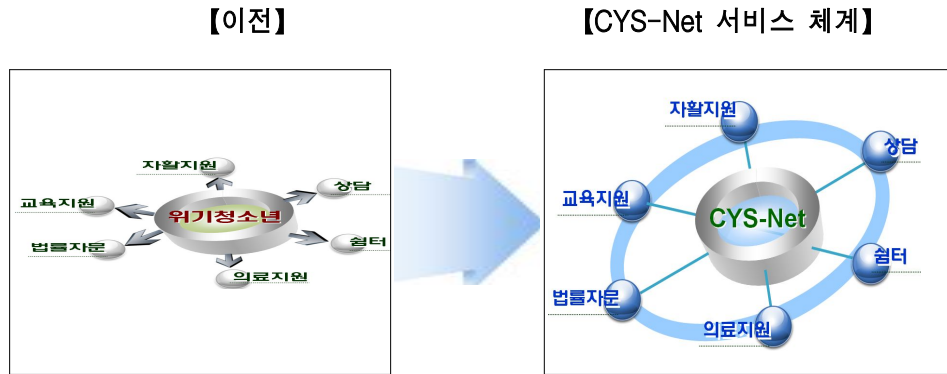


【운영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그림 3-2] CYS-Net 서비스 체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2008년 현재 CYS-Net 이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성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중 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건강진단, 약품지원, 치료지원 등 총 2,785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고,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는 법률자문, 변호지원, 조사동행 등 총 717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지속 추진에 따른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전문상담사 배치 및 CYS-Net 연계 등 교육 종료 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재유입 예방 효과성 제고하고 있다.

〈표 3-10〉 CYS-Net 서비스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 건)

구분	지지	정보	긴급	입소	일시	식사	가족	의료	기관	조사	법률	교육
연도	상담	제공	구조	의뢰	보호	제공	상담	지원	연계	동행	지원	지원
2006년	73,468	47,725	1,311	1,154	3,898	8,032	9,447	1,406	5,519	231	327	1,957
2007년	107,048	85,484	1,482	1,579	6,652	12,227	18,605	1,658	12,174	334	427	3,205
구분	합의	의복	자립	귀가	행정	상담	사후	문화	교통비	기타	합계	
연도	중재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중결	관리	활동	지원	기타	합계	
2006년	360	1,309	495	1,598	404	1,247	2,710	2,166	0	8,893	173,657	
2007년	3,205	663	2,439	1,469	2,424	892	2,118	3,346	2,374	822	278,3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2008.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CYS-Net)은 '05년에 4개소, '06년에 54개소, '07년 68개소, '08년에 8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는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기존 교육, 보호, 취업, 의료기관 등 총 1만여개의 지역시설(의료·법률관련기관 포함)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표 3-11〉 연도별 CYS-Net 사업 내역

(단위: 개소)

구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소요예산 (지자체 경상보조, 50:50 매칭)	지원 청소년 수
2005년	(10월~12월시범실시)	-	6.75억	3,000명
2006년	16	38	47억	29,190명
2007년	16	52	50.6억	56,899명
2008년	16	64	55.52억	60,000명(목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향후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교과부와 연계 협력하여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할 예정이며, 학교, 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병원·보건소, 경찰서 등과 같은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기관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7개소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위탁을 맺고서 청소년들을 교육하였다. 교육수료 후 법률, 의료, 진로지원 등 청소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총 255명에게 실시하였다('08.6.30). 교육실시 후 제공된 사후관리 서비스 유형에는 일반상담, 가정 및 학교복귀, 진학지도,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이 있다.

성착취 피해대상자의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성매매 피해청소년 프로그램 수료 후, 관련 국외기관 방문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아대책본부의 후원 하에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을 필리핀에 단기간 파견하였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집짓는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긍심이 제고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등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박스 참조).

※ 모범사례: 필리핀에서의 집짓기 프로젝트

대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치료재활교육을 마친 청소년 7명이 2006년 2월 (7박 8일) 기아대책 추진단에서 수행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일명 '손끝으로 전해지는 사랑')에 참여하였다.

동 사업은 필리핀의 세인트버나드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사업의 목적은 산사태로 인해 가옥이 파괴된 마마누아족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마을 아동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효능감이 제고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 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총 17개의 시설을 두었고,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총 18개 시설을 두었다. 2004년에는 소규모센터 23개를 추가로 두었다. 특히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서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 아동보호를 위한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008년 현재는 전국에는 총 4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편찬한 2008년도 아동청소년백서를 주로 참조함.

1391)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각한 학대 상황인 경우 피해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보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가족을 상담하고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체계가 미흡하다. 아울러 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부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일반지원시설 41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14개소, 그룹홈 9개소,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3개소, 자활지원센터 5개소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별히 자활지원센터는 탈업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시설은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하며,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과 자립 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위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1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역할

구 분	입소·이용 대상 (기본입소기간)	주 요 기 능	비 고
일반 지원시설 (41개소)	일반성인 (1년)	-숙식 제공 및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필요시 입소기간 6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14개소)	청소년 ¹⁾ (1년)	일반지원시설과 내용일치 *진학을 위한 교육제공 및 교육기관에의 취학을 연계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고교재학 및 진학을 위한 교육훈련 중인 입소자는 19세가 되더라도 재학(훈련) 기간 동안 입소가능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9개소)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1년)	일정기간 주거 지원	6개월 단위로 3년에 도달할 때 까지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3개소)	외국인 여성(3월)	-피해여성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제공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대사관 등 관계기관 연계 -숙식의 제공, 귀국지원 등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입소 연장
자활지원 센터 (5개소)	-의료·법률적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활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탈성매매 여성 -그 외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전업 준비를 위한 훈련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 -외부자원 활용 연계 구축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문적·단계적 전업지원 위주로 운영

주: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2008.

일반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1년이며,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입소기간은 1년이며, 입소자 본인이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하고 있다. 한편, 고교 재학 또는 진학을 위한 교육훈련 중인 입소자는 19세가 되더라도 재학(훈련)기간 동안 입소가 가능하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3〉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단위: 개소/명/건)

구분	시설현황	연중 입소·이용인원	구조·자활지원 실적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교육지원
2006	14	1,040	3,391	120	850	970
2007	14	886	2,561	107	1,229	732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2008.

한편, 전국에 그룹홈은 9개소(서울 3, 부산 2, 경기 1, 충남 1, 전북 1, 경남 1),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3개소(서울 1, 경기 1, 경남 1), 자활지원센터는 5개소(서울 1, 부산 1, 인천 1, 경기 1, 전북 1)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된 각종 서비스의 수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007년 현재 총 41만명이 지원받았고,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내역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으로 3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그 다음은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으로 5만5천여명이 지원받았다. 사회적 보호 25천명, 여가 문화활동 13천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표 3-14〉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서비스 제공 내역 및 수혜자수

(단위: 명)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6년	143,490	8,365	14,860	1,957	495	1,406	918	2,166	173,657
2007년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주: 1) 수혜자 인원 : '06년 29,100명 → '07년 56,899명(전년대비 195%)

2) 지원 서비스 : '06년 173,657건 → '07년 412,811건(전년대비 238%)

자료: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운영시설,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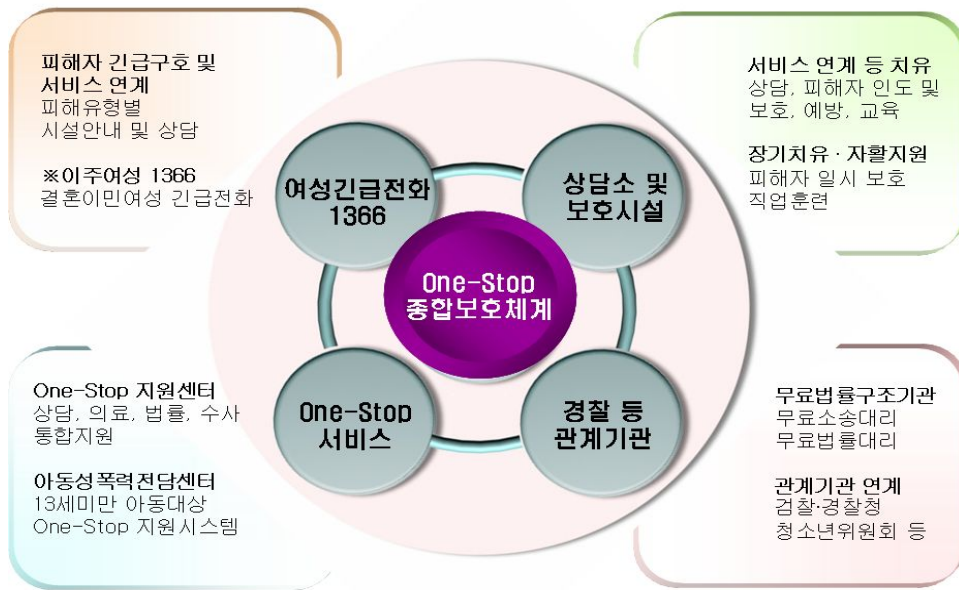
나.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원스톱시스템 도입되었고, 피해상담, 임상심리검사, 정신과·산부인과적 진료, 진술녹화, 법률·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04년에 서울, '06년에 대구와 광주에 설치하여 전국에 3개소가 있으며, 여성부가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04년 6월부터 '07년 12월까지 총 2,879명에 피해아동에 대해 22,021건 서비스 지원하였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전국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3자 협약(시도-시도경찰청-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352명에 28,236건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신고, 상담 및 심리지원, 일시보호,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며, 성폭력상담소 전국 202개소로, '07년 기준 총 58,628건을 지원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20개소 운영 중이며, '07년 기준 총 355명이 입소하여 보호 서비스를 받았다. 이상의 지원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여성부, 2007).

[그림 3-3] 여성부의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자료: 여성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2007, p32.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은 '07년에 40개 시설에서 847명 피해자가 이수하였으며, '08년 상반기는 50개 시설에서 832명이 이수하였다. '07년도에 성폭력 피해자 7,3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원 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07년도에 3,910건(가정폭력 포함)을 처리 하였다.

향후,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를 2010년 17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2009년에는 17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 및 의료·법률 등 종합

지원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거점으로 한 아동성폭력 지원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에서의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할 계획에 있다. 한편, 청소년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대상 청소년의 종합적 수요에 One-Stop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이 사회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며, 자활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설확충, 상담원 양성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에 있다.

3. 경찰청: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여('04. 6), 성매매피해여성 24시간 긴급, 성매매접수, 구조 활동을 하고 NGO연계 등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08년 상반기현재 성매매 강요 등 신고는 1,067건이었고, 업주 등 153명을 검거하였으며, 피해여성 172명을 구조하였다. 「117 센터」에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경찰관이 24시간 3교대 근무하면서,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지도 등 업무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117 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터넷 피해 신고 및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표 3-15〉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실적('04~'07)

구분	신 고 내 용							조 치				
	계	납치 감금	성매매 강요	선불금	업소 단속	상담	기타	계	수사	상담	NGO 연계	기타
'04.6~12	1,012	24	134	221	516	53	64	1,282	537	463	270	12
'05년	1,679	18	88	199	547	354	473	2,600	625	1,364	588	23
'06년	2,595	38	58	222	510	1,322	445	2,595	667	1,634	294	0
'07년	4,006	39	56	196	472	1,365	1,878	4,006	473	2,847	684	2
'08. 6월	1,067	25	22	60	162	549	249	1,067	153	742	172	0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2008.

아울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두어 수사·상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05. 8. 31 개소). 현재 전국에 15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법률상담 및 진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8년 상반기 현재피해자 4,972명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원센터에서는 진술녹화실 활용, 조사과정 녹화 및 증거자료제출로 피해자 이중 출석을 방지하고 있다. '08년 상반기 현재 총 974명이 진술을 녹화하였다. 향후에는 「ONE-STOP지원센터」 홍보강화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3-16〉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06~'07)

구 분	피해자(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 력	가정 폭력	성매 매	학교 폭력	기 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 조서
'06년	4,764	2,868	1,284	48	226	338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07년	9,352	5,701	2,463	105	336	747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8.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정신지체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보호자 또는 NGO 등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불입건된 성매매 피해여성 및 대상청소년을 대상으로 NGO 등을 통한 심리상담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훈련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117센터 홈페이지에 NGO 단체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신고접수를 연계하는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4.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무부에서는 아동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교육,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동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6개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

었으며, 이 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직후의 피해자 보호·지원활동(피해상담, 응급진료 안내, 보호시설 안내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원(신변보호,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지원 등), 손실복구 지원(범죄피해자 구조금 안내, 의료·경제적 지원, 취업알선, 형사조정 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 아동 등도 차별 없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법률구조 안내,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생계비·학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하여 구조금지급요건 중 ‘생계곤란’요건을 삭제하였고, 구조금 지급 유족 범위 확대하였고, 구조금지급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아동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2005년)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 외에 위자료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공판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피해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배상명령, 형사화해제도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2)을 수립하였고, 2008년 「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도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소송대리,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대한민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위하여 관련부처 간 및 민간단체와의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위하여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여성부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성매매방지대책 추진단’ 등이 있다.

한편, 국가에 의한 청소년 성보호 시책추진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도 청소년 성보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성·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사회교육 및 건전성문화 조성활동 등을 전개함과 더불어 음란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교육재활 훈련기관을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의료·법률지원,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대책이 포함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여성부는 '08년 4월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주관, 9개 부처(여성부(간사),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의 조정·지원·평가, 성범죄·유괴·실종 등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그 밖의 아동·여성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

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는 현재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아동성폭력 예방 홍보활동과 상담인력 양성,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교정·치료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경우,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매년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학교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음란물 접속 차단이나 PC방 단속 및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에 올해 2천여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문구점과 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학생통합지원센터’를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온라인 신고 및 상담창구 개설 등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종합대책 이행 및 지속적인 과제 개발하고, 주요사안 및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며, 성폭력 관련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하고,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범국민 차원으로 승화하여 사회적 경각심 제고할 계획이다.

2.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되어 '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가족부에 속해 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검사를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 부처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시·군·구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며,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단속, 청소년 성매

매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등과 관련하여 가출·위기 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자를 단속하였다. 단속활동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은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 하며,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를 의뢰하였다.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Master Plan on the Prevention against Prostitution)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탈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성매매 단속강화로 성매매업소수와 종사여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매매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대책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총 3대 분야 (①Raising Public Consciousness ②Prevention(Prohibition & Prosecution) ③Protection), 73개 과제(Tasks)로 구성되어 있다.

’07년 12월부터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04년에 수립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3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유린 감소 및 집결지 (brothel-concentrated area)는 축소 된 반면, 변종 성매매업소·인터넷 성매매·해외 성매매 증가 등 성매매방지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방지 강화대책 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롭게 강화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은 정책과제의 분류를 국제사회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예방, 보호, 집행”(3P : Prevention, Protection, Prosecution)의 틀로 구분하여 과제를 정비하였으며 개선과제를 새롭게 신설하고 보완(* 50개 과제 (Tasks)로 구성)하였다.

앞으로도 범정부적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08년 4월부터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예방> : 놀이터·공원 등 CCTV 설치, 「아동 안전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아동에 대한 성교육 및 안전 교육 강화, 부모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실시 등
- <금지 및 집행>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반 편성·운영, 성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엠버경보’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위기 아동 조기발견 등
- <보호> :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피해자지원체계의 전국 확대 구축·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양성·배치,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교육 실시 등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법무부는 성매매사범 처리현황, 경찰청은 연도별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조치결과, 성매매사범 유형, 연령별·직업별 피의자 분류 등의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4. 해외성매매방지대책

정부는 ‘해외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해외 한인사회·여행업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였고,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공조 체제 마련하였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 구성하여 해외성매매 알선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여권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관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여권법 개정하여 광고 및 국외여행사 및 인솔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한인 여행사, 음식점, 유흥업소 대상 건전업소 자체 인증제 추진하는 등 해외 한인회 중심의 자정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수여행상품인증을 통해 여행자에게 건전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외성매매 및 불건전한 여행상품의 경우 인증을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행불편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행업체 국외여

행인솔자 교육,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 안전 문화여행 캠페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UCC 공모전 실시(2회, '07.8월 및 '08.8월)하여, 수상작 홍보 및 현장단체 교육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협조를 통한 해외성매매 방지 PDP-TV 광고 실시('08.7~8월)한 바 있다.

향후에는 NGO 및 관련기관과의 T/F팀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국제기관 및 NGO로부터 보유 자료가 공유되고 성범죄자 정보 및 상업적 성착취 등의 관련 정보를 해외여행 업계와 공유하면서, 사전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해외여행사업체 사내교육의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각 부처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자활지원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관계 국가간 성매매방지 NGO 연계활동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간 보호·자활지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귀국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정책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전광판 및 PDP-TV 광고, 캠페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업체는 관계기관 통보(지자체, 세무서 등)하고,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통해 해외여행 품질 개선하며, 해외여행업체 자율정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5. 기타: 「성폭력대책단」 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5대 폭력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의 성폭력대책단 운영하였다. 국무총리실 주관의 5대 폭력근절 관계장관회의에 성폭력이 추가('06.5) 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민관 합동의 「성폭력대책단」 구성('06.6)하여 운영함으로써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었다. 관련 기구(담당자)로는 여성부(간사),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담당 국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3

인(정신과 교수, 심리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있다.

5대폭력근절을 위한 성폭력대책단은 근거훈령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대폭력근절 관계장관회의 및 성폭력대책단 운영 종료되었다('07.12).

'08년 4월부터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연대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여성폭력 관련시설, 아동보호 관련시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부처간 및 민간단체와의 회의 및 공조에 힘쓰고 있다. '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협력하여 아동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TF 구성·운영하였으며, '07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가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07년부터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하여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07년 4월에는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여성부, 경찰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참여하는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이 '08.5월부터 진행 중이다.

제4절 성착취 예방제도

우리나라는 아동의 성범죄 및 성착취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및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또는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 고발활동 등의 활동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시정과 건의를 수행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2.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성교육 실시

청소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한 아동·청소년 상담기관이 차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민간 상담기관으로서 각종 사회단체 상담실, 종교단체 산하 상담실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고충과 성관련 문제를 포함한 고민거리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상담기관은 상담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¹⁰⁾를 두어 성매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편찬한 2008년도 아동청소년백서를 주로 참조함.

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은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비해 및 성범죄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 찾아가는 성교육(유치원, 각급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등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16개소가 설치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운영되었던 참여형 성교육관 5개소가 성문화센터로 기능하여 총 21개소, 2008년에는 신규로 8개 시설이 문을 열어 현재는 총 2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3.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성매매 예방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성매매 방지 전문 상담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들 성매매방지 전문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 등 개별기준을 갖춘 후 이론 교육 100시간과 실습 50시간 등 총 150시간의 교육·실습을 이수한 자로서, 성매매방지 시설 및 관련 상담소 등에 배치되어 피해자 구조·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4. 신고의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직무의 성격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8

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확인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5. 실천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매매, 성매매 및 각종 유해매체물로부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분별력과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적 학습프로그램으로서 Youth Patrol이란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 48개 시범학교를 통해 Youth Patrol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Youth Patrol 프로그램 관련 학교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캠페인 전개 등 사이버공간은 물론 off-line에서도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전문강사 양성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예방교실 운영 및 아동성폭력 대처요령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였고, 성희롱 예방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자격취득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무화('06.7.13)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 아동·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및 사이버 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고시를 통해 유해매체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사이버 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상의 유해환경,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8. 청소년 성매수 미수범 처벌제도 도입 추진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성범죄법(제15조) 중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성매매의 매개체로서 인터넷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 성매매 관련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활동 및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다.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활동을 위해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폐쇄 조치를 위한 상시 심의제도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문제도 도입, 인터넷 성매매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불건전정보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서는 팝업창,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스팸전송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스팸민원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팸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불법 스팸전송자의 IP를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10. 성폭력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

2006년에는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을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매매 감소를 유도하였으며, 2007년에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2월 22일) 선포하였고,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국민인식확산과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문화 개선협의회」를 구성('07.3)·운영하였으며, 시·도 중심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시·군·구로 확대('07년, 50개)하였고,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지역감시 및 연계체제를 강화하였다.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전략으로서, 주요 도심 전광판 및 지하철에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동영상 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캠페인 및 아동권리에 대한 TV·라디오 광고 등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였다(여성부, 2008).

제5절 국제적 공조체계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및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은 다국적 범죄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동성착취 범죄의 최근동향과 이에 적절한 대응 및 예방, 범죄수사,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공적 개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아동성착취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국내외적인 관련 정책가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이러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기반이 되고 있다.

1. 공조수사 및 범죄정보교류

아동 성착취의 방지 및 수사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건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국, 중국 등 2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

해 해외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 진술, 증거 채취를 위한 상대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한 정보, 증거, 진술제공 등에 대해 상호 공조할 것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최근 6년간¹¹⁾ 우리나라가 공조 요청한 약 184건 중에서 122건이 형사사법공조 이행 완료되었으며, 외국이 우리나라에 공조 요청한 건수 271건 중에서 255건을 이행 완료하였다.

특히 아동성착취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해외성매매 방지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2007년 93명의 해외성매매사범을 검거하였다. 해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인신매매 사범 단속 및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캐나다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경찰청 외수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캐나다와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성매매 알선 밀입국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캐나다와의 국제공조를 위해서 3차례에 걸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G-8 첨단범죄 네트워크 가입하여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정보 교류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수사기관과 **contact point**를 구축하여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교환 등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폴 회원국(186개국)간 적극적인 국제공조 협력 강화하여 인터폴 Network을 통한 실시간 공조체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이주기구(IOM), ARF(ASEAN Regional Forum), ASEAN을 통한 지역차원에서의 인신매매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 대처를 위해 아·태지역 내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발리프로세스¹²⁾

11) 2003~2008.9현황, 법무부 자료 근거

12) 발리프로세스란 2002년 발리에서 개최된 ‘인신매매와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급 회담’ 계기로 설립된 인신매매 및 관련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인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60여개국 1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음.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적극 참여 중이다. 발리프로세스를 통해 국내법 정비 및 이행강화와 함께 정보공유, 법집행기관간 협력 등 인신매매 대체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논의 되어 온 바, 우리정부도 공공홍보(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조정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4국간 해외 성매매 방지·단속협약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해외 집단 밀입국 성매매 방지 및 단속을 위한 4국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상시 정보교환 체제 확립을 목적하고 있고, 정기적 유관기관 대책회의(반기별 1회) 및 Contact Point 간담회(반기별 1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비엔나 포럼(08.2.13-15),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등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다국적 범죄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 정부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해외원정 성매매 관련 해당국 수사기관 등의 수사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다. 재외공관, 여권분실 경위서, 여행증명발급 신청서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주재국 이민국 등과 해외공관간 아국인 추방절차 진행시 법원판결문 등 관련 사건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 및 불법체류 등의 범죄에 미국과 추진 중인 VWP(Visa Waiver Program)¹³⁾가 남용되지 않도록 대비 할 필요가 있다.

2.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협력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된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내의 내·외국인과 재외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4조2항

13) VWP: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에 대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 (미국 이민국적법 제217조)

에 따라 해당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확립하는 조치에 부응하는 것이다.

국외범죄인에 대한 송환은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의 인도대상범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이며, 선택의정서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대한민국 법률(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상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대상범죄이다. 또한 내국민이 외국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등과 관련된 죄를 범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8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여 국내로 송환·처벌하고 있고('08.9.16. 현재까지 63명 송환), 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08.9.16. 현재까지 26명 인도).

3.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우리나라는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왔다. 특히 매매·성매매에 취약한 여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총회 결의도 적극 지지해왔다. 2004년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7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8년 UN의 권고를 받았다. 2000년 12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의정서에 서명하였고, 현재 국내적으로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의 비준절차와 함께 동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아동의 상업적 성매매를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원에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간 국제인신매매방지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프로그램

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실태를 성착취 근절 국내 법제도, 피해자 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범정부차원의 협력체계, 성착취 예방제도, 국제적 공조체계 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착취 근절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등이 해당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해외 성매매 근절 등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동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 치료감호제도 도입,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자의 인터넷 공개 및 그루밍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성폭력 범죄자 추적·관리 및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중이다.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순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계도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공중파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또한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였다.

성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교육 및 재활을 위해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56개소), 여성부 산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14개소), 아동성폭력전담센터(3개소),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5개소),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지원센터(237개소), 성매매 피해청소년교육센터(7개소) 등이 있다.

아동 성착취의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위하여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단’ 등이 있다.

아동의 성범죄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이러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기반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조수사를 통한 국제적 규모의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해 서는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제4장 국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이행실태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외국의 법체계, 공공·민간기구들,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영국, 일본, 태국을 선정하였다. 다른 국가들 중에서 앞의 세 국가는 법체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국가여서 선택하였고, 태국은 성착취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에 대응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1절 미국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가장 큰 공급·소비국가 중 하나이다. ECPAT의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미국 연방수사국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사건 수는 113건에서 2,370건으로 1,997%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d). 아동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매년 14,500~17,500명 정도가 인신매매로 미국 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중 3분의 1 정도(4,800~5,800명) 정도가 18세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d).

지난 2001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대회 이후 미국은 국제인신매매범죄를 척결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UN의 아동권리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1. 법체계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적인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주법은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정의 및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아동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와 주 사이에 걸쳐 벌어지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불법적인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이동,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을 뿐이다. 주법은 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법체계의 단점은 각 주마다 주법상의 규정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아동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일관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성매매금지연령이 18세 이하 아동인데 반하여 다른 주에서는 16세 이하나 혹은 1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법령 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 주법¹⁴⁾

미국에는 각 주마다 성매매에 대한 정의, 성매매와 관련된 법 및 아동성매매에 대한 특별법 등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주의 경우, 아동이라는 대상에 대한 차별성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자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에 대한 성매매를 특정 범죄로 규정하는 주는 콜로라도, 메인,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아이다호 주 등 10개 주에 해당한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매매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성매매자와 아동간의 연령차가 4세 이상인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매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각 주마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데, 알라바마를 비롯한 32개 주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며, 알칸사를 비롯한 14개 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만을, 그리고 조지아주를

14) 본문의 내용은 김지선, 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6. 로부터 요약 및 발췌함.

비롯한 7개 주에서는 17세 이하의 아동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성매매를 중개하고 아동을 착취하는 포주에 대한 처벌은 아동의 성매매중개, 성매매 알선, 강요 및 유도, 성매매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 그리고 성매매기업을 운영, 관리하거나 지원받는 것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아동의 성매매중개에는 아동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된다. 아이오와 주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이후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고, 조장하며, 강요하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이득을 나누어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강요 및 유도에는 행동 및 구두로 아동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 강요 및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콜로라도 주는 아동 성매매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레곤 주는 아동성매매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 강요 및 유도에 포함되기도 하며, 때로 성매매 업소를 관리 및 운영하는 것과도 중복되기도 한다. 통상 성매매로 인하여 재정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가 해당되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 주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성매매에 기생하거나 그 이득을 얻어 사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처벌의 강도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중된다.

성매매 기업을 운영 관리하거나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성매매업소의 설립,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업소에서의 성매매 강요 및 유인, 업소의 후원, 포주에게 알선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운영관리에서도 성매매에 동원된 아동의 연령은 상당히 중요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몇몇 주에서는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법 규정 중 성매매 행위에 동원되도록 방조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에게 형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아리조나주 등 7개 주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 주에서는 아동이 성매매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동의한 부모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나. 연방법

아동성매매와 관련된 주법 이외에 미국의 연방법은 주로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된 미국 내 주와 주사이의 이동 혹은 외국과의 이동 행위 등에 적용된다. 연방법은 이를 위반한 범죄자에게는 주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주법과 연방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연계를 통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동성매매와 관련된 연방법으로 대표적인 법은 ‘Mann법(The Mann Act)’¹⁵⁾이라고 할 수 있다. Mann법은 성매매에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Mann법의 2421항은 성매매와 관련된 목적으로 주와 주 사이에 또는 외국으로 개인을 이동하는 것과 그러한 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별 규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징역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Mann법의 2422항은 강압 및 유인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이 성매매에 관련되거나 성범죄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그러한 시도조차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일 경우, 형량이 15년으로 가중된다.

Mann법의 2423항은 성범죄행위에 관련된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시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의도적으로 주와 주사이나 외국, 또는 미국 내의 주 및 기타 미국령에서 성매매나 성범죄 행위 또는 어떠한 유형의 성행위에 관련시킬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벌내용으로 벌금형이나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선고받기도 한다). 또한 성행위와 관련된 목적으로 18세 이하의 개인과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 또는 미국 시민이나 미

15) 관련 내용은 http://www4.law.comell.edu/uscode/18/usc_sup_01_18_10_I.html 의 18 U.S.C. § 2421-23. 을 참조함.

영주권자가 해외를 여행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거나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선고받기도 한다).

연방 정부는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의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아동을 이동시킬 때, 위와 같은 Mann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범죄자가 부모와 친구 및 지역사회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을 성매매하기 위한 이동 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성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가 아동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성적 약탈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은 성범죄행위를 제공하고, 성범죄행위를 하도록 고무시키고, 유인하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을(우편을 포함해서) 그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한다(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 있다)(P.L. 105-314, 1998).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 & 2005)’은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공교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의 환경에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등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도울 것과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였다(P.L. 106-386, 2000).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으로는 웨털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 메간법(Meagan's Law, 1996), 린치법, 그리고 아담월쉬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등이 있다. 웨털링법은 성범죄자의 등록과 정보공개를 규정한 최초의 법으로 이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감옥을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매주 1회씩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성폭력흉악범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웨털링법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 규정 없이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만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웨털링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메간 칸카(Megan Kanka)라는 7세 소녀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된 후 살해되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많

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웨털링법은 메간법(Megan's Law)에 의해 수정된다. 메간법은 연방법 상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에서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각 주별로 주 정부와 사법기관에 의하여 성범죄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메간법 이후 제정된 린처법과 아담윌쉬법 등이 메간법을 수정·보완하게 되어 현재의 연방법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의 연방법 상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는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제1급 범죄자(가장 경미한 죄질)는 출소 후 15년 동안 매년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급 범죄자는 출소 후 25년 동안 매 6개월마다 그리고 제3급 범죄자(중범죄자)는 평생 매 3개월마다 거주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성범죄자가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는 지역에 소재한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 및 사진 등이 포함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사진이 담긴 명단의 공개에 대한 법 조항은 2008년 *United States v. Powers*의 법정에서 연방판사인 Gregory Presnell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성범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장, 이중적 처벌 그리고 사법적 형평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2. 아동 성착취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가. 정부조직¹⁶⁾

아동 성착취 문제를 다루는 주요 정부 기관에는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우편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법무부는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의 단속 및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매매 등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성인 범죄자를 조사, 적발, 심판 및 처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주와 주 사이의 활동 및 규정 등에 대한 협조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16) 본문의 내용은 김지선, 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6. 로부터 요약 및 발췌함.

있으며, 주 행정기관의 직원 교육 및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국무부에서는 산하의 아동문제관리부, 정보 및 연구 사무국 등에서 아동의 불법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입하고 특히 국제적 유괴 및 입양과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관여하며, 국내 기관 간의 업무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무부는 주로 세관 조사국, 기밀관리부 등에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조사업무와 미국 내외로의 아동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자의 조사 및 처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편국은 우편감시서비스 및 범죄자 적발 사무국 등을 통하여,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착취 행위를 감시하고 범죄자를 적발하며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가족변론 프로그램, 법적보조사무국, 군범죄수사단체 등은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아동 인신매매 및 유괴 등에 대응하여 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아동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가출 및 노숙청소년 관리와 정보시스템을 지원하여 가출 및 노숙청소년의 성착취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성착취에 피해를 입거나 성착취 위협에 처해 있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 및 쉼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가출, 노숙 및 미아 보호 법(Runaway, Homeless,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ct 2003)’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비정부조직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조직으로는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성적인 목적의 아동 불법 매매의 근절을 위한 연합(ECPAT USA)’¹⁷⁾이 있다. 본 기관은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성착취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며, 관련 연구사업 및 전국적 단위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7) 관련 내용은 <http://www.ecpatusa.org/>을 참고함.

아동 성착취 관련 미의회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으로 ‘보호계획(Protection Project)’, ‘아동과 법에 대한 미국 변호사 협회(ABA Center on Children and the Law)’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아동과 관련된 법제정, 홍보 및 연구 등 입법, 정책개발 및 사법적 판결 등에 있어서 아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특히 아동학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⁸⁾

또한 ‘미아와 착취대상아동을 위한 전국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¹⁹⁾는 아동유괴와 아동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미아 찾기, 유괴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성착취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본 단체는 아동성착취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검사, 판사 및 기타 사법권 내의 전문가를 교육하며, 미아 및 유괴아동에 대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관련 전국적 규모의 기금 및 기타 보조금을 제공하는 단체로는 ‘Annie E. Casey Foudnation’, ‘Edna McConnel Clark Foundation’, ‘William T. Grant Found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아동 성착취 피해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등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영국

ECPAT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5,000명 정도의 아동이 성매매에 연결되어 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의 비율이 4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CPAT International, 2006c). 바르나르도(Barnard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피해아동들은 성착취의 첫단계로 비정형착취의 형태, 즉 성관계가 약물이나 주거의 댓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소녀들은 나이 든 성인남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정형적인 성매매에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 et. al., 2006).

18) 관련내용은 www.protectionproject.org 와 www.abanet.org/child/을 참고함.

19) 관련내용은 www.missingkids.com을 참고함.

성착취관련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영국으로 유입되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아프리카와 동유럽(특히 알바니아, 불가리아, 코소보,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그리고 러시아) 등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유입되는 아동들은 인신매매범죄자에 의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 혹은 입양되어 입국하는 것으로 보인다(ECPAT International, 2006c). 이러한 인신매매의 조직 및 운영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경찰은 매일 한번에 50,000명의 성착취 범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으며, 아동은 이러한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나 심지어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c). 그러나 아동의 이러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부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과 부모세대 간의 인터넷 사용기술 및 정보에 대한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성착취 실태에 대응하고자 영국은 ‘상업적 아동성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on Safeguarding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을 구축하였다. 본 계획은 아동청년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의 승인을 얻어 2001년도 아동성착취 관련 세계대회를 위한 영국정부의 준비과정 중에 마련되었으며, 계획상의 몇몇 조항들은 성실히 수행되고 있다.

1. 법체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²⁰⁾은 성폭력과 성착취관련 인신매매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으로 아동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및 그루밍(Grooming) 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아동 혹은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구강 및 항문성교포함)를 저지른 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14년

20) 관련 내용은 http://www.opsi.gov.uk/Acts/acts2003/ukpga_20030042_en_1의 “Sexual Offences Act 2003”을 참조함.

이하의 징역,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유발하거나, 조절하거나, 조직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국내외로부터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조직하거나 수행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자는 14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여행서류를 준비하였을 경우 등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착취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해외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할 지라도 영국국민이 범죄자일 경우, 동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약보다 더욱 진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성행위장면 대한 아동의 노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 법의 12조는 성인의 성행위 장면을 16세 미만의 아동이 고의적으로 쳐다보도록 하거나 성인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이미지를 보도록 할 경우, 원인제공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루밍(Sexual Grooming)’을 금지하고 있다. 그루밍이란 범죄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아동과 신뢰를 구축하는 연락, 인터넷 상의 대화, 친근감의 표현 등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에는 성적인 특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의 신뢰를 사는 것으로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 및 이민법(Asylum and Immigration Act 2004)’²¹⁾은 인신매매자가 영국이나 혹은 해외에서 성착취 될 것으로 인지하고 수행하는 인신매매의 조직, 수행 및 여행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는 14년의 징역과(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영국인일 경우 범죄발생장소가 국내외인지 여부에 관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1) 관련내용은 http://www.opsi.gov.uk/ACTS/acts2004/ukpga_20040019_en_1의 “Asylum and Immigration Act 2004”을 참조함.

‘형법(Criminal Justice Act 1988)’은 성적으로 아동의 문란한(indecent)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유인물 등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riminal Justice Act 1988) 형법 자체에는 문란한(indecent)모습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국의 사례법은 문란한 이미지를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성욕을 자극하는 모습을 담은 경우부터 성교행위장면 및 새디즘(sadism)이나 수간(獸姦) 등의 행위까지 다양한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c).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체계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 Children Act 2004)’²²⁾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아동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착취예방을 위하여 지역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긴급보호체계 구축 및 피해자 발생 시 조사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 성착취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가. 정부조직²³⁾

아동 성착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관련자에게만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영국의 경찰국에는 아동범죄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파트너십을 통하여 특정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성착취를 포함한)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는 아동보호 전문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경찰국 산하에는 특히 인터넷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 성애병자 온라인 조사팀(Paedophile Online Investigation Team: POLIT)’이 2003년도에 설립되었다. POLIT은 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경찰을 교육하여 아동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경찰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였다. POLIT은 2006년도에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센터(Child

22) 관련내용은 http://www.opsi.gov.uk/Acts/acts2004/ukpga_20040031_en_1을 참조함.

23) 본문의 내용은 ECPAT International의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U.K.” 보고서의 내용을 번역 및 발췌함.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동복지향상 및 아동의 안전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지역별 사회서비스국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의 경우, 지역기관에 의하여 보호 및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성폭력 피해자의 하나로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Victims of Violence and Abuse Prevention Programme (VVAPP)’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성폭력 및 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지원하며, 그러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에게 관련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의 빠른 회복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비정부조직

대표적인 아동성착취 관련 비정부조직으로서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Refugee Council’ 그리고 ‘Child Safe’ 등이 활동하고 있다. CRIN²⁴⁾은 전 세계의 각국에서 아동과 관련된 각 분야의 아동권리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場)이다. 이를 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아동권리관련 조약 및 각국의 아동권리관련 법 제정 및 개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상으로 공유 및 배포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전 세계의 아동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CRIN은 전 세계 130 여개국의 1,500여개 단체에 멤버십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Refugee Council’²⁵⁾은 영국 내 망명자를 위한 가장 큰 조직으로서 성착취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사회복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 도

24) 관련내용은 www.crin.org을 참고함.

25) 관련내용은 www.refugeecouncil.org.uk을 참고함.

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동이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의 법적지원, 정신적·신체적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및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녀 및 여아를 위한 전문가인 ‘소녀를 위한 자문가’를 고용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Child Safe’²⁶⁾는 아동학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에는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예방을 위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아동성착취 피해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육성시키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일본

일본에서는 상업적 아동성착취 중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엔조코사이(enjo kosai)’가 주요 형태를 차지하고 있다. ‘엔조코사이’는 나이 어린 여성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이케이(dai kei)’ 웹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나이 많은 성인남자(종종 유부남)로부터 ‘교제’신청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엔조코사이’는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핸드폰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가품의 구매는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종종 문제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경험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만화(manga)의 형태는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a).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는 일본의 마피아인 야쿠자(yakuza)가 관여된 경우가 많으며, 흔히 인신매매 피해자 송출국 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26) 관련내용은 www.child-safe.org.uk을 참고함.

다. 일본으로 유입되는 인신매매는 남미, 동유럽,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부터 이루어져 왔다(ECPAT International, 2006a).

이러한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은 1996년 스톡홀름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 요코하마에서 제 2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아동성착취에 대응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00년도에는 ‘상업적 아동성착취에 대응한 행동강령(The Action Pla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을 수립하여 아동성착취 예방, 인식개선, 법집행, 민관 네트워크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친 행동방안을 발표하였다.

1. 법체계²⁷⁾

일본은 1999년 ‘아동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처벌법(Law for punishing Acts related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for Protecting Children)’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행위들을 처벌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의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성매매를 하는 경우와 성매매를 조장 및 알선하는 경우 모두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매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엔(약 4천7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엔(약 7천9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성매매 조장 및 알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엔(약 1억5천9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법의 제 7조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배포, 매매, 대여 및 전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27) 일본의 아동성착취관련 법(‘Law for punishing Acts related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for Protecting Children, Immigration Control Act’, ‘Law to Regulate Solicitation of Children through Matching Business via the Internet’, ‘Penal Code’, ‘Child Welfare Law’, ‘Child Abuse Prevention Law’)의 내용은 <http://www.asianlii.org/jp/legis/laws/>에 게재된 영문번역본을 참조함.

있으며,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 소유 및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8조는 아동을 성착취의 목적으로 매매하는 범죄자에게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에서 유괴 혹은 매매된 아동을 성매매 혹은 성포르노그래피의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 14조는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그래피의 배포와 같은 사항을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에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상담, 보호 및 가료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은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 성착취 관련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은 ‘이민조정법(Immigration Control Act)’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인신매매에 대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혹은 인신매매된 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유괴 및 매매한 경우라고 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1~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운송, 이동, 숙박제공 등)도 3~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매칭사업을 통한 아동유인 규제법(Law to Regulate Solicitation of Children through Matching Business via the Internet)’은 십대소녀들과 성인남성 간의 ‘엔조코사이’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다. 동 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성착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근이 금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접근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1백만엔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엔조코사이’에 가담한 아동은 대부분 상담 및 성착취예방을 위하여 가정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 사업 운영자는 법에 의하여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아동인지에 대한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형법(Penal Code)’은 폭력과 협박을 통하여 13세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대하여 2~20년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관계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폭력과 협박의 여부와 관련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강간과 더불어 상해 혹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통하여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는 6개월~7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대한 성적행위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는 폭력과 협박의 여부와 관련없이 이루어진다.

아동을 매매한 경우에는 3개월~7년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매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상해 혹은 살인 등의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1~10년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Law)’도 아동의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아동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과 바, 댄스홀, 나이트클럽 등에 동행하거나, 혹은 아동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혹은)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법(Child Abuse Prevention Law)’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 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학대 피해아동이나 학대피해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및 후견인을 교육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 성착취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가. 정부조직²⁸⁾

일본의 ‘국가경찰국(National Police Agency)’은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국가경찰국 산하에는 아동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The Office for Juvenile Protection)’가 설립되어 아동과 관련된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성착취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사이버범죄 전담반(Cybercrime TaskForce Division)’이 설립되어 온라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와 기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게 되었다. 사이버범죄 전담반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발생 시 지역경찰과 협조하고 사이버 관련 정책 수립에 지문을 제공하며 본 사항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부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총괄적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서간 협력체계인 ‘청소년육성 추진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청소년 비행 및 폭력예방,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청소년 위해 환경정비, 홍보계몽활동, 국제교류 활동 촉진 등 청소년의 문제, 요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형사범죄국(The Criminal Affairs Bureau)은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의 사용, 법의 해석 및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성매매 및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28) 본문의 내용은 ECPAT International의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Japan”을 참고함.

나. 비정부조직

아동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에는 여러 가지 비정부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제 NGO 조직인 ECPAT 과 Polaris Project를 비롯한 국제 비정부기관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등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일본 내 ECPAT 은 ‘ECPAT 칸사이’와 ‘ECPAT STOP’으로 나누어져 있다.²⁹⁾ ECPAT 칸사이는 UN의 아동성착취관련 ESCAP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의 홍보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과 대면하는 서비스담당자의 교육, 아동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정보수집, 아동성착취관련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CPAT STOP’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이용한 아동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입법을 위한 로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부모 및 학교선생님을 위한 인터넷상의 아동보호 지침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기업, 정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Polaris Project’³⁰⁾는 여성 및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된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응하여, 정부 부처 내에 성착취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피해자보호, 홍보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무료 핫라인(National Toll-free Multilingual Hotlines)’서비스는 일본 내 전 지역에서 24시간 무료로 인신매매와 관련된 긴급전화서비스로, 일본어, 한국어, 영어 및 태국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긴급쉼터, 의복과 식사, 교통수단, 통번역, 정서적·사회적 지원과 복지지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계로 피해자에게 장기쉼터, 법적 의료적, 정신건강 서비스, 회복, 취업 및 기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및 사법 인력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 등을 실시하며, 일본 내 인신매매에 대한 최초의 피해자중심 복지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련 NGO 및 경찰서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반인의 인식개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발굴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29) 관련 내용은 <http://www.ecpat.com/EI/index.asp> 을 참고함.

30) 관련 내용은 <http://www.polarisproject.jp/engsite/aboutus> 을 참고함.

제4절 태국

태국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아시아의 유명 관광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관광산업 중 상업적 성매매, 특히 아동(소년 및 소녀)의 성산업을 포함한 관광 및 유흥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태국의 몇몇 도시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따른 충격의 여파를 경험해 왔다. 사회개발 및 인간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성산업의 아동수는 감소하나 오히려 말레이시아와 홍콩을 통하여 일본과 호주로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b). 그런 한편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성착취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출신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국내외 아동 및 여성의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정책(National Plan and Policy on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omestic and Cross Border Trafficking in Children and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태국의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들의 협조로 ‘국가여성위원회(Sub-Committee of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아동성착취에 대응하는 일련의 법 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본 계획은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아동성착취 예방, 지원 및 보호, 기소 및 금지, 회복 및 통합, 관련 정보, 감시 및 평가 시스템 수립 그리고 초국가적 협력체계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ECPAT International, 2006b).

또한 아동 성관광과 관련된 최근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에 의한 아동성매매 및 비인간적 인신매매에 대한 태국의 국가 로드맵(Thailand National Roadmap toward Anti-Human Trafficking and Child Prostitution Caused by Tourism)’을 마련하였다.

1. 법체계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된 주요법에는 ‘성매매예방 및 금지법(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rostitution Act, 1996)’, ‘여성 및 아동 매매예방 및 금지법(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Act, 1997)’, ‘형법개정법(Penal Code Amendment Act, 1997)’, ‘형사소송법개정법(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Act, 1999)’, ‘자금세탁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1999)’ 등이 있다.

‘성매매예방 및 금지에 관한 법령(Prostitution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 1996)’³¹⁾은 태국 내 성매매자체에 대한 벌금의 금액을 축소하였으나, 18세 미만 아동과 성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포주, 인신매매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본 법령의 제9조는 15~18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한 자는 아동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1~3년의 징역과 2만~6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제 9조는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를 위하여 알선, 유혹 혹은 이동시키는 자는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건발생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10년의 징역과 2만~20만바트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 10조는 18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성착취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묵인하는 경우 4~20년의 징역과 8만~4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부모의 자녀보호의무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제 11조에서는 성매매사업의 소유자, 관리자 및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15~18세의 아동을 고용하였을 경우, 5~15년의 징역과 10만~30만바트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한 경우에는 10~20년의 징역과 20만~40만 바트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UN의 폭력에 관한 연구에 대한 태국정부의 조치로 탄생한 ‘여성 및 아동 매매에

31) 관련내용은 <http://www.ilo.org/dyn/natlex/docs/WEBTEXT/46403/65063/E96THA01.htm>을 참고함.

방 및 금지법(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Act, 1997)³²⁾은 여성, 남아 혹은 여아에 대한 성착취를 목적으로 판매, 구매, 제공, 이송, 인수, 구금 또는 감금을 금지하고 있다. 성착취를 준비, 공모 및 시도하는 경우에도 본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세 미만 아동의 인신매매는 성착취의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 폭력 혹은 강요가 포함된 범죄일 경우 처벌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사망할 경우, 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

‘형법개정법(Penal Code Amendment Act, 1997)³³⁾은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성착취가 자행된 장소 및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5~18세 아동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알선, 유인 또는 이동시키는 경우, 아동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3~15년 이하의 징역과 6천~30만 바트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만약 아동의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 형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성착취 범죄에 사기, 폭행, 압력 혹은 정신적 폭력 등을 수반할 경우, 그 형량이 증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개정법(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Act, 1999)³⁴⁾은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법으로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아동성폭력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 등의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 큰 경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충격을 더욱 심화시켰다. 개정된 법에서는 아동피해자의 반복되는 희생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또한 아동피해자가 범죄자와 그의 동료 앞에서 아동이 직접 진술하는데 대한 위협감을 제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자금세탁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1999)³⁵⁾은 금융기관이 2백만 바트를 초과하는 송금 건에 대하여 정부의 자금세탁관리실의 조사를 위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관리실은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아동을 알선, 유인 및 이동하

32) 관련내용은 <http://www.baliprocess.net/Files/Legislation/Q-Z/ThailandTrafficking.pdf>을 참고함.

33) 관련내용은 <http://www.baliprocess.net/Files/Legislation/Q-Z/ThailandPenalCode.pdf>을 참고함.

34) 관련내용은 www.no-trafficking.org/content/PDF/thecrimina_english.doc 을 참고함.

35) 관련내용은 www.asianlii.org/th/legis/consol_act/mlca1999273/을 참고함.

는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아동 성착취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가. 정부조직³⁶⁾

외무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국제협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복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민·관과 국제기구 등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사회개발 및 복지부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는 예방, 치료, 회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개발 및 복지부 내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반인신매매 부서(The Bureau of Anti-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는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방지 및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관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분석 또한 담당하고 있다.

사회개발 및 복지부 산하에는 아동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aan Kredkrakarn(Kredtrakarn 집)’은 성착취 피해아동 및 인신매매 피해아동에게 쉼터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쉼터의 규모는 55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치료, 상담, 교육, 직업훈련, 보육 및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된다. 쉼터에 입소한 피해아동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법적 지원, 가족재결합, 회복 등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아동 성 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된 사건의 보고를 즉시 접수하고 있으며, 관광체육부는 아동성관광을 알선하거나 수행하는 여행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고발하고, 지역관광인력 및 관광 관련 사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성관광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아동성관광의 실태,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6) 본문의 내용은 ECPAT International의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ailand”을 참고함.

교육부는 성매매에 동원되는 아동에게 잠재된 여러 가지 문제요소들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Sema Life Development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빈곤한 가정, 소수민족출신 그리고 태국국적을 얻고자 하는 인접국가의 여아들은 주로 그들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적 교육 및 인식개선활동을 통하여 아동성매매의 유혹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요소에는 빈곤, 부족한 교육기회, 가족해체 및 더 나은 생활환경의 추구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을 파악하고, 학교를 통하여 아동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발굴하며, 특히 여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타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 및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에 지원하고 있다.

사법부는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 기소 및 재판 등을 담당하며, 사법부 내의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강요된 노동환경 속에서 피해를 받는 아동의 법적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비정부조직

태국에는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정부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Center for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Foundation(CPCR)’³⁷⁾은 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로 아동성착취 피해자 뿐 아니라 아동폭력 및 유기 등의 피해자 또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쉼터지원, 교육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성착취를 예방하기위한 입법 및 공공기관과의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Develop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Daughters and Communities(DEPDC)’³⁸⁾은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및 기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쉼터,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아동이 성착취

37) 관련내용은 http://www.cwa.tnet.co.th/Network/cwa-network_thailand.html#FCPCR을 참고함.

38) 관련내용은 <http://www.depdc.org/>을 참고함.

로 유인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회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FACE(Fight Against Child Exploitation)’³⁹⁾는 체포된 소아성애병자의 기소를 돕기 위하여 사건을 모니터하고, 적절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을 교육하고 연계하며, 피해아동의 증거수집 등을 지원한다.

‘Hotline Center Foundation(HCF)’⁴⁰⁾은 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긴급 핫라인 전화요원을 교육·훈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 및 이민국 직원을 교육하고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일을 지원하였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은 주법에 따라 아동성착취 범죄자를 처벌하고 연방법에 따라 아동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이동에 대하여 처벌하여 주와 주 사이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난 아동성착취 관련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재범방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및 회복에는 사법기관의 개입 당시부터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나 이들에 의해 교육받은 인력이 투입되어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는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여 각 정부기관 및 비정부조직의 연계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조직은 아동 성착취 관련 입법에 대한 로비활동, 정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법적 판결과정에의 참여, 성착취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등 전 범위와 과정에 걸쳐서 아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NGO 및 학계에 의하여 아동성착취 및 성폭력을 주제로 한 조사 및 연구가 활발히

39) 관련내용은 http://www.un.or.th/TraffickingProject/FACE/face_home.html을 참고함.

40) 관련내용은 <http://www.hotline.or.th/>을 참고함.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성착취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 및 성범죄자의 교화프로그램 구축 등 정책수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아동에 대한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및 그루밍 등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그루밍조항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도를 좌절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착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아동성착취 유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조코사이’ 형태의 아동성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범죄에 대하여 인터넷웹사이트 운영자와 개인정보를 올린 아동에게 접근하는 성인에게 범죄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야쿠자 등 범죄조직과 연관된 아동성착취 및 아동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국’을 주축으로 하여 각종 위원회 및 전담반 등이 조직되어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태국은 성매매관광 유명지로서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아동성매매관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로드맵과 인신매매예방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수행과 더불어 성착취에 동원되는 아동의 문제요소를 발굴하여 취약지역 및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교육기회 제공 및 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성매매산업으로의 아동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한국의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동성착취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등이 선행되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간의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연계체제 확립에 대한 방안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친분쌓기 행위(그루밍)에 대한 처벌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검토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예방 및 성착취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성범죄법(제15조) 중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법에 의거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사용한 원조교제 형태의 아동성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개인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성착취의 성립여부에 관련 없이 이를 유발 및 방조한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 아동의 개인정보를 받은 성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성착취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 및 성착취피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예방사업에 시민과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제3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근절 세계대회

본 장에서는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정부의 활동사항을 소개한 뒤,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리오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내의 이행실태와 국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거나 향후 이행해야 할 과제를 다루었다.

제1절 세계대회 개요

- 회의명 :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World Congress III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의장 : Mrs. Marisa Keticia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
- 기간 : 2008. 11. 25(화) ~ 11. 28(금) (4일)
- 장소 :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 주관 : 브라질 정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유엔아동권리협약NGO그룹 공동주최
- 목적 :
 - 제1·2차 세계대회 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의 등장 등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책 점검 및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각국 상호간 정책수행 경험 공유 및 국제적 공조 가능 전략 개발
 - 성착취 관련 문제에 대한 각종 성과목표 및 지표 도출
- 참석범위 : 130여개 정부 대표단, 국제사회 NGO 대표자, 세계 언론기관, 청소년 등 약 3000여명 참가
- 주요 프로그램 : 패널회의, 고위급 정부회의, Workshops

※ 각 패널회의 종료 후 고위급 정부회의, Workshops이 동시진행

○ 주요의제 :

- 제1테마 -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 제2테마 - 법률적 체계 및 책임 귀속 문제
- 제3테마 - 대내외 각 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 제4테마 -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 제5테마 -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표 5-1〉 제3차 세계대회 회의 일정표

시간	11/25 화	11/26 수	11/27 목	11/28 금
09:00 ~ 11:00		제1테마 패널회의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제3테마 패널회의 (대내외 각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제5테마 패널회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11:00 ~ 12:30		고위급정부회의 및 워크숍	고위급정부회의 및 워크숍	고위급정부회의 및 워크숍
14:30 ~ 16:30		제2테마 패널회의 (법률적 체계 및 책임 귀속문제)	제4테마 패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폐회식 (15:00)
16:30 ~ 18:00		고위급정부회의 및 워크숍	고위급정부회의 및 워크숍	
19:00	개회식			

※ 참고: 제1,2, 3차 세계대회 비교표

〈표 5-2〉 아동청소년 성착취 세계대회 비교

구분	대회개요 회의명, 일시, 장소, 참가국, 주최	주요 내용
1차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996. 8. 27~31 ■스웨덴 스톡홀름 ■119개국 대표 1,0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에 각국의 관심과 참여 촉구 ■스톡홀름 선언문 및 행동의제 채택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유형(3가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매매(child prostitution) · 아동인신매매(trafficking in child/sale of children) ·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2차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2001. 12.17~20 ■일본 요코하마 ■161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및 100여개 NGO대표, 아동대표 등 3,000여명 참가 ■주최: 일본정부, 유엔아동 기금 (UNICEF), 아동성착취반대협회 (ECPAT), 유엔아동권리협약 NGO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후속 이행상황 검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 환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강조 ■요코하마 세계공약 채택(Yokohama Global Commitment) ■아동참여를 위한 기금마련 가능성 논의 ■주요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착취로부터 아동예방·보호·재활 - 성착취의 유형 - 민간부문의 역할 및 연계 - 입법 및 법 집행 - 아동인신매매 - 아동포르노그래피
3차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ld Congress III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2008. 11.25~28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130여개 정부 대표단, 국제사회NGO 대표자, 세계 언론기관, 청소년 등 3000여명 참가 ■주최: 브라질 정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유엔아동권리협약 NGO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체계 확립 ■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신규 과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적 체계화 및 범죄 책임 귀속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 검토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내외 각 기관 상호간의 정책수행 경험 공유 ■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전략 및 목적을 개발 ■주요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테마: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 제2테마: 법률적 체계 및 책임 귀속 문제 - 제3테마: 대내외 각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 제4테마: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 제5테마: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제2절 주요 내용

1. 핵심요지

제3차 세계대회에서는 2001년 제2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성착취 문제를 다룬 효과적인 법률 및 프로그램의 마련, 사회 각 영역간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및 아동의 적절한 참여보장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해 중점 논의되었다. 동 논의결과를 통합,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특히 3차 세계대회에서는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착취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에서 이전의 세계대회와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성착취 대상에서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adolescent)을 포함시켜 보다 넓은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하겠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회에 초청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실현하였다.

대표단은 이양희 아동권리위원장, ECPAT(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Korea 등과의 면담, 현지 관련 기관 방문 및 국가홍보용 소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NGO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 분야를 파악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상세내용

가. 회의개요

- 개최식에서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 실비아 스웨덴 왕비 등이 기조연설을 하고, 첫째날 진행된 정부간 대화에서는 각국의 영부인들이 기조연설을 함.

- 본회의는 오전, 오후 각각 개최된 패널토의 후, ‘정부간 대화(High-level Governmental Dialogue)’와 패널회의 주제 관련 약 20개의 워크숍 (Workshop), 각 영역간 대화 (Sectoral Dialogue)가 동시에 병행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130여개국에서 약 3000명이 참여하였으며 리오데자이로 선언 및 행동계획 (The Rio de Janeiro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 and Adolescents)’를 채택하고 11.28(금) 폐회하였음.
- 성착취의 개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는 가정과 가족 내, 학교와 교육 환경, 보호와 사법 시설,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18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지칭함.

나. 개회식 (Opening Ceremony)

11.25(화) 19:00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 Silvia 스웨덴 여왕, Ann M. Veneman UNICEF 총재 등이 아래의 요지로 기조 발언함.

- 브라질 룰라 대통령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동들이 목소리를 내서 성착취가 근절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성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반윤리적인 행동인 아동 성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러한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법 및 정책 마련에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Silvia 스웨덴 여왕
 -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을 하지 않는 ‘클린’ 환경조성도 필요함을 언급함.
-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데 있어 재정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Ms. Ann M. Vennaman UICEF 총재

- 1, 2차 세계대회로 인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성착취는 조기결혼 (Early Marriage), 강제노동 (Child Bonded Labor)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성착취 등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함. 특히 빈곤국가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아에 대한 성착취는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법마련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함.

○ CRC

- 아동은 성착취의 피해자이지만, 곧 이를 근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음.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아동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시키도록 하여, 아동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대표들은 아동의 이해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고함. 법률 제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각국 정부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일관성있는 법체계가 필요함.
- 또한 성착취 근절관련 법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국의 경험의 공유가 필요함. 아울러 제3차대회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함.

○ 일본대표

- 최근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물의 유통에 있음.

- 따라서 아동인권의 존중에 맥락에서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ECPAT International

- 국내법 및 국제법의 제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여전히 사회의 주변인으로 취급되고, 상품화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정당화 되고 있다고 함.
- 한편, 법에 있어서도 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법집행은 진전이 별로 없고 재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함. 특히 최근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 근절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을 역설함.

다. 패널토의 및 워크숍

-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법률적 체계 및 책임귀속의 문제, 대내외 각 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등 5개의 주제로 개최된 패널토의 및 워크숍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테마 1: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its New Scenarios)

[패널 참가자]

- Moderator: Ms. Joy Ngozi Ezelio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Trafficking)
- Mr. Amihan Abueva (Executive Director of ECPAT)
- Ms. Muireann O'Brian (인권변호사 및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Ireland 대표)
- Ms. Ethel Quayle (University College Cork 응용심리학과 교수)
- Ms. Nejat M'jid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Prostitution, 모로코)

[패널핵심요지]

- 인터넷 및 관광산업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등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는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개념 정립 및 기존의 전통적 형태의 성착취에 대한 개념 비교와 UN 산하기구 및 기업 등 새로운 협력 파트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러한 이해의 기반위에 효과적인 법안 및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기술 발달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다루기 위해 법집행기관 및 NGO 등 관련 기관 능력 개발 및 성착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워크샵(인신매매와 피해자지원 체계) 핵심요지]

(Trafficking and Victim Support Mechanisms)

[워크샵 참가자]

- Moderator: Alessia Altamura (ECPAT International, Associate for Europe)
- Dolores Alforte (ECPAT Philippines)
- Renata Coccaro (ECPAT International)
- Gloria Diogenes (Fortaleza City Hall)

[워크샵 핵심요지]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시 피해아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아동의 의견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재통합(reintegration)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피해자 보호시설 내에서의 교육 및 공교육으로의 편입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함.
- 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아동의 개인적 상황 및 필요를 고려하는 접근성 높은 시설이 되어야 함.

2) 테마 2: 법률적 체계 및 책임귀속 문제
(Legal Framework and Accountability)

[패널 참가자]

- Moderator: Maud de Boer-Buquicchio (Deputy Secretary-General for the Council of Europe)
- Ann Veneman (Executive-Director of the UNICEF)
- Wanderlino Nogueira Neto (Specialist in protective legisl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
- Jim Gamble (President of the Virtual Global Task Force and of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 Yanghee Lee (President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패널 핵심요지]

- 제2차 세계대회 이후 많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법집행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노력의 결과가 상당한 진전을 보임.
-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각국의 법령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조치도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만을 특별히 다루는 법, 성매매 아동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다루는 법, 재판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고려한 절차 및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마련 등을 권고함.
- 법령의 마련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령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집행은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법적 및 사회적 불처벌(impunity) 근절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

[워크숍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관련 법개정 및 정비) 핵심요지]

(Revising and aligning of the legislation relate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워크숍 참가자]

- Moderator: Marta Santos Pai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 Lena Karlsson (UNICEF Innocenti Reserch Center)
- Junko Miyamoto (ECPAT/STOP Japan)
- Olga Levina (STELLIT)

[워크숍 핵심요지]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다루는 상이한 체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국내 법률이 국제적 기준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일반인 및 집행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국제적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하려는 의도만을 가진 행위도 처벌하는 그루밍제도의 도입,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피해 아동을 재판 단계 및 그 후 단계에서도 보호하는 법령 및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의 근거 조항의 도입 등 강력한 법률 마련이 필요함.

3) 테마 3: 대내외 각 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Integrated Cross-Sector Policies)

[패널 참가자]

- Moderator: Saisuree Chutikul (Member of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 Cindly Kiro (New Zealand Commissioner for Childhood)
- Dilma Rouseff (Head-Minister of the Civil Household at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Brazil)
- Alan Campbell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 Rima Salah (Special Representative of Secretary-General in UN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Chad)

[패널 핵심요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임.
- 따라서 원인의 정확한 이해 및 아동의 필요에 기초하여 성착취 근절 관련 법령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성매매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빈곤가정과 가정내에서의 폭력 경험임을 고려할 때, ‘가족지원프로그램(Family Support Program)’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함.
- 또한 정부, 시민사회 및 경찰 등 사회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령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 각 영역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독립 아동권리보호기구의 마련도 필수적임.
-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쟁지역 혹은 분쟁직후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적 인권기구설립 및 UN 기구 등을 통한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이 필요함.

[워크숍 (국가적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핵심요지]

(The Role of the State, Integrated Public Policies in preventing sexual exploitation)

[워크숍 참가자]

- Moderator: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Brazil
- Laurette Lalaharinivo, Minister of Justice, Government of Madagascar)
- Wahilda Banu Shapna (Aparejo-Bangladesh)
- Roseilene Rocha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against Hunger, Government of Brazil)

[워크숍 핵심요지]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계획(National Plan) 및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참가를 가능케 하는 아동 보호 네트워크(Child Protection Network) 마련 및 적절한 시행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국가계획 및 프로그램의 마련시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를 독려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성착취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NGO, 기업 등의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 및 네트워크 구성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
- 성매매 및 성착취의 큰 원인이 빈곤임을 고려할 때 , 수입창출 프로그램(Income-Producing Program) 및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Protection Program) 마련이 필요함.
- 피해자 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족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함.

4) 테마 4: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Initiativ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패널 참가자]

- Moderator: Paulo Vanmuchi (Secretary of State, Head of the Special Secretariat for Human Rights at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Brazil)
- Queen Silvia of Sweden
- Taleb Rifai (Deputy Secretary-General of World Tourism Organization)
- Gulnara Shahinian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Jose Sergio Gabrielli de Azevedo(Chairman of the Brazilian Oil Company, PETROBRAS)

[패널 핵심요지]

- 기업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 인권보호, MDGs 달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발전에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논의를 함.
-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인식을 높이는 일이나,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자원 마련 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가 관광산업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아동노동(Child Labour)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영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영향력에도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
-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의 필요성 강조 및 의지제고를 위한 캠페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프로그램 및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확보 등에서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기업의 활동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들의 사회적 이슈화 및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필요함.

[워크숍 (인식증진 및 관광부분 종사자 훈련) 핵심요지]

(Raising Awareness and Training People and teams involved in the tourism sector)

[워크숍 참가자]

- Moderator: S. Vidya (EQUATIONS)
- Renata Cocco (ECPAT International)
- Afroz Kaviani Johnson (ChildWise-Australia)
- Claudia Silva (Secretaria de Interacion Turistica Centroamericana, SG-SICA)

[워크샵 핵심요지]

- ECPAT 등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일하는 NGO가 만든 섹스 관광(Sexual Tourism) 근절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은 이를 채택한 기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 (Air France, Accord)
- 기업의 윤리강령 채택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NGO가 마련한 이러한 섹스관광 근절 윤리강령을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 ASEAN 10개국에서 ECPAT 호주의 재정 지원으로 이 지역의 여행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인 ‘ChildWise’가 이 지역 내의 섹스관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였고, 섹스관광 발생률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이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시행시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호텔들이 제공한 협조에 대해 소개함.
- 국가간 여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 국가들이 섹스관광 근절 윤리강령 채택, 관련 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섹스관광 근절 캠페인 등의 지역적 시행 등을 통한 지역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5) 테마 5: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패널 참가자]

- Moderator: Moushira Khattab (Ambassador,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Council for Childhood and Motherhood in Egypt)
- Barce Ndiaye (Director of the Division of Human Rights Council)
- Michele Jankanish (Director of the ILO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 Marta Santos Pais (Director of th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 Mari Viques (President of the Instituto Interamericano del Niño)

[패널 핵심요지]

-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유엔사무총장의 아동에 대한 폭력 보고서 (UN Secretary 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선두로 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주제로 한 협약 및 지침 (guideline)들을 기반으로 각국이 관련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적 협력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런 점에서 이번 리오 세계대회의 의미가 있음.
- 리오 세계대회의 결과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체계들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더욱 강화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함.

[워크샵 (성착취 근절을 위한 조직범죄 대응) 핵심요지]

(Figh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confrontation of sexual exploitation)

[워크샵 참가자]

- Moderator: Kristin Kvigne (Representative of INTERPOL)
- Muireann O'Brian (ECPAT Europe Law Enforcement Working Group)
- Kristin Kvigne (Representative of INTERPOL)
- Guilherme Dalpian (Brazilain Federal Police)

[워크샵 핵심요지]

-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정책, 정보 공유체계 및 법집행자들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170개국의 회원국 및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인터폴 (INTERPOL)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음.
-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체계를 법집행자, 경찰, 사회복지

지사 등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함.

라. 정부간 대화 (High-Level Governmental Dialogue)

□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우리측 수석대표는 제2테마(법률적 체계 및 책임귀속 문제) 패널 후 진행된 정부간 대화시 아래 요지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음(부록 국영문 우리대표 기조연설문 및 국영문 대회 배포문 참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성과와 노력 소개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적 장치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등 사회복귀 (reintegration) 지원 정책
-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함.

마. 테마별 우리측 입장

다섯 가지 테마의 패널토의와 워크샵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제1테마: 성착취의 일반적 형태 및 새로운 동향

[패널 회의]

가) 제1테마 안건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
(Traffick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sexual exploitation)
- 성매매행위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rostitution)
- 관광산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ourism)
- 아동성애욕구 및 포르노그래피, 인터넷범죄 및 각종 신기술
(Pedophilia and pornography, Internet crimes and new technologies)

나) 우리정부 입장

-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매매와 같은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의 성매매 일반적 동향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추진으로 과거의 업소형 성매매는 감소하는 대신,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형 성매매가 증가함
- 해외에서 한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비하여 해외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입·출국 사범 특별단속 및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 성매매 사실 적발시 여권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함
-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포르노물 등 음란·유해정보와 성매매 증가에 대해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워크숍: 피해자 확인 및 지원]

가) Talking Points

-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치료와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검사는 이들 피해자에게 교육 또는 상담을 받도록 수강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
- 성매수 피해아동의 치료, 재활교육에 대한 예산, 치료센터에 설치 및 운영, 홍보 및 교육활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음
- 조사 시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함
- 전국 15개 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2) 제2테마: 법률적 체계 및 책임귀속 문제

[패널 회의]

가) 제2테마 안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법규의 개정
(Revision of the law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선택의정서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 면책범위 및 책임귀속의 문제
(Impunity and accountability)
- 특별수사를 위한 절차 사항
(Procedures for special investigation)

나) 우리정부 입장

-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후,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 홍보 및 교육,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사과정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체를 운영하여 24시간 Hot-line을 구축하고 있음

[워크숍: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관련 법개정 및 정비]

가) Talking Points

-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아동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처벌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을 마련
-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범 개연성이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을 2007년 제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실시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치료와 보호 및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3) 제3테마: 대내외 각 기관 상호간 정책의 통합적 운영

[패널 회의]

가) 제3테마 안건

- 각 사회 영역 간 대응정책 체계의 구축
(Design of cross-sector public policies)
- 범정부 차원의 공조
(Cooperation among different government levels)
- 사법부와의 통합적 연대
(Integration with the legal system)
- 교육재활 훈련기관의 역할
(Role of training agencies)

나) 우리정부 입장

-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위하여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구성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단’ 등이 있음
- 국가에 의한 청소년 성보호 시책추진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도 청소년 성보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여성·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사회교육 및 건전 성문화 조성활동 등을 전개함과 더불어 음란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성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교육재활 훈련기관을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의료·법률지원,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대책이 포함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워크샵: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가) Talking Points

- 2003년 6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정부조직이 모두 참여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2004년부터 아동 성폭력 피해자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운영
- 문제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전용전화(핫라인)뿐만 아니라, 173개소의 상담소와 86개소의 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지원을 제공
- 아동에 대한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아동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수립, 아동전용조사실 마련, 여성 검사 및 조사관 배치 등의 제도를 운영

4) 제4테마: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의

[패널 회의]

가) 제4테마 안건

- 민간영역의 자율적 규제
(The market and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 국제금융시스템의 역할 및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장려책
(The role of global financial systems and new initiatives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 모범적 상업관행의 정립
(Good business practices)
- 민간영역 차원의 발의와 공공정책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policies)

나) 우리정부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관광업계와 통신업계의 참여가 두드러짐
 -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여행업계는 자율정화를 위한 관련내용 홍보 및 인솔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을 채택한 여행사도 있음
 - 통신업계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자율정화를 위하여 유해 매체물 감시 및 개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실시함
 - 국내 인터넷업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정화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함
- 기업의 활동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NGO 단체들의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NGO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실시함

[워크샵: 인식증진 및 관광부문 종사자 훈련]

가) Talking Points

-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관광업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한민국은 해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협회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여행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여행업계의 자율정화에 노력하고 있음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에서 해외 성매매 관광 예방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등 정부와 여행업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
- 2005년 (주)마사다투어, (주)월투어, (주)영풍항공여행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러한 여행사의 활동은 아동성착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여행업계의 모범적 실천이라 볼 수 있음

5) 제5테마: 국제적 공조를 위한 전략

[패널 회의]

가) 제5테마 안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다자간 혹은 지역차원의 공조체계 구성
(Multilateral and regional mechanisms for fight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
(Cross bordering crimes and systems of information)
- 각종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의 경험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 이전 세계대회와 관련한 각종 성과의 분석 및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ng process in relation to the Previous Congresses)

나) 우리정부 입장

-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협력과 정보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
 -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 수사기관간 협조 (인터폴 등)
- 인신매매 및 아동 성범죄 관련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UN초국가조직범죄협약 및 인신매매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노력, 여성폭력철폐기금에 지속적 지원
- 제1,2차 세계대회에서 권고된 내용, 국내법 및 정책 반영 노력

[워크샵: 성착취 근절을 위한 조직범죄 대응]

가) Talking Points

- 교통, 인터넷 등의 발달로 아동 성착취 범죄가 다국적 범죄가 되어가고 있음
- 이런 추세를 인식, 국가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우리나라는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음
 - 형사사법공조조약
 -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 조약체결을 통한 공조 외에도 각국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협조를 통한 수사도 진행
 - 이러한 공조시스템이 조약을 통한 수사협조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미국 및 캐나다와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성매매 알선 밀입국 조직 검거
 -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정보 받은 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입국금지조치
 - 인터넷을 통한 범죄 해결을 위한 인터폴과의 협조
- 아동대상 성착취 예방노력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노력
 - 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회의 개최
 -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4개국간 국제인신매매방지 대책회의
- 향후 우리의 노력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수사기관과 contact point 구축하여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교환 등 공조체제 구축 노력
 -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국 확대 추진
 - UN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에 대한 비준 위해 노력

바.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 요지

(The Rio de Janeiro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 and Adolescents)

○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 효과적인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것 홍보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위해 보다 근본 원인을 고려, 빈곤 퇴치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시행
-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확립 노력 지지
- 향후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법 및 프로그램의 이행여부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지표(indicator) 개발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연구의 진행 및 결과 공유

○ 리오데자네이로 행동강령 (Plan of Action)

- 각국 정부는 2013년까지 관련 국제협약 및 지역협약에 가입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마련 및 이러한 활동을 총괄하는 아동인권보호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 설립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관련 국가 행동계획 수립 혹은 기존의 국가 행동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시 리오 대회의 행동계획 이행여부에 초점을 둔 심사 시행 및 성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General Comment 작성
- UN 인권협약 감시기구(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및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운영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더 높은 관심 부여
 - ※ 상기 일반 행동계획에 추가하여 아동음란물,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대상 Sex Tourism 및 아동 인신매매 등의 특정 이슈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음.

제3절 리오행동강령 우리나라 이행현황⁴¹⁾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도로 취급하며, 성적 서비스를 위해 강제성을 띠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강제적 노동은 아동의 미래를 파괴한다.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닌 강제노동의 노예로 취급

41) 본 절 작성시 전소희 숙명자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과정생의 도움을 받았음.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년 수억만 명의 아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적 거래의 피해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유엔인신매매 특별보고관 Sigma Huda에 따르면, 세계화와 더불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성적 도구로써 아동들이 인신매매의 교역품화 되어가고 있다. 아동 성착취 현상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거대화·조직화되어, 더 이상 한 국가의 사회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다국가간의 합의와 공동의 노력이 기울어져야만 근절될 수 있는 문제이다(이혜원, 2004).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야 비로소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였고, 정부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후 부터이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선언(2008)에서는 지난 1996년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공약에서 채택된 실천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제3차 리오 세계대회에서는 진일보한 행동강령이 제시되어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였다(부록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 참조). 3회에 걸친 세계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3〉 1~3차 세계대회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주요 내용 비교
1996년 1차대회 (스톡 홀름)	<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 조치에 우선순위 부여 ■ 아동에 대한 성거래 방지 및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및 사회 각 분야간 협력 증진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범죄로 규정 <행동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착취 대상자 축소 및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0년까지 국가별 목표, 행동의제 및 이행일정 제시 ■ 이행 및 감독기구 구성, 2000년까지 성착취 대상 아동 및 성착취자 자료화 ■ 성착취 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제공 ■ 아동성매매, 아동거래, 아동외설물 제작, 성관광 등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 고객 및 중개자에 대한 형벌강화를 위한 입법 및 집행 ■ 아동 성착취의 근본원인은 '빈곤'이므로 선진국의 경제협력 강화요청
2001년 2차대회 (요코 하마)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협력적 재휴관계 강화 ■ 제1차 회의 이래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었으나, 성착취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인식, 피해아동 증가에 우려 표명 ■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익명의 성착취 점 적발, 처벌 전략 강조 ※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국으로 책정함에 대한 이의 제기 ⇒ 1등급국으로 상향
2008년 3차대회 (리오)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정부는 2013년까지 관련 국제협약 및 지역협약에 가입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마련 및 이러한 활동을 총괄하는 아동인권 보호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 설립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관련 국가 행동계획 수립 혹은 기존의 국가 행동 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시 리오 대회의 행동계획 이행여부에 초점을 둔 시행 및 성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General Comment 작성 ■ UN 인권협약 감시기구(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유엔인권 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및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운영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노력에 더 높은 관심 부여

제3차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Plan of Action)은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성착취 근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행동강령별 이행현황을 살펴보았다.

1. C.1. 일반원리 이행현황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년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 그리고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비준하였다.

혼인가능연령은 민법을 개정하여 18세로 하였으며, 관습적 성적 동의 연령이나 혼인 연령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법내에서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죄로 하고 있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관련된 국가법이나 절차를 고려하여, 성착취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신분이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낙인 및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가급적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성부 권익기획과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열람 제한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성 범죄자들의 행동을 다루고 상습적 범행을 방지할 위해, 법무부에서는 2006년 성매매사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료감호법 개정안(2008.6)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소아성기호증(pedophilia)⁴²⁾ 등 정신성적

42) 소아성기호증(Pedophilia)이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심리적 장애 혹은 성적 도착)의 한 유형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간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대체주의 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 등으로 인해 기소되었던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표 5-4〉 C.1. 일반원리

내용	이행현황
○ 2013년까지 각종 협정 승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아프리카아동권리복지헌장, 아세안 헌장,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여성·아동 윤락인신매매 예방과 투쟁을 위한 SAARC 협약, 인신매매 반대 행동에 관한 협약,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 사이버범죄조약,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비회원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모든 조약	○
○ 국제기준에 따른 혼인연령 규정	○
○ double criminality 폐지	△
○ 역외 법(extraterritorial laws)을 집행하기 선도적 법 집행 기관을 지정	×
○ 아동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미처벌	○
○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나 아동 가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
○ 성범죄자들의 상습적 범행 방지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법체제와 프로그램	○
○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아동 중심의 치료와 재활	△
○ 인터폴의 국제 아동 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	△
○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다루는 특별 팀/아동 전담반 구성	○
○ 2013년까지 정부 부처, 모금 기관, UN 사무소, NGO, 민간의 협력 강화	△
○ 다각적인 referral 구조 확립	△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증대	△
○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것	△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완전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 사회심리적 지원 제공	○

주: ○=이행, △=검토 중, ×=불이행 (이하 동일)

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인이나 청소년이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말함.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신분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방식의 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까지 49개의 검찰청에 아동여성 조사실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 말까지 아동여성조사실 미설치 검찰청은 **영상녹화실**에 아동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검용조사를 설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이송(referral) 구조를 확립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배치하고,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2.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이미지 **관련** 이행현황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유사성교를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자료의 보급과 제작에 있어 기업이나 회사와 같은 책임 또는 연루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가상 이미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적인 묘사(sexually exploitative representation of children),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접근, 열람, 소비, 제작, 배포, 입수, 그리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기타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아동이 성착취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거나 대상화되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5-5〉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 **관련** 이행현황

내용	이행현황
○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	△
○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 자료의 보급과 제작에 있어 법적 책임 확장	○
○ 인터넷, 새로운 테크놀로지 사용/아동포르노그래피 근절을 위한 목표화된 대책 마련	○
○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교육적이며 인식을 고취시키는 대책 수행	○
○ 학교 커리큘럼에 온라인 안전대책을 첨부	○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동통신사, 검색엔진,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와 아동 학대 이미지를 보고하고, 제거할 것을 의무로 하는데 필요한 법적 수단 강구	○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동통신사, 인터넷 카페,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이 부모와 아동,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더불어 자발적인 행동 수칙과 이 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
○ 이미지가 어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인지, 추적하고 대응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 개발 및 연구	△
○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의 파트너십을 장려	○
○ 아동학대 이미지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개발, 유포	△
○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보고하도록 전화와 온라인 상담전화를 함	△

3.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관계에 대한 지불을 하거나 아동으로부터 성적인 서비스를 얻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법상 ‘위법거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에서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 혹은 성매매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의료, 교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국, 찜질방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치료와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매

매 대상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검사가 피해자를 교육 또는 상담을 받도록 수강명령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7개 지역에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치료·재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성매수 피해 아동의 치료, 재활교육, 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홍보 및 교육활동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다. 조사 시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15개 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5-6〉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내용	이행현황
○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 성매매, 성적 동의 연령, 그리고 형사책임능력(criminal responsibility)을 포함하여 국제 규범에 맞도록 국내법을 일치시킴	△
○ 법률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룸	△
○ 아동 성매매를 형법상 위법 거래로 명시	○
○ 성착취에 희생된 혹은 이러한 위험에 처한 소년에게 보호, 회복과 재활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그리고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프로그램(위험의 평가 측정, 예방과 대응 기제를 포함하여)을 확립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회복, 재활, 복원과 같은 대안적 보호 모델 확보	△
○ 피해아동에 전문적이고 적절한 의료, 회복, 경제적 대안 등 총체적인 대응	△
○ 적대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연구	x

이와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남성’청소년에 관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4.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해외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환기를 위해 해외성매매 예방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행자의 해외성매매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여행 관련 관광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방한여행문화가 정착되도록 여행업 관련법도 개정하였다. 아울러 spo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매매 업체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표 5-7〉 C.4.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내용	이행현황
○ 관광, 여행, 호텔 산업에서 전문적인 행동 수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	△
○ 국내/국제 관광객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데 특별한 관심 경주	○
○ 국제 여행 알람 시스템이나 혹은 인터넷의 'green notice' 시스템을 확립	×
○ 범죄 조사를 확실히 하고, 외국에서 고발되거나 연루된 국민들에게도 처벌	×
○ 관광산업에서 아동 성착취에 대한 광고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금지	○
○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직업훈련, 직업 지침이나 일자리 제공	×
○ 새로이 부상하는 관광지에 대한 감시	×

5.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인신매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다.

〈표 5-8〉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행현황

내용	이행여부
○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	○
○ 아동을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고찰	×
○ 인신매매에 희생된 아동들을 재활하고 복귀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추진	×
○ 국경 내 아동 인신매매를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립 및 평가	×
○ 법 집행관 사이에서 국경 지역과 국경 내 협력이 꾸준히 강화	×
○ 각각의 동행이 없는 인신매매된 아동들에게 보호자가 지정되도록 법적 조치. 필수적인 경제적, 심리-사회적 지원	×
○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법 평가	×

제4절 향후 우리나라 리오행동강령 이행과제⁴³⁾

리오 행동강령별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C.1. 일반원리 관련 향후 과제

리오행동강령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책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국내에서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원리로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자에 대하여 Double criminality(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것)를 필수로 하는 것을 폐지하여 치외 법권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판권을 확립하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고 합당하게 처벌을 위하여 효율적인 범인인도(extradition)와 사법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련된 역외 법(extraterritorial laws)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 법 집행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표 5-9〉 C.1. 일반원리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43) 본 절 작성시 전소희 숙명자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과정생의 도움을 받았음.

내용	관계부처
○ Double criminality(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것) 폐지	법무부, 외교통상부
○ 역외법(extraterritorial laws)을 집행하기 법집행 기관 지정	법무부, 외교통상부
○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아동 중심의 치료와 재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 인터폴의 국제 아동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지원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
○ 다각적인 referral 구조 확립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증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 아동의 참여 독려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성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및 영상물 등 개발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인 면에서 유해한 행동을 드러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선택으로써 이들을 범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아의 성착취를 염두에 둔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아동 중심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실시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하에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원정 성매매 사범과 관련하여 한국, 미국, 캐나다가 국제공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해외 성매매는 그 범죄 발생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정보 및 증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 관련자 교육을 위해서 경찰 수사팀 내에 아동 성범죄를 다루는 특별팀 및 아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고, 경찰 및 사법집행관에게 특수한 교육(training)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시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아동보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법정 형 상향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반 편성운영, 성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화, 엠버경보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위기 아동 조기발견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2.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 관련 향후 이행과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동통신사, 검색엔진,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와 아동 학대 이미지를 보고하고, 제거할 것을 의무로 하는데 필요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5-10〉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이미지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내용	관계부처
○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지가 어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인지, 추적하고 대응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 개발 및 연구	법무부, 경찰청
○ 아동학대 이미지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개발, 유포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보고하도록 전화와 온라인 상담 전화를 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경찰청

첫째, 아동학대 이미지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 기관 내에 종합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폴의 국제아동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선택의정서의 보완 및 감시를 위한 아동 권리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전담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원정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여 국경지역(국제적) 법집행 조치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에 있어 다자간 협정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 정서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있어서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행위 등의 법률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5월 26일 제정되어, 아동포르노의 제작 등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재하는 아동의 영상과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영상의 제작은 모두 아동 포르노그래피이며, 실재 아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가상아동을 창출하는 행위’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포함시키고 있다.

3.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는 우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1) 보호자 위탁처분: 임시적, 총동적이며 가정에 문제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맡긴다.
- 2)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개선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
- 3)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 정신과나 요양치료가 필요한 아동 대상
- 4) 소년수탁시설 위탁처분: 부모가 없거나 보호능력이 결여된 아동이 학교를 중퇴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아동대상
 - 진로(탐색) 프로그램/진로상담의 제공
 - 건전한 직업가치관 확립
 - 일자리 아르바이트 알선 및 제공
 - 직업기술의 훈련 기회가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평가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활동의 강화

-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둘째, 아동 성매매 예방 및 치료, 성착취에 있어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의 내용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조직이나 성매매를 원하는 성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성 매수자 개선교육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유해사이트, 성 매매 암시광고 제한 등을 위한 법 및 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표 5-11〉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내용	관계부처
○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 성매매, 성적 동의 연령, 형사책임능력(criminal responsibility)을 포함하여 국제규범에 맞게 국내법을 일치시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 성착취에 희생된 혹은 이러한 위험에 처한 소년에게 보호, 회복과 재활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그리고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프로그램 (위험의 평가 측정, 예방과 대응 기제를 포함하여)을 확립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회복, 재활 복원과 같은 대안적 보호 모델 확보	
○ 피해아동에 전문적이고 적절한 의료, 회복, 경제적 대안 등 총체적인 대응	
○ 적대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연구	

셋째,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 교육과 인식 및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이 성착취에 대해 아동을 약하게 만드는 변태 행위, 위험요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 의식을 확산시키고, 자아개념을 향상하며,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성매매에 대해 전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고, 빈곤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장학기금 등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상담, 부부상담,

경제적 지원서비스 등도 활성화하여 전 가족의 회복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해외관광에 있어서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기내용 홍보 비디오를 제작을 고려해야 한다. 에어프랑스에서는 기내방송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금지 관련 홍보 비디오를 방송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정부는 관광, 여행, 호텔산업체가 성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 수칙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은 끊임없이 국제여행알림시스템 혹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green notice’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한다. 넷째, 해외원정 성매매 역시 자국의 법제도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반대중이 인식할 수 있도록 메스미디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기술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5-12〉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내용	관계부처
○ 관광, 여행, 호텔 산업에서 전문적인 행동 수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 국내/국제 관광객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데 특별한 관심 경주	
○ 국제 여행 알림 시스템이나 혹은 인터폴의 ‘green notice’ 시스템을 확립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
○ 범죄 조사를 확실히 하고, 외국에서 고발되거나 연루된 국민들에게도 처벌	
○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직업훈련, 직업 지침이나 일자리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새로이 부상하는 관광지에 대한 감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5.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 인신매매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법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아동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다룰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고, 국제인터폴과의 활발한 협력을 해야 한다.

〈표 5-13〉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 향후 이행과제 및 관계부처

내용	관계부처
○ 아동을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고찰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 인신매매에 희생된 아동들을 재활하고 복귀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추진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 국경 내 아동 인신매매를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립 및 평가	외교통상부, 경찰청 여성부
○ 법 집행관 사이에서 국경 지역과 국경 내 협력이 꾸준히 강화	법무부, 외교통상부
○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법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이상에서 제시된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민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착취 근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6장 정책제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근절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내외 법과 의정서 등 관련규정의 견고성 및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법이 효율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협력 하에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의 인식개선 및 참여의 제고로 관련 법과 정책의 보완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적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관련 법체계 정비 및 강화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성범죄는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게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며, 그 후유증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기도 한다(문영란, [시론] 실종된 아동 성폭력 범죄 대책, 중앙일보, 2007.3.1). 특히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외상 후 적절한 치료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부적응 현상을 나타내고, 그 피해가 일생동안 지속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아동이 정상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아동의 심리적 치료와 안정에 기여하며, 아동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며 처벌받는다라는 사회 전반적 인식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에도 도움을 주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이윤호·이금형, 2007).

국내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 치료감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과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에 대한 검거인원 1,143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38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성매매 연간 접수 건은 약 1,500건에 불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경찰청 내부자료, 2008).

Pearce(2000)의 연구는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처벌의 강화는 실제적인 법 집행률이 제고되어야만 이를 수 있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의 검거 및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2. 성매매에 대한 개념 재정립

성매매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 현행과 같이 대가성 여부와 성교행위 여부를 전제로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항), 대가성없이 잠자리나 과자, 차비 등을 주면서 청소년과 이루어진 성관계나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성행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방은령, 2003).

3.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정지

성인과는 달리 아동의 경우 인지력과 사고력이 미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통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즉각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종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피해 아동이 성폭력을 인식하게 되며 이 시점에서는 가해자를 형사소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윤호·이금형, 2007).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성폭력을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미루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정비

세계 각국은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도 제 2선택의정서를 합의하여 각 당사국에 아동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범죄인인도,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의 채택·시행·보급·정보제공·교육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형법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보호관련법에서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제가 규정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이 제 2선택의정서의 개념보다 협소하고, 아동매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및 형법의 개정이 요구된다(원혜옥, 2005).

우리나라의 형법에 기본범죄로 아동매매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의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과 아동에 대한 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그 죄질이 중하다는 점 및 우리나라가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정책적으로도 아동보호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법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 처벌 및 사이트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유료 성인채팅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가 이를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정보완’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소지처벌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수사방식 등 구체적인 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실적인 제도 집행이 어렵고,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인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현황과약 등이 미진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성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아동포르노그래피가 아동 성학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아동을 성학대 또는 착취하기 위한 유인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벌에 대한 기준 또한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정의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회복 강화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 강화

현재 우리사회 청소년 보호시설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성매매로 복귀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처분 프로그램이 확대·강화되어야 하며, 치료·회복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의 증원과 재정지원 확대, 또한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이춘희·조아미, 2005).

한편,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수를 늘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인 보호시설에서 6개월 정도 기거한 후 자연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다(신현기·이상열, 2006). 6개월은 현실적으로는 성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증설을 위한 국가와 관련 정부기관들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성폭력 전담조사관 워크숍 개최’의 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악영향과 수사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유린되거나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사건별 특수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다(신현기·이상열, 2006). 그러므로 ‘성폭력 전담조사관 워크숍’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있으나,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교를 되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춘희·조아미, 2005). 이들에게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교육 대신에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상습적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피해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 확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은 피해청소년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줌으로써 개인심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이춘희·조아미, 2005). 멘토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성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성인을 멘토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멘토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성매매의 피해를 치료하는 단계 뿐 아니라 예방

하는 단계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4. 성매매 재발 방지: 선도보호 강화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아 대부분 훈방 조치하거나 보호자나 쉼터로 인계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이를 다시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방은령, 2003). 그렇다고 세계적인 흐름과 UN의 권고에 반해서 대상 아동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보호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실행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은 현재 전국에 14개소 밖에 없고, 대부분 서울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9개소). 시설확충과 함께 청소년들을 재활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충도 요구된다.

5. 성착취 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정확한 성착취 현황은 파악되지 못한 채,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역으로 피해아동청소년 수를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검거되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건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실태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전국수준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경로, 성매매 중단 및 지속 이유, 성매매 유형별 연계성,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원인, 성매매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정서적, 기타 다른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김지선, 2001). 아울러 가해자 성인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현행 지원제도의 효과성 등의 검증도 필요하다.

제3절 성착취 예방 정책 확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성착취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빈곤, 가출, 잘못된 직업관 그리고 청소년의 쾌락과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환경적 요소 등의 사회적 위험에 저항할 수 있는 청소년의 방어기제를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빈곤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가정의 빈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과 연관이 있으며, 특별히 빈곤가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고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빈곤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및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사회적 자원을 이들 가정에 연계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족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의 완충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이춘희·조아미, 2005).

2. 가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지원센터의 확충·홍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중 대다수가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가출 중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희·조아미, 2005).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에 청소년 쉼터와 같이 쉽게 찾아가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출 청소년 수에 비해 보호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보호시설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 않아 막상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시설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적이

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수를 늘리고, 더불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전한 직업관 확립, 진로상담 및 일자리 제공

일부 성매매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정적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성매매가 상습화되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마음들이 점점 무뎠다고 응답하였다(이춘희·조아미, 2005).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전적인 이유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며, 성매매를 통해 한탕으로 고액의 돈을 버는 것이 수고하여 노동한 대가로 받은 적은 돈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고하여 일하는 것, 즉 직업을 갖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더불어 건전한 직업관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희·조아미, 2005).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이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대학진학 위주의 상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재학 중일 경우에는, 교내의 일반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비진학 청소년일 경우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건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집안형편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했거나, 미용·유혹비 등의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는데, 청소년 신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유혹이 강한

성매매를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이춘희·조아미, 2005). 성매매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화 되는 주요원인도 청소년들의 금전적 욕구를 건전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노력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알선해 줌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강화 대책

가.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도구로 이용되는 아동포르노그래피 확산은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확산되고 인터넷방송·화상채팅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콘텐츠의 음란성과 폭력성의 정도 또한 급격하게 심각해졌다(원혜옥, 2005). 이러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 관련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상반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성매매제외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사후조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 및 수사기관의 24시간 상황실 등 핫라인 구축 및 운영체계 정비와 음란·유해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요청 등 업무공조를 통해 청소년들의 음란·유해정보 접근제한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근차단 및 인터넷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인터넷 채팅의 위험성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 음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및 차단장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증설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증설하도록 한다. 윈스톱지원센터에서 취급한 아동성폭력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범죄는 주로 주택가나 학교주변 놀이터·공원, 주택가 골목·공도 등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윤호·이금형, 2007). 이에 경찰청은 아동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어린이 안전구역(Child Safety Zone)’으로 지정하여 파출소112순찰 등 지역경찰관 범죄예방활동 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주변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어린이 안전구역임을 표시하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구역 및 CCTV의 증설은 아동성범죄자 체포 및 아동성범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지역기관 등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설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가족 내 자녀지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가 근절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무관심이 이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동균, 2001). 자녀의 성의식, 직업관, 일상생활 및 소비의식 등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관심과 개입을 통해서 개방된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채팅에 몰입되어 성매매 유혹에 노출되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방은령, 2003).

6.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강화

학교 및 가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출 및 유해업소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그 자체가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성매매, 불법고용, 약물남용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박동균, 2001).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는 숙박업소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을 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유인하는 허위벽보, 전단과 같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허위 구인, 구직 광고를 자체하도록 생활정보지발간협의회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박동균, 2001).

7. 사회적 의식개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속해 온 쾌락주의, 배금사상 및 남성우월주의적 성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녀평등의식의 확산과 성실과 근면함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가치관이 약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국제공조 강화

해외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제기관 및 NGO 보유 자료를 공유하고 성폭력·성매매 등에 대한 국제적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와 관련한 아동 인권보호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국제적 공조는 국내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해 줄 것이며,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기술을 차단하고 한국인의 인신매매 및 해외성매매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8: 상반기 추진실적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 성과 주요통계』, 2008.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정착 종합실태조사』, 2007
- 김경애, 『아동청소년대상 해외성매매 실태- 필리핀, 태국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2006..
- 김시업,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경기교육논총』, 제9집, 경기대학교대학원, 2000, pp.87~108.
- 김지선,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김지선·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6.
- 남미애,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2001.
- 대한민국정부, 『제3, 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2008.
- 박동균,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2001, pp.39~66.
- 방은령, 「청소년 성매매현상과 대처방안」,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1호, 2003, pp.21~36.
- 법무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연구용역보고서,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 청소년 보육정책 참고자료」, 2008. 10
- 브라질 세계대회, 내부자료, 2008.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부처별 과제추진 실적』,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 2007.
- 신미식,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신현기·이상열,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1호, 2006.
- 심영희, 「청소년 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형사정책』, 2001, pp.7-29.
- 심희기,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형사정책』, 14(2),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75-103.
- _____, 『한국의 CSEC 중식투쟁 3년의 보고 (2000.7-2003.10)』,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2008. 4. 30.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성매매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8.
- 우장훈, 『성매수 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공편, 인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2001.
- 원혜옥,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 정서와 한국의 실천」, 『국제인권법』, 제8호, pp.66~67, 2005.
- 유문무,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2호, 2005, pp.163~194.
- 외교통상부, 내부자료, 2008.
- 이윤호·이금형,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2호, pp.211~213, 2007.
- 이재연·전소희, 'The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committed by the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sian Women*, 2005, Vol. 20.
- 이춘희·조아미, 「청소년 성매매 사례의 분석을 통한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1호, 2005.
- 정규석·김영중,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조성연,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 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조성연·이용교·방은령,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00, pp.99~116.
- 조아미·이명화,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001, pp.57~71.
- 조연하, 「인터넷 상의 가상 청소년이용 성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의 위법성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가출청소년 성피해 실태조사』, 2005.
- 한인영·이용우·유서구·박명숙·김진숙,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배경요인」, 『한국사회 복지학』, 제60권 제2호, 2008, pp.131~153.
- 홍봉선·남미애·양혜진·이자림,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 분석』,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12.
-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U.S.A*, 2006a
-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U.K.*, 2006b
-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ailand*, 2006c
-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Japan*, 2006d
- Inciardi, J., Pottieger, A. E., Forwey, M. A. Chitwood, D. D. & McBride, D. C., Prostitution, “IV Drug use and sex-for-crack eschanges among serious delinquents: Risk for HIV infection,” *Criminology*, 29(2). 1991, 221~235.
- Paulo S. P.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 이양희(역), 세이브더칠드런, 2006.
- Pearce, “Young people and sexual exploitation: a European issue”, *Social Work in Europe*, 7:24~30, 2000.
- Scott et. al., *Reducing the Risk: Barnardo’s Support for Sexually Exploited Young People*, Barnardo’s, London, 2006.

UN ESCAP, *Toolkit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Commitment and Action Pla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UN ESCAP, 2006.

UNICEF Pacifi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Pacific: Regional Report*, UNICEF Pacific, 2006.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6.

_____,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7.

[http:// www.state.gov/g/tip](http://www.state.gov/g/tip) (2007년 12월 20일 접속)

<http://www.ecpatusa.org>

<http://www.protectionproject.org>

<http://www.abanet.org/child>

<http://www.crin.org>

<http://www.missingkids.com>

<http://www.refugeecouncil.org.uk>

<http://www.child-safe.org.uk>

<http://www.ecpat.com/EI/index.asp>

<http://www.polarisproject.jp/engsite/aboutus>

http://www.cwa.tnet.co.th/Network/cwa-network_thailand.html#FCPCR

<http://www.depdc.org>

http://www.un.or.th/TraffickingProject/FACE/face_home.html

<http://www.hotline.or.th>

http://www4.law.cornell.edu/uscode/18/usc_sup_01_18_10_I.html

http://www.humantrafficking.org/countries/south_korea (2007년 8월 24일 접속)

부 록

1. **우리 수석대표 기조연설문(국문)**
2. **Chief Delegate's Keynote Address (영문)**
3. **대회 배포문 (국문)**
4. **대회 배포문 (영문)**
5.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오테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 (국문)**
6. **The Rio de Janeiro Pact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영문)**

□ 우리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국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브라질 정부, UNICEF, ECPAT, NGO Group 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금지 및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매매와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책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2테마의 각 주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해 왔던 그 간의 노력 및 경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아동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형법”,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처벌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차단 등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하여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범 개연성이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을 2007년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여권법을 개정하

여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치료와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자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선택의정서”의 비준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에 2000년 9월 6일 가입하였으며,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고, 비준국의 의무에 따라 2007년 3월 9일에 선택의정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택의정서 최초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대한민국 정부의 미흡한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권고를 받았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려는 조치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12월 제출예정인 “아동권리협약” 제3·4차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상 보호나 책임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책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성폭력범죄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체를 운영하여 24시간 Hot-line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시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여성 전용 조사실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가 상담, 의료, 법률·수사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겪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병원

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NGO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2차 세계대회이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회의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개선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세계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한층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에 관한 세계회의를 주최하신 분들과 참석하신 각국대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 11. 26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장

□ Chief Delegate's Keynote Address (영문)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very pleased to take part in this session of the Third World Congress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y fellow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thank the Brazilian government, UNICEF, ECPAT, and the NGO group for their efforts in hosting this event.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Since ratif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eating systems to eradicat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the sale of children discovered in Korea. However, internet prostitution and other new form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still require more systematic countermeasures.

Now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and experience i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Korea has enacted or revised the following laws to strengthen punishment of those who exploi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ale of children under any circumstances was made a serious crime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Code",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Korea also pass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in 2004, and increased the punishment for brokers of prostituti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or brokering of child pornography is prohibited, and violators are punished according to the "Child Protection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To combat online child pornography, related laws have been amended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and stop their customers from transmitting harmful content.

In addition, Korea instituted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06, banning them from jobs with youth-related institutions. We also

operate a 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 system. To keep track sex offenders of children,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Sex Offenders" was passed in 2007. In March 2008, we amended the "Passport Act" to restrict the issuance or renewal of passports for anyone convicted of prostitution-related crimes abroad.

Korea is also doing more to protect victims of prostitution. Through a revision of the 2004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we have increased medical and legal support for victims and expanded social welfare facilities.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As a State Party to bo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a sincere effort to fully comply with both of these agreements.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became a State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n September 6, 2000. We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on September 24, 2004, and submitted our first national report on March 9, 2007. At the June 2008 sess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received final recommendations on government policy inadequacies which were identified in our First Periodic Report.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making every effort to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The results of our efforts in these areas will be included in our 3rd and 4th Periodic Report due to be submitted in December 2008.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As part of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victims of prostitution, Korea exempts youths involved in prostitution from punishment. Moreover, Korea has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for administrators of child and youth facilities to immediately report any signs of sexual abuse among those in their care to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cases of sexual violence, the Korean government assigns responsibility not only to the actual offender, but also to persons exercising authority over or responsibility for the offender.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Since 2003, Korea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public prosecutors in investigations and police proceeding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youths. We also operate a 24-hour

hotline for victim counseling and reporting. In addition, a trusted party may accompany victims during investigation, their statements are recorded, and special investigation rooms for women and children are designed to ease the victim's mental well-being. In provid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with the counseling, medical, legal and other services they need, we must eliminate multiple trips to different institutions and prevent victims from being "revictimized" by the process. For this reason, Korea has set up One-Stop Support Centers in 15 hospitals around the nation which offer all related victim services under one roof.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These achievements reflect our firm determination to eradicat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s. They are the result of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of NGOs.

But despite the many achievements of the Second World Congress, we are seeing a rise in new pattern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which demand our resolute response. Clearly, our efforts must continue. This session of the World Congress gives us a new opportunity to discuss improved countermeasures to figh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a global platform for elevating the rights of children everywhere.

Korea will remain steadfast in its efforts to end the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of our own children, and we shall continue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radicate this scourge from our world.

In closing, I wish to reiterate my thanks to our Brazilian hosts and also to my esteemed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is World Congres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ank you.

November 26, 2008

Assistant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Republic of Korea

□ 대회 배포문 (국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대표들이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브라질정부, UNICEF, ECPAT, NGO Group 등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각국 대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차 세계대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초국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그 간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노동·보건·복지를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및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공약 등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와 각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테마의 주제인 법률적 체계 및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해왔던 그간의 노력 및 경험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법규의 개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정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들을 처벌강화, 재범방지, 사전예방,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매매, 성매매, 음란물과 관련한 성범죄, 성폭행 등의 처벌을 강화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매매와 같은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음란물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처벌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배포·판매·게시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이용및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 모니터링, 차단 등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편,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유사강간의 경우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7년인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2008년 10월 현재 130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이중 52명이 열람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전자 위치추적 제도를 2008년 9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08년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수감·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 석방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 및 음란물과 관련한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3년마다 국내의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및 성매매 실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성매매 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공공단체의 장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영리의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향후에는 성매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도입을 신설했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에서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2008년 3월 “여권법”을 개정하여 해외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2007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홍보영상을 제작·방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검사의 수감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 또는 언론에 누설·공개할 수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비디오 녹화를 통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반복된 진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의사표시를 최대한 존중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등 아동중심의 형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선택의정서의 이행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자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비준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2000년 9월 6일 가입하였으며,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고, 비준국의 의무에 따라 2007년 3월 9일에 선택의정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택의정서 최초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대한민국 정부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려는 조치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12월 제출예정인 “아동권리협약” 제3·4차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그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법률의 제·개정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관련법률 중에서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힘입어 법률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된 대표적인 법은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입니다. 2007년 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제법 발생을 억제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확대·강화하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2004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아동 성착취의 예방과 보호, 집행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사항을 보였습니다. 2007년에는 성매매, 해외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등 새로운 성매매의 동향과 환경변화를 인식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아동범죄예방 및 단속강화,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구조,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관련 7개 부처가 협동하여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수 피해아동의 치료, 재활교육에 대한 예산, 치료센터에 설치 및 운영, 홍보 및 교육활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과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교육을 위해 2006년 2억원, 2007년 6.3억원, 2008년 6.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하여 2004년 5.03억원, 2005년 14.45억원, 2006년 13.5억원, 2007년 13.5억원, 2008년 18.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해 2007년 74.55억원, 2008년 90.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NGO 등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2005년 220억원, 2006년 202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15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로부터 구호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적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의료·법률자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아동·여성 성폭력·성착취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여 24시간 Hot-Line을 구축하고 실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 및 관련 조약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조직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취약한 여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총회 결의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또한 2002년에 가입한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국내적 이행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아동성폭력 추

방의 날” 제정 등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hot-line 1388’ 상담전화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들은 성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켜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이행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고 “선택의정서”를 완전하게 이행하며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 면책범위 및 책임귀속의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를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성매매 대상 청소년 보호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일선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이 처벌받거나 낙인찍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직무의 성격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확인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책임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

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수사를 위한 절차 사항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국 56개 검찰청에 전담검사·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256개의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모든 아동·여성 실종사건 발생 즉시 조기·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의 검찰 지검 및 지청에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및 성착취 피해사건을 전담하는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검사는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직접 참석해 수사사항을 지휘하고 가급적 경찰단계에서 1회조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담검사제도의 도입은 아동 친화적 조사환경 제공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하여 아동과 여성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은 녹음 및 녹화장비를 비치하고 편면경 또는 조사실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며, 아동·여성 친화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 제도는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수사과정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 시스템으로 수도권 소재 4개 One-stop지원센터에서 2007년에 3개월 간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심리전문가 인력풀을 구축 한 후, 2009년도에 전국 15개 One-stop지원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 경로가 인터넷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경찰청에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성매매사범 수사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접수되는 불량채팅사이트 및 구직빙자 성매매알선사이트 목록을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국 24시간 상담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피의자 추적을 위한 가입자명의 ID추적·IP추적기법등 특화된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NGO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넘어야할 과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3차 세계대회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결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금번 제3차 세계대회를 준비해 주신 브라질정부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회 배포문 (영문)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I am very pleased to take part in this session of the Third World Congress together with my esteemed fellow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in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eradicate the scourg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Brazilian government, UNICEF, ECPAT and the NGO Group for the extensive preparations they have made to host this event, and convey my sincere thanks to all delegates gathered here to seek means of combating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I believe the Third World Congress will offer us an extremely valuable opportunity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to address the problem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build cross-border systems to facilitate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area.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conformity with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cern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oted every effort to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those rights in all policy areas from education and labor to health and public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is dedicated to achieving full compliance with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n the area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 continue to observe 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greed at the First World Congress and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reached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We are also pursuing measures and activities i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pheres to safeguard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tect them from sexual exploitation. I would now like to discuss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and experiences with regard to the second theme of this World Congress, namely, the eradic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Revision of the Laws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broad legal framework to help protect children

and combat sexual exploit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such laws as the Criminal Code, the Child Welfare Act,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working to improv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areas of strengthened punishment, recidivism prevention,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First, Korea is implementing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related crimes. The crime of trafficking in children is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Code,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Under the Criminal Code, any person capturing or enticing others into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or profit, as well as trafficking in women, shall serve a minimum one-year prison sentence, whil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yone found guilty of child trafficking for whatever purpose shall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10 years. Thus far, no instance of the sale of children has been discovered in Korea. In 2004,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nd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to Prevent Prostitution"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Criminal Code,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prohibi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or brokering of child pornography and stipulate punishment for violators. Furthermor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prescribes penalties for the distribution, sale or notification of child pornography over the internet or mobile phones. Meanwhile, following an amendment of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in 2007,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s now a punishable offense regardless of profit motive. Hereafter, in line with a revis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ll be made directly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suspending the service of subscribers who use the internet to transmit illegal harmful content.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is taking the following policy steps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by sexual offenders of children. Under the revised Youth Sex Protection Act, any person who sexually abuses children or adolescents is ineligible for employment at

educational facilities for a period of 10 years after serving their sentence. They are also registered for 10 years as sex offenders of children/adolescents via a nationwide registration & notification system which keeps communities informed about sex offenders in their area. A total of 130 sex offenders were registered as of October 2008, of whom the public was notified of 52. Revisions to the relevant law are now underway to make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vailable to the public over the internet. In 2007,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pecific Sex Offenders" was enacted, making it possible to electronically track sex offenders of children 24 hours a day, with the law taking effect from September 2008. Using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this law establishes a system for tracking & confirming the whereabouts of sex offenders whose victims were under the age of 13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Additionally, in a revision of the "Cure Custody Act" in 2008, sex offenders suffering from pedophilia or other mental disorders receiv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up to 15 years. Through ongoing custody and care provided after sex offenders have served their sentences, authorities periodically gauge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and determine whether the individuals are ready to be released back into society.

Third, Korea is implementing a broad range of policy measures aimed at the preventing of crimes related to the sex trade and pornography. In lin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of 2004, investigations into the actual status of the domestic sex trade are conducted and comprehensive reports are compiled every three years. These serve as the basis for anti-prostitution policy formulation. In addition,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principa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receive preventive education. To further these efforts,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7, and television broadcasters were tasked with producing and airing public-service information spot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sexual abus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keep the issue at the forefront of the public's consciousness. Steps are also being taken to thwart sexual crimes against youths via the internet amid the recent increase in online child prostitution.

Thes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of punishment for adults who use the internet in an attempt to proposition youths or meet youths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t the same time, the "Passport Act" was amended in March 2008 in order to combat overseas prostitution, allowing the government to restrict the issuance or renewal of passports of anyone convicted of committing a prostitution-related crime abroad.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addressing the need for stronger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at the policy making level. For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victims complete assessment-based education and counseling course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suited for child & adolescent victim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provided by six organizations nationwide. To further ensure the victim's protection, public official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re required to observe the strictest confidentiality so as to prevent the leak or disclosure of the victim's personal data, photos or other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 victim's rights and individuality ar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particular care is exercised to safeguard their dignity and self-esteem. Seeking to avoid victimizing youths a second time through repeated trial testimon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llows victims under the age of 16 to submit videotaped statements, and they are shown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secution process. Moreov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permits a party the victim trusts to accompany them during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thereby easing their mental state and creating a more victim-friendly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As a State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 sincere effort to fully comply with the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became a State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n September 6, 2000,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on September 24, 2004, and submitted its first National Report on March 9, 2007. With regard to government policy inadequacies identified through Korea's Consolidated 1st Periodic Report, finalized recommendations were received during the Sess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ld in June 2008.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making every effort to meet these recommendations. The results of our efforts in these areas will be added to our 3rd & 4th Consolidated Periodic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cheduled to be submitted in December 2008.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following policies thus far in compliance with the Optional Protocol. First, i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domestic legislation, Korea is working to harmonize national laws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standards and contents set forth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Of all related domestic laws,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serves as the best example of legal reform spurred on by the Optional Protocol. Amended in 2007,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now stipulates strengthened punishment for sex offenders whose victims are juveniles, and also helps to curtail recidivism. In another revision, those charged with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now prosecuted unless the victim expresses a contrary wish, whereas previously, prosecution required the victim to press charges. Additionally, the country's 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and various loopholes of previous systems have been closed, with new measures for separating and protecting victims in cases where the offender is a par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national plans of action in its effort to faithfully implement the Optional Protocol. In 2004,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to Prevent Prostitution" was enacted to help tackl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women and provide protection to victims.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to Prevent Prostitution was revised and strengthened in 2007 in recognition of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new forms of sex trafficking, including overseas and online prostitution. In 2008, with a

goal of building a safe society for children and women, seven governme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joined hands in devi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The far-reaching scope of this policy extends to preventing crimes against children, intensifying crackdowns on criminal activity, speeding up the apprehension of criminals and the rescue of victims,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x offenders, reducing recidivism, and increasing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budget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reatment centers, and publicity and educational activities, with plans to expand this budget and ensur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relevant contents of the Optional Protocol. Funding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young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was \$200,000 (\$1=KRW 1,000) in 2006, \$630,000 in 2007, and an estimated \$620,000 this year. Annual outlays for the construction of Centers for Child Abuse and Neglect have risen from \$503,000 in 2004 to \$1,445,000 in 2005, \$1,350,000 in 2006, \$1,350,000 in 2007, and \$1,850,000 in 2008. Expens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and assistance for victims has grown from \$7,455,000 in 2007 to \$9,019,000 in 2008, while joint support activities conducted by NGOs and civic groups have totaled \$22,000,000 in 2005, \$20,200,000 in 2006, \$18,100,000 in 2007, and \$15,400,000 in 2008. To help those rescued from sexual exploitation lead a healthy and independent life, they are provided temporary emergency living funds, legal and medical assistance and job training, with counseling centers offering expert medical & legal advice.

In compliance with the Optional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operates special investigative squads to deal with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as well as a 24-hour hotline to create a system of around-the-clock, real-time investigation command. Korean nationals found guilty of committing sexual offenses overseas are punished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and in cases where such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children outside of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stipulates criminal prosecution and punishment. Furthermore, when criminal extradition

requests are received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who are wanted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se requests are duly honored in accordance with the "Extradition Act" and relevant reciprocal treaties.

The Korean government participates proactively in global efforts to punish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trafficking in persons. Korea is among the countries that presented a joint recommendation for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vulnerable to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and is an active supporter of a UN GA resolution on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Moreover, in 2002, Korea ratifie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and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is currently adopting or amending the relevant domestic legal frameworks in compliance with those agreements.

Beyond jurisprudence, Korea holds an annual "Day for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every February 22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is important issue, operates a crisis hotline (1388)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uns 129 Health and Welfare Call Centers (hotline: 129) throughout the nation. There is also an extensive social safety net of 143 youth counseling center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to help young people deal with the problems of running away from home, school violence, dropping out of school, internet addiction, sexual exploitation and suicide, and to provide immediate assistance in case of sexual abuse or other crisis situations.

In our bid to comply with the Optional Protocol, the government of Korea has pursued a diverse range of programs and efforts to ensure effective protection apparatus for the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hereby advancing the rights of Korean women and children. Despite the many achievements made thus fa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s this as the start rather than the end of our mission to eradicat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women. We shall continue our efforts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ork to fully comply with the "Optional Protocol" through effective monitoring and diverse, ongoing action.

Impunity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exempts those victims from punishmen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excludes youths who are sexually exploited from punish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ve jointly prepared th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Youth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work to ensure observance of these guidelines at front-line Public Prosecutor's Offices in an effort to prevent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from being punished or stigmatized.

Under the "Youth Sex Prevention Act," the employees of schools, child-care facilities and hospitals are obligated to report sign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o the proper authorities. Furthermor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requires persons in charge of or employed by care, education or medical facilities for youths under the age of 18 to notify investigative agencies immediately upon discovering child or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crimes under their protection. Those neglecting to do so are held responsible and receive fines.

In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youths, the Korean government assigns responsibility not only to the actual offender, but also to parties exercising effective authority over or responsibility for the offender.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stipulates punishment for any legal person or their representative, agent or employee, member of their organization, or related private person who commits the crimes of producing or distributing child pornography, trafficking in youths, forcing youths against their will, or arranging prostitution with children. The Act also holds corporate entit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such crimes liable for financial penalties as stipulated and, for cases where no specific penalties are prescribed, fines of up to KRW 50 million. However, in the application of dual punishment, proprietors who have enforced "duty of care"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ir employees will be regarded as having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nd made exempt from punishment.

Procedures for Special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created "Criminal Investigation Squads" at 56 Public Prosecutor's Offices nationwide comprising public prosecutors and criminal investigators to respond to incidents of kidnapping or sexual violence 24 hours a day. We have also set up 256 "Missing Persons Investigation Teams" attached to police headquarters throughout the country, providing a rapid and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for all missing children & women cases that arise, and enabling quicker criminal apprehension.

To protect the rights of sexually abused youths under the age of 13,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omprehensive sexual violence & exploitation investig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branches nationwide since 2003. Public prosecutors attend and direct police investigations into cases involving abused children, and every effort is made to conduct the inquiry in a single session and give the fullest consideration to the victim's well-being.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system provides a more child-friendly investigation environment, while significantly strengthening the righ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lso, every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the country has an investigation room designated specifically for children and women, with the aim of guaranteeing maximum peace of mind and privacy for young and female victims. The investigation rooms for women and children are designed to create a child- and woman-friendly atmosphere, and are equipped with audio and video recording devices, two-way mirrors, and monitors to allow viewing of the interior from outside the room.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put in place a system by which mental health specialists take part in investigations involving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from the initial stage.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evidence" of oral statements, strengthen punishment of offenders, and avoid harming victims a second time through the investigation process, four one-stop support centers offering these exemplary investigation procedures began three months of trial operation in Seoul in 2007. Following creation of a pool of mental health experts, plans call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one-stop support centers around the country to 15 in 2009. Furthermore, genetic testing of prison inmates

sentenced for special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planned, with a DNA profile database expected to be utilized in future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Amid the rise in prostitution via the internet, local police depart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created "Internet Prostitution Response Units." An "Internet Sex Trafficking Investigation Manual" has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mmittee compiles a catalogue of sex-trafficking intermediaries posing as chat websites or job placement websites for use in crackdowns. We are also improving emergency support centers for female victims of sex-trafficking, and building an online/offline 24-hour counseling and report system. In the future, we plan to develop and disseminate specialized investigation methods including ID- and IP-tracking techniques aimed at criminal suspects.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The achievements I've discussed until now are the fruits of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s firm will to eradica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the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of NGOs. But despite the impressive results of the past 10 years, we have still more work ahead and even greater obstacles to overcome before we can truly say tha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thing of the past.

Madam Chairwoman, distinguished delegates,

In anticipation of that day, the Korean government will not let up in its efforts to end the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of our children, and we will continue to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radicate this scourge from our world. I look forward to taking part in many constructive and fruitful discussions at the Third World Congress, and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sincerest thanks to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ir preparations to host this important event.

Thank you.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

서문 (Preamble)

우리-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 기구, 인권 단체, 민영 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⁴⁴⁾ 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반대하는 World Congress III의 참가자-는 1996년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 공약(Yokohama Global Commitment)에서 채택된 진전과 실천 사항에 대한 사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과 핵심적 문제점을 정의하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⁴⁵⁾를 예방, 금지, 중단하며 이에 희생된 아동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계획의 대상과 목표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모였다.

- 우리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들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정신적 고결성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바이다.
-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수위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특히나 인터넷이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기술과 여행이나 관광에 있어 가해자들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서 특정한 형태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다.
- 우리는 빈곤의 심화, 사회적 불평등, 소외, 약물 남용,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지속적 수요, 생활 환경의 악화, HIV/AIDS, 실업, 무장 충돌, 그리고 아동 보호에 책임을 지고

44)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5)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는 가정과 가족 내, 학교와 교육 환경, 보호와 사법 시설,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18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있는 기본적 단위인 가정에 변이를 일으키는 그 밖의 위급 상황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용인, 연루, 그리고 면죄라는 환경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성관계에 대한 꾸준한 수요 등과 같은 결과로써, 많은 아동들의 성착취에 대한 취약성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언급하는 바이다.

- 우리는 국가 당국에 어린이가 성착취로부터 보호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뿐만 아니라,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 국가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법률로 금하며, 기소할 것을 요구한 것을 상기한다.
-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와 이 밖의 관련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인권 기구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루는 것을 환영한다

A. 진척사항과 교훈에 대한 고찰(Review of Progress and Lessons Learned)

우리는 제 2차 요코하마 세계대회 (2nd World Congress in Yokohama, Japan, in 2001) 이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루며 이룩한 발전을 환영한다:

-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8년 11월 15일 현재 129개국에서 승인됨)와 같은 국제적 협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시작함,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와 ‘인신매매방지외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에 대한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UN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 유럽 의회(European Council)의 인신매매 반대 행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과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 협정서의 채택
- 더 많은 국가에서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약정에 순응하는 법적 제도들이 채택, 이는 UN의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사법지침

(Guidelineson.)’을 참작하여 아동 성착취에 연루된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 범죄 수사 기간 동안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법적 조항의 제정을 포함함

-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협의 사항, 전략 혹은 계획의 발전과 이행, 이는 국경 지대라는 상황 내에서 특히나 증가,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틀 위에 설계되고 있음
- 성착취 목적을 포함한 아동 매매를 차단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자발적 노력이 확립됨
-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청소년 매매와 이들에 대한 성착취를 차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감지하고, 조사, 처벌,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 하에 양국간, 그리고 다국간 양자 협약이나 다자 협약이 체결됨
- 여행/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관광산업에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규범’에 서명함으로써 이들의 지원이 증가됨
- 성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예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트레이닝과 성착취에 대한 인식 고양과 교육 캠페인 모두 일부 국가들에 있어 증가세를 보임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중단하기 위한 UN, UN 산하 기구, 국가적/범국가적 NGO, 인권 단체, 국가간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

이러한 발전을 인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특정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다양한 형태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본질과 경향, 출현 징후를 어떻게 다루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로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
-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률은 현재 적용 가능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적절히 정의하거나 이를 범죄로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 일관성 있는 법의 집행과 처벌은 적절한 자원과 실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부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방해받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사와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역외 사법권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 부재하며, 필수적인 범죄자의 본국 송환에 관련된 법규와 사법 공조협약과 실행이 미흡함으로 인해 영속되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이 아직은 부족하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아동 성학대자에 대한 부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이러한 견해에 적절한 무게를 둘 수 있는 권리는 개별 국가의 법제나 관습에 있어 일관성 있게 통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이나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결여되어 있고, 아동이라는 극히 신중을 요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에 관한 법적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곳을 포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무료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아동 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 성착취의 목적을 포함해, 인신매매를 다루는 법과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빈번히 아동 피해자라는 특별한 신분과 특별 보호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특별 보호는 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본국 귀환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 피해자들이 다시 완전하게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social reintegration)과 신체적, 정신적 완전 회복을 포함하여,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을 돕는 적절한 모든 원조를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원조는 이에 필수적인 파트너들(사법 기관, 이민 당국, 사회 복지사, 심리적/육체적 건강 관련 전문가, 주거와 교육 서비스를 포함)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제대로 실효성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
- 지속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본질과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그리고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또한 이에 대한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수단들의 효과에 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
- 아동 보호, 사법 기관과 희생자에 대한 지원 부분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자원이나 최신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실전에서 얻어진 교훈이나 경험에 대한 능동적인 공유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B. 선언(Declaration)

우리-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World Congress III의 참가자 전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적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 수단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 다음의 행동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맹세한다:

- 우리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적 표준에 따를 것이다.
-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적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광범위한 정책 구조 내에서 주류가 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만 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UN Millennium Declaration에 기반하여 작성된 범세계적 목표로서 빈곤타파를 위한 의제)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나 극도의 빈곤에 처해있는 부분의 인구에서 모든 아동이 초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며 HIV/AIDS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중단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기 하기 위해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 우리는 부모와 가족(확대가족; extended family)이 아동을 성적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가족원 이외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의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조사(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에서 밝힌 권고 사항을 환영하는 바이며 재정적, 인적, 그리고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는데, 그리고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차후 선임 예정)(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뿐만 아니라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또한 이와 관련된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s), 특히나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적착취에 대한 대책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인권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성착취 위험에 있는 아동 혹은 성착취 희생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서 지속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책과 구조를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히 구성된 아동 및 청년 자문 위원회(child and youth advisory committees)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 peer-to-peer initiative(개인과 개인이 공조하는 문제 해결의 자발적 시작)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특정 그룹을 목표로 한,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트레이닝과 지역사회 동원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 결과,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용인과 지지, 그리고 아동을 성적 대상물이나 상품으로서 인식하고 취급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며, 연구 결과물을 공유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이 연구의 중점적 대상이 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본질과 영역; 기존에서 변화된 양상, 행위자, 수단, 그리고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성착취의 새로운 징후; 학교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이에 대응하는 보호 기관과 사법 제도;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 및 근절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그리고 이 밖의 모든 조치의 이행과 그 효과; 아동 및 청소년 성학대를 영속시키는 수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하고 영속시키는 데 관여된 사람; 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들의 취약성과 이로 부터의 회복력;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본질과 효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상황 하에서 자행되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아동을)보호하는 데 있어 이것(사이버 공간상의 아동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닌 잠재력; 전세계적 소비 문화가,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 범죄의 패턴(이는 개입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함)
- 우리는 아동에게 최선이 되며 절대 해가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분야에 있어 우리가 개발하고 이행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더 구체화된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며; 차후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발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보호와 성착취 희생 아동을 지원하는데 실

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증거 기반 정보 (evidence-based information)가 이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얻어온 긍정적·부정적 교훈을 모두 다 공유할 의무를 지닌다.

C. 리오 행동강령 (Plan of Action)

C.1. 일반 원리(General)

a. 우리는 모든 국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지연 없이, 늦어도 2013년 까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승인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와 ‘인신매매방지의 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 그리고 이 조약들은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보충한다;
- 지연 없이, 늦어도 2013년 까지 관련된 지역 조약을, 특히 다음과 같은 조약을 승인한다: 아프리카아동권리복지헌장(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아세안 헌장(The ASEAN Charter),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에 관한 미주인권 협약(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Traffic of Minors and on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아동 윤락인신매매 예방과 투쟁을 위한 SAARC 협약(the SAARC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유럽 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인신매매 반대 행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과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사이버범죄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그리고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비회원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모든 조약

- 관습적 성적 동의 연령이나 혼인 연령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각자의 사법권 내에서 이를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죄로 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자에 대하여 double criminality(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것)를 필수로 하는 것을 폐지하여 치외 법권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판권을 확립하고, 범죄자의 효과적인 기소와 합당한 처벌을 위하여 효율적인 범인 인도(extradition)와 사법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를 촉진하여야 한다.
- 능동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련된 역외 법(extraterritorial laws)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 법 집행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
- 관련된 국가법이나 절차를 고려하여,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나 아동 가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의 신분이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혹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성 범죄자들의 행동을 다루고 상습적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법률 체제와 프로그램이 확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위험 평가와 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자발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종합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적절한 처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어야 함).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안전한 복귀와 이와 관련한 모범 사례에 대한 수집과 공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성 범죄자 등록과 국경 지역 성 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 성적인 면에서 유해한 행동을 드러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선택으로써, 이들을 범죄화 시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최대 권익과 다른 이들의 걱정 안전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아동 중심의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을 돌보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터폴의 국제 아동 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여기에 기여할 것이며, 이에 책임을 지는 국가 내 책임자나 기관을 지명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인터폴과 공유하여 국경지역(국제적) 법 집행 조치를

지원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경찰 수사에 있어 다자간 협정을 채택해야 한다.

- 경찰 수사팀 내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다루는 특별 팀/아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찰/사법 집행관에게 특수한 교육(training)을 제공해야 한다.
- 경찰과 사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 다른 기관의 부패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부패가 효율적인 법 집행과 아동 보호에 주요 장애물임을 인식해야 한다.
- 2013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모금 기관, UN 사무소, NGO, 민영 부문, 노동자 혹은 고용자 단체, 언론, 아동 관련 기관, 그리고 이 밖의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과정을 확립한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
-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이송(referral) 구조를 확립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혹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전략과 운영상의 계획, 목표한 자원과 이에 위임된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청사진에, 그리고 현존하는 관련된 계획을 이러한 국가적 행동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신뢰성 있는 정보와 국경 지역의 협력을 모으고, 공유하는 것을 시작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희생자와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에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동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수요 문제를 다루는 데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며 이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 관광과 여행에 종사하는 회사, 운송과 금융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광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증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UN 기관, NGO, 시민 단체, 그리고 민영 부문,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원이 적절한 곳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 아동 인권에 초점을 둔 정책, 기준, 그리고 행동 규범이 공급망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제도 포함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성적 차별까지 포함하여), 유해한 전통적 관습, 아동 혼인과 아동 성착취를 용인하는 사회적 규범까지 모두 포함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일조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다루기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및 이 밖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 강제적, 자율적, 그리고 세계적 출생 신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시대의 가치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아동들이 잠재적으로 성착취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깊고 중요한 검토 과정에 있어 아동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성착취와 여기에 책임이 있는 성적 행동과 연관된 이슈를 아동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늘려야 한다.
- 2013년 까지 실제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혹은 그렇다고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보고, 후속 조치, 그리고 지원을 위한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한다. 아동의 복리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 의무를 법제화 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아동들과 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비밀 보장 하에 성착취를 보고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나 보호 시설이나 사법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해 현존하는 전화 혹은 인터넷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 2013년 까지 국가 당국의 UN 아동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규약 2항중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 2)의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아동 옴부즈맨(Children's Ombudspersons)이나 이에 대등한 독립적 아동 권리 기관이나 혹은 국가 인권 보장 위원회에 아동 권리에 관한 중심부, 혹은 일반적인 옴부즈맨 오피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이러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한 아동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실효성 있는 법 체제를 옹호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이러한 기관보다 먼저 불만 사항을 보고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차별 없이 현존하는 국가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혹은 성착취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완전 회복과 사회로의 정착에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전문가 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며 적절히 자원을 배치하고, 종합적이며, 아동 인지적이고 성인지적(child- and gender- sensitive)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소수 민족 어린이, 원주민 자녀(예를 들어 네이티브 인디언과 같은), 망명중인 어린이, 혹은 보호 시설에 수용중인 어린이, 그리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길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특정한 취약성을 지닌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어린이들처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모두 미치도록 해야 한다.
- 2013년까지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진척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착취를 포함한 아동 보호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적 체제를 확립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조사한다.

b. 우리는 아동권리위원회에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 국가 당국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를 지지할 의무에 대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끈기 있게 관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선택 의정서에 기반하여, 보고 내용의 검토에 있어 리오 행동계획서의 권고 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아동 성착취, 성적 목적을 위한 매매, 아동 납취와 판매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는 이와 관련된 법제와 정책의 개발, 도입, 실행에 관한 국가 세부 지침을 포함한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사무국과 꾸준히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국제적, 지역적 인권 체제의 인식을 고양해 나간다.

c. 우리는 이 밖의 유엔 인권 조약 기관(UN human rights treaty bodies)과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 인권 체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위의 기관들 각각의 임무 내에서 그리고 문제를 보고한 국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주된 업무와 혹은 다른 활동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투쟁

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d. 우리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다음을 촉구한다:

○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예방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이런 착취 과정의 희생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포함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e. 우리는 아직 지명되지 않은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 인신매매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그리고 인신매매 문제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을 비롯한 다른 권한 보유자들이 아동권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에 있어 중복을 피하고, 그 영향력을 최대화 하도록 함께 일한다.

f. 우리는 UN 부처와 NGO, 그리고 인권 단체에 다음 사항들을 격려한다:

○ 관련 단체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관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 교육과 권한 부여, 그리고 성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있어 미디어가 그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광고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물화하는 것을 포함해 미디어의 잠재적 해악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C.2. 아동포르노그래피/아동학대 이미지⁴⁶⁾ (Child pornography/child abuse images)

46) 점점 더 ‘아동학대이미지’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라 지칭되는 용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포르노 사진이 범죄가 자행된 기록이라는

위에서 언급된 대책 외에도, UN 부처와 NGO, 민영 부분, 교육계, 아동과 젊은이, 그리고 이에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채택한다.
-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다음 자료의 보급과 제작에 있어 기업이나 회사와 같은 실체의 책임 또는 연루에 있어 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가상 이미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적인 묘사(sexually exploitative representation of children), 뿐만 아니라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한 접근, 열람, 소비를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포, 입수, 그리고 소유를 유죄로 한다.
- 아동을 훈련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학대를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이와 다른 자료의 제작과 유포하기 위해서 인터넷,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과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목표화된 대책을 취해야 한다.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이 분야에 전문화된 스태프를 통해 지원과 보살핌을 주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지정되어야 한다.
- 아동, 부모, 교사, 청년 단체, 그리고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이 밖에도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성적 착취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교육적이며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아동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거나 대상화되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보고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정의하기 위한 지표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 커리큘럼에 온라인 안전대책을 첨부하고 청년단체를 통해서나 아동들과의 공식적 접촉 활동에 있어 이를 홍보해야 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동통신사, 검색엔진,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와 아동 학대 이미지를 보고하고, 제거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법률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이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할 것을 의무로 하는데 필요한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결과를 감독하고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동통신사, 인터넷 카페,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이 부모와 아동,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더불어 자발적인 행동 수칙과 이 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산업에 있어 아동 보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미지가 어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찍힌 것인지, 그리고 이를 추적하고 대응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에 민영 부문의 동기를 유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조사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즉각적으로 희생자를 추적해야 한다.
- 아동 학대 이미지의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이것의 열람에 대한 관계 법령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유포해야 하며,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전화번호 조합과 URL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온라인 상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보고할 수 있게끔 아동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전화와 온라인 상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C.3. 성매매에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위에서 언급된 대책 외에도, UN 부처와 NGO, 민영 부분, 교육계, 아동과 젊은이, 그리고 이에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 성매매, 성적 동의 연령, 그리고 형사책임능력(criminal responsibility)을 포함하여 국제 규범에 맞도록 국내법을 일치시켜야 한다.
- 법률이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법적 구조 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룰 절차에 수반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 아동을 성매매로 내몰아 성관계에 대한 지불을 하거나 혹은 아동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얻기 위한 다른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법상 위법 거래로 명시함으

로써 이러한 수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성착취에 희생된 혹은 이러한 위험에 처한 소년에게 보호, 회복과 재활을 제공하는 전문화된, 그리고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프로그램(위험의 평가 측정, 예방과 대응 기제를 포함하여)을 확립하여야 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예방적 수단책일 뿐만 아니라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배척과 사회적 고립을 보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회복, 재활 그리고 복원과 같은 대안적 보호 모델을 반복하여 확보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 성매매에 의해 착취된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의료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의 회복을 위한 지역 모델, 사회 복지 시스템,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과 총체적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들 간의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인들에게 아동 성착취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살피면서, 다양한 환경을 망라하여 적대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소년과 남성들 사이에서 발전하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연구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C.4. 여행과 관광 산업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위에서 언급된 대책 외에도, UN 부처와 NGO, 민영 부분, 교육계, 아동과 젊은이, 그리고 이에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관광, 여행, 호텔 산업에서 전문적인 행동 수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과 관광 산업에 있어 아동 보호를 위한 행동 수칙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아동 보호에 초점을 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구현하는 기업에 대한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 밖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규제되지 않은 관광업계가 국내/국제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연루되도록 하는 것을 막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 국제 여행 알람 시스템이나 혹은 인터폴의 'green notice'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기록이 있는 개인이 국제 여행을 하

기 전에 국가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이 개인의 목적지가 되는 국가에 통보한다. 해당 국가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성착취 범법자가 도착하는 국가의 정부는 이 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이 개인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 범죄 조사를 확실히 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에서 아동 성착취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 관광산업에서 아동 성착취에 대한 광고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여행객들에게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사상의 처벌에 대해 경고하여야 한다.
-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그리고 노동이나 직업 훈련의 최소 연령에 이른 아동들에게 민영 부문, 노동 단체나 고용 단체들과의 적절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직업 지침이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아동들이 착취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새로이, 그리고 부상하는 관광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민영 부문의 파트너들과 함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C.5. 인신매매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위에서 언급된 대책 외에도, UN 부처와 NGO, 민영 부문, 교육계, 아동과 젊은이, 그리고 이에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Palermo Protocol과 다른 관련있는 국제 기구나 기준의 의무에 부합하여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채택해야 하며,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지침(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Trafficking of Human Beings)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 아동을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신중한 고찰과 이에 관한 회담에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

그럼과 전략에서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가능하다면, 계획하고, 이행하고, 감시하는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 인신매매에 희생된 아동들을 재활하고 복귀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중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본뜨고, 수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국경 내 아동 인신매매를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요소 중에서도, 아동의 송환과 복귀를 위한 표준 활동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아동에게 최선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거지로 돌아오는 아동들의 요구와 위험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법 집행관 사이에서 국경 지역과 국경 내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사건 조사에서 이에 희생된 아동을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서 처우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합동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각각의 동행이 없는 인신매매된 아동들에게 아무런 지체 없이 보호자가 지정될 것을 확실히 하는 법적 조치나 이 외 다른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된 아동들에 대한 등록과 문서화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이 확실히 확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신매매된 아동들이 완전히 영구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얻을 수 있도록 단기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경제적,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짐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한 UNICEF 지침과, UNHCR의 아동을 위한 최선책 평가에 관한 매뉴얼과 같은 맥락에 있다)
- 시민 사회와 아동들의 참여와 함께,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신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만한 법제(예를 들어 혼인, 입양, 출생 등록, 시민권 부여, 난민이나 기타 신분에 관한 법)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책임지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The Rio de Janeiro Pact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EAMBLE

We, participants at the World Congress III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presenting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institutions, ombudspersons, the private sector, law enforcement and legal community, religious leaders, parliamentarians, researchers and academics, civil society and children and adolescents,⁴⁷⁾ have gathered in Rio de Janeiro, Brazil, (25-28 November 2008) to review developments and action taken in follow-up to 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996 and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to identify lessons learned and key challenges, and to commit ourselves to the implementation of goals and targets of a Plan of Action to prevent, prohibi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o children who have fallen victim to it.

- **We reiterate** th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gross violation of their right to respect of their human dignity and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and that it cannot be condoned under any circumstances.
- **We express** concern at the continuing high level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tates in all regions, and at the increase in certain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articular through abuse of the Internet and new and developing technologies, and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mobility of perpetrators in travel and tourism.
- **We note** with deep concern the increased vulnerability of many children to sexual exploitation as a result of increasing poverty, social and gender inequality, exclusion, drug and alcohol abuse, ongoing demand for sex with children, environmental degradation, HIV/AIDS, displacement, occupation, armed conflict and other emergencies that create strains on the basic unit of the famil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s well as the persistent demand for

47) Throughout this document, 'child'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used to denote all human beings below the age of 18 years.

sex with children in all regions and States underpinned by an environment of social tolerance, complicity and impunity.

- **We recal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which calls on States Parti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s well a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hich require States Parties to prohibit, criminalize and prosecute these practices.
- **We recogniz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the World Congress III and the importance of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hey have made and will continue to make in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We welcome**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in address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progress and outstanding challenges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in address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ince the 2nd World Congress in Yokohama, Japan, in 2001:

- The entry into force of key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ratified by 129 States as at 15 November 2008), and the increase in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 182 (1999) on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 Palermo Protocol),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adoption of new reg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of Human Being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and on Cyber crime.
-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by more Stat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e enactment of legal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during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rials against alleged perpetrators, taking into account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s*.

-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agendas, strategies or pla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creasingly within the context of broader, overarching national frameworks to create a World Fit for Children.
- The establishment of multi-sectoral initiatives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of children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 The conclus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and among State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effective cooperation in efforts to prevent and combat cross-border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well as for the detec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Increased support of companies operating in tourism and travel by signing the Code of Condu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 Travel and Tourism.
- An increase in some countries both in training for professionals involved i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victim support, and in targeted awareness 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 The increased engagement of UN and UN-related organizations,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acknowledging the progress, we note particular challenges and concerns:

- There remain significant gaps 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ow to address and respond to emerging manifestations, trends and the increasingly complex nature of the different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the increasing challenge of children on the move;
- In many States, laws do not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various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hindering the effective protection of children as well as the prosecution of these crimes.

- Consistent law enforcement and the ending of impunity is too often hampered by the lack of adequate resources, structures for implementation and a lack of appropriate training of those involved.
-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s often perpetuated by the lack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offenders in the country where the crime takes place, and the lack of consistent and effect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ften hindered by a ‘dual criminality’ requirement, and the lack of necessary extradition regulation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agreements and practices.
- There is an insufficient focus on measures to reduce and eliminate the demand for sex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in some States inadequate sanctions against sexual abusers of children.
- Children’s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and have those views given due weight in all matters affecting their lives, including in al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edings, is not consistently incorporated in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 and in particula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experience further trauma because of the lack of effectiv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at right and of child-sensitive victim and witness procedures.
- Protection for children’s sexual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empowers them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is not sufficiently recognized.
- Insufficient resources are made availabl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suring free, accessible, safe and high quality education for all children as a component of primary prevention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Laws and programmes address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too often do not recognize the special status of child victims and their right to special protection, including through repatriation procedures that guarantee the child’s safety in case of return to their place of origin and support for full restitution of their rights.
- Many States have not taken all feasible measures with the aim of ensuring all appropriate assistance to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their full social reintegration and their ful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assistance is often compromised by a lack of effective coordination among the

necessary partners (including law enforcement, immigration, social workers,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fessionals, housing and education services).

- The links betwee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family violence are not sufficiently acknowledged in policies and programmes.
-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reliable, disaggregated data on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on children at risk, and inadequat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legislative, social and other measures to prevent and stop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support those who have fallen victim to it.
- Information continues to circulate that is not based on updated knowledge and the wealth of field-based experience in the areas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law enforcement and victim support and there is insufficient proactive sharing of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B. Declaration

We, participants at the World Congress III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presenting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institutions, ombudspersons, the private sector, law enforcement and legal community, religious leaders, parliamentarians, researchers and academics, civil society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pledge ourselves to undertake as a matter of priority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d stop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We will be guid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fulfilment of States' obligations to protect children from all forms of abuse and exploitation.
- **We recognize** that our efforts to prevent and e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ust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se serious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by mainstreaming strategies within broader policy frameworks. We thus recommit ourselv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to 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ensure that all children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and halt and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that parents and the (extended) family can play in preventing and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he need to provide them and other caregivers with adequate support.
- **We welcome**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commit ourselves to follow-up and to supporting with financial, human and other resources, and facilitating the work of the (still to be appointed)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well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nd relevant Special Procedures, particularl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 **We recognize** that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include a focus on fighting all forms of the child labour, and **we welcome** the endorsement in 2006 of the ILO's Global Action Plan against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y which all 182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eliminating all these forms – inclu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by 2018.
- **We will cooperate** with and suppor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bodies in efforts to promote and review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We will support** measures and structures to institutionalize meaningful child participation in a sustainable way at all levels, including for child victims of or at risk of sexual exploitation, for example through adequately resourced child and youth advisory committees, community-based programmes and peer-to-peer initiatives.
- **We will strengthen** our efforts to address through targeted, gender-sensi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ducation, training and community mobilization, any denial of the seriousnes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of its negative consequences, in particular the beliefs and values that condone and sustai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erceptions and treatment of the child as a sexual object or commodity.
- **We will initiate, fund and share the outcomes** of research on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 alia* on the nature and scop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manifestations

including changing modalities, actors, mechanisms and locations use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chools and care and justice institutions; the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legislative, social and other measures taken to prevent, stop and respond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demand that perpetuates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involved in facilitating and perpetrat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sexual exploitation of boy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children in relation to sexual exploitation the nature and impact of virtual social interaction among children and its potential in preventing and protec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e impact and effect of global consumer culture on social values and behaviours, in particular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atterns of offending,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interventions are appropriate and effective.

- **We undertake** to further develop specific indicators of performance and progress to measure the impact on childre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we develop or implement in the area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all actions taken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do no harm and to share lessons learned – both positive and negative -- in order to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and action in the future and to ensure that as far as possible evidence-based information is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event and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upport those who have been victimized by it.

Note

The Plan of Action that is an integral part of this document will be open for 30 days from 28 November 2008 for participants to provide input that reflects the richness of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World Congress III agains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 Plan of Action

C.1. General

a. We call on all States to:

- Continue working towards ratif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as appropriat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Convention 182 (1999)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the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ontinue working towards ratific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as appropriate 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the ASEAN Charter,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Traffic of Minors and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SAARC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and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n Cyber crime and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onventions which can be ratified by States non-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 Define, prohibit and criminalize, in accordanc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ll act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ir jurisdiction, irrespective of any set age of consent or marriage
- Establish effect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double criminality for offence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facilitate effective extradi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prosecution of perpetrators and appropriate sanctions;
- Designate a lead law enforcement agency, where appropriate to national circumstances, to proactively enforce extraterritorial laws related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re not criminalized or punished for crimes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ir exploitation, but are given the status of victim in law and are treated accordingly;
- Promote and defend the privacy of child victims and child perpetrators of sexual exploitation,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to

protect their identity in investigatory or court proceedings or from disclosure by the media

- Establish and impleme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gal mechanisms and programmes for addressing sex offender behaviour and preventing recidivism, including through risk assessment and offender management programmes, the provision of voluntary extended and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in addition to but not in lieu of criminal sanctions as appropriate), safe reintegration of convicted offenders and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good practices in this regard and for this purpose establish where appropriate sex offender registers and cross-border sex offender management systems
- Ensure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exhibiting sexually harmful behaviour receive appropriate care and attention as a first option through appropriate gender-sensitive and child-focused measures and programmes that will not criminalize them but will balance their best interest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that depriving children of liberty should be pursu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care of such children are equipped with relevant training and skills;
- Support and contribute to the Interpol international child abuse images database and nominate a responsible national focal point person or unit to collect national data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ystematically share this information with Interpol in order to support cross-border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ction and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and adopt multilateral agreements especially for police investigation work
- Establish special units/children's desks within police forces to address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provide specialized training to judicial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 Address corruption in law enforcement and the judiciary, as well as other authorities with a duty of care to children, recognizing corruption as a major obstacle to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protection for children;
- Establish by 2013 concrete mechanisms and/or processes to facilitate coordination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enhanced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funding bodies UN agencies, NGOs, the private sector,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the media, children's organisation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with a view to enabling and supporting concrete action to prevent and stop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Increase efforts to address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olistic national child protection systems that aim to protect children from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 Emphasize 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inforcing or establishing multi-sectoral referral mechanism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and services to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ized in sexual exploitation;
- Develop National Plans of Action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r include these in existing relevant planning frameworks, such blueprints to include gender-sensitive strategies and operational plans, targeted resources and designated responsible actors for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to prevent and stop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vide suppor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 Initiate and support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reliable inform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databases on victims and perpetrators, to enhance assistance to children and address the demand sex with childre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 Develop, where appropriate with the support of UN agencies, NG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omote and suppor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operating *inter alia* in tourism, travel, transport and financial services, and of communication, media, Internet services, advertising and entertainment sectors in this regard ensure that child-rights focused policies, standards and codes of conduct are implemented throughout the supply chain and include an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
- Promote and support policies and programmes, including community-based programmes, to address phenomena that contribute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for example,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basis of sex),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child marriage and social norms that condon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Ensure that all children born on their territory ar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 Engage children in meaningful and critical examination of changing contemporary values and norms and their potential to increase vulnerability to sexual exploitation; and promote education to enhanc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in relation to sexual exploitation
- Establish by 2013 an effective and accessible system for reporting, follow up and support for child victims of suspected or actual incidents of sexual exploitation, for example by instituting mandatory reporting for people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children
- Develop or enhance accessibility of existing telephone or web-based helplines, in particular for children in care and justice institutions, to encourage children and carers to confidentially report sexual exploitation and seek referral to appropriate services, and ensure that the operators of such reporting mechanisms are adequately trained and supervised;
- Establish by 2013 independent children's rights institutions such as children's ombudspersons or equivalents or focal points on children's rights i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r general ombudsperson offic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for States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General Comment No 2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se bodies should play a key role in the independent monitoring of actions take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uch exploit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rights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in advocating for effective legal frameworks and enforcement and in ensuring, where necessary, that child victims have effective remedies and redres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filing complaints before these institutions
- Strengthen existing national child protection services or establish new ones in order to provide all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without discrimination, with the necessary economic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their ful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such services to be provided by well trained multi-disciplinary teams of professionals;

- Ensure that these services are accessible, appropriately resourced, comprehensive, child- and gender-sensitive, and reach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rom ethnic minorities, indigenous or Aboriginal children, refugee or asylum-seeking and hard-to-reach children such as those in domestic service or living on the streets and others with specific vulnerabilities;
 - Establish by 2013 regional mechanisms for exchange,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progress on child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n order to review progress and strengthen follow-u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 Take all necessary step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for the assistance of child victims in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social reintegration and, as appropriate, repatriation;
 - Provide, when in a position to do so, financial, technical and other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regional, bilateral and other programmes for address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explore the potential of a fund for child and youth initiatives in this area.
- b. We encourag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 Persevere with monitoring progress of States Parties' fulfilment of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of children to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in the Rio Plan of Action in its examination of repor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s
 - Adopt as a matter of priority a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and the abduction and sale of children, including detailed guidance to States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is regard
 - Continue to work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protecting child rights, and raising awareness of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c. We encourage other United Nation human rights treaty bodies,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 as well as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o:

- Pay particular attention to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during their examination of States' reports country visits, in their thematic work and/or other activities.

d. We urge the Human Rights Council to:

- Ensure that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includes rigorous examination of States'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s to children, including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respect fully the rights of child victims of such exploitation.

e. We urge the yet-to-be-appointed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together with other appropriate mandate holders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 Work together to avoid duplication and to maximise their impact in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 We encourage UN agencies, NGOs and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 Support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and responses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these bodies
- Work with the media to enhance their role in education and empowerment, and in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to mitigate the harmful potential of the media, including through the sexualization of children in advertising.

g. We call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y Fund to:

- Review current macro-economic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with a view to counteracting any negative social impact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minimizing the risk for children to sexual exploitation.

h. We call on religious communities to:

- Reject, in the light of their consensus about the inherent dignity of every person, including childre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establish in that regard multi-religiou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other key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s, children's organizations, UN agencies, NGOs, media and the private sector.

C.2. Child pornography/child abuse images⁴⁸⁾ In addition to the actions mentioned above, we call on States, UN agencies, NGOs, the private sector, academia,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 Adopt a clear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Criminalize the production, distribution, receipt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cluding virtual images and the sexually exploitative representation of children, as well as the consumption, access and viewing of such materials where there has been no physical contact, extending legal liability to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and companies in case of responsibility for or involvement in the production and/or dissemination of such materials.
- Undertake specific and targeted actions to prevent and stop child pornography and the use of the Internet and new technologies for the grooming of children into online and off-line abuse and for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 pornography and other materials. Victim identification and support and care by specialized staff should be made a high priority;

48) Increasingly the term 'child abuse images' is being used to refer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ornography. This is to reflect the seriousness of the phenomenon and to emphasize that pornographic images of children are in fact records of a crime being committed. However, many laws use the term 'child pornography' and it is therefore used in this document.

- Conduct educational and awareness-raising actions focusing on children, parents, teachers, youth organizations and other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with a view to improving understanding of the risks of sexually exploitative use of the Internet, mobile telephones and other technologies, such actions to include information for children on how to protect themselves, get help and report incidences of child pornography and online exploitation, and indicators and evaluation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grammes, not only in relation to increasing knowledge but also in effecting behaviour change.
- Put online safety on the curriculum in schools, and promote it through youth organizations and at official meeting points for children;
-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mobile phone companies, search engines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report and remove child pornography websites and child sexual abuse images, and develop indicators to monitor results and enhance efforts.
- Encourage and support Internet service providers, mobile phone companies, Internet cafes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develop and implement, with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ar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voluntary Codes of Conduct and oth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echanisms and develop legal tools for enabling the adoption of child protection measures in these businesses.
- Provide incentives to the private secto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obust technologies to identify images taken with electronic digital cameras and trace and retract them to help apprehend the perpetrators;
-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robust technologies to investiga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romptly trace the victims;
- Develop and disseminate messages informing potential users of legislation on viewing child abuse images and develop programmes to reduce the demand for such images
- Encourage and support telephone and online hotlines to enable the public, including children, to repor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nline, moving where possible towards harmonized numbers and URLs.

C.3.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rostitution

In addition to the actions mentioned above, we call on States, UN agencies, NGOs, the private sector, academia,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 Harmonize domestic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the child, a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rostitution
- Address the demand that leads to children being prostituted by making the purchase of sex or any form of transaction to obtain sexual services from a child a criminal transaction under criminal law
- Establish specialized, gender-appropriate programmes to provide care, recovery and rehabilitation (including assessment of risk, prevention and response mechanisms) not only for girls but also for boys vulnerable to or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n prostitution
- Pilot and where appropriate replicate alternative models of care, such as community-based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which will serve as a longer-term preventive measure as well as help to redress the ostracism and social isolation faced by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n prostitution
- Provide specialized and appropriate health care for children who have been exploited in prostitution, and support local models of recovery, social work systems, realistic economic alternatives and cooperation among programmes for holistic response.
- Undertake research on contemporary patterns of socialization of boys and men across different contexts to identify factors that inhibit and discourage adults from engaging i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4.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ravel and tourism

In addition to the actions mentioned above, we call on States, UN agencies, NGOs, the private sector, academia,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 Encourage and support the tourism, travel and hotel sectors in adopting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for example by joining and implementing the Code of Condu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encourage the use of businesses that put in place appropriate child protection-focus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rategies; and/or provide other incentives for those participating.
- Ensure that all stakeholders pay specific attention to unregulated tourism to prev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lers from sexually exploi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 Cooperate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avel notification system, such as the Interpol 'green not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human rights standards
- Ensure investigation and, where sufficient evidence exists, that appropriate charges are brought and vigorously pursued against the State's nationals who are reported or alleged to have sexually exploited a child in a foreign country
- Prohibit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advertis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ourism but alert travellers to criminal sanctions that will apply in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Provide vulnerable children living in or near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who have reached the minimum legal age for work with vocational training, careers guidance and job opportunities, where appropriate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to prevent them entering into situations of exploitation
- Monitor new and emerging tourist destinations and establish proactive measures to work with private sector partners involved in development tourism services on measures to preven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the use of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trategies that promote equitable development;
- Encourage and support greater intra- and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law enforcement, NGOs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develop a simplified,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ravel and tourism.

C.5. Trafficking and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ddition to the actions mentioned above, we call on States, where appropriate with the support of UN agencies, NGOs, the private sector, academia,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other relevant actors to:

- Adopt a clear definition of child trafficking in accordance with obligations under the Palermo Protocol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Trafficking of Human Beings (including children)
- Mobilize communities with a view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on and a critical review of social norms and practices that make children vulnerable to trafficking, and establish procedures that involve them in developing strategies and programmes where they participate, where appropriate, i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such programmes
- Pilot and adapt or replicate successful models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s for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 Establish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address not only cross-border but also internal trafficking of children and that include, among other elements,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the safe repatriation and return of children based on a careful assessment of the needs and risks to the child of returning to her/his place of origin to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aken into account
- Continue strengthening cross-border and internal coopera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for example by establishing coordinating units with a mandate to issue clear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of cases of trafficking of children and for treating trafficked children not as criminals but as victims in need of protection
- Tak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at a guardian is appointed without delay for every unaccompanied trafficked child, that an effective system of registration and documentation of all trafficked children is established, and that every trafficked child is provided with not only short-term protection but also with the necessary economic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full and long-lasting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in line with the *UNICEF*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and UNHCR Manual for assessment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Undertake and/or support, with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nd children, the regular evaluation of programmes and policies to prevent and stop the trafficking of children and of legislation that may have a conducive impact on trafficking, for example laws on marriage, adoption and migration, birth registration, accordance of citizenship, refugee or other status.

D. Follow-up

We commit ourselves to the most effective follow-up to this Plan of Action:

- at the national level, *inter alia*, by annually reporting on the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o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and promoting/initiating discussions on the progress made and the remaining challenges;
-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encouraging and supporting coordinated actions by the relevant special mandate holders with a view to maintaining awareness of the Rio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and promoting its implementation, and by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join the UN Global Compact and communicate their implementation progress with regard to address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upporting the realization of this platform for coordinated corporate efforts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